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NGO 대응활동 보고 및
평가 토론회**
-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방안 -

일 시 _ 2024년 7월 11일(목) 오후 2시

장 소 _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 최 _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김남희, 서미화, 서영교, 전진숙 의원,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조국혁신당

김선민,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주 관 _ 한국여성단체연합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

- 일시와 장소: 7월 11일(목) 오후 2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김남희, 서미화, 서영교, 전진숙 의원,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조국혁신당 김선민,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02-313-1632 / gensec@women21.or.kr)
- 프로그램 (*사회: 장예정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세션 1] CEDAW 본심의 대응활동 보고 및 최종견해 총괄분석과 평가: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세션 2] CEDAW 협약 및 제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에 기반한 영역별 정책과제

-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성평등정책추진체계 :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 여성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과제 :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
- 여성노동권 실현을 위한 과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여성 소수자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 : 조윤희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션 3] CEDAW 협약 및 제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국내 이행을 위한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 진보당 전종덕 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국가인권위원회 남규선 상임위원

[플로어 질의응답 및 토론]

●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명단 (가나다순):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편적출생등록네트워크, 사단법인 온을, 새움터,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 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권법센터,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총 26개)

차 례

[세션 1] CEDAW 본심의 NGO 대응활동 보고 및 최종견해 총괄 분석과 평가

CEDAW 제9차 한국심의 NGO 대응 활동 및 최종견해 분석 - - - - -	7
_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세션 2] CEDAW 협약 및 제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에 기반한 영역별 정책과제

발표 1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성평등정책추진체계 강화 - - - - -	21
_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발표 2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1) - - - - -	36
_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2) - - - - -	55
_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발표 3	
여성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과제 - - - - -	64
_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	
발표 4	
여성노동권 실현을 위한 과제 - - - - -	86
_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발표 5	
여성 소수자 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 - - - - -	98
_ 조윤희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션 3] CEDAW 협약 및 제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국내 이행을 위한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토론 1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 - - -	113
토론 2	
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 - - -	114
토론 3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 - - - -	115

토론 4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 - - -		118
토론 5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 - - -		121

[부록] 제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제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국/영문본 - - - - -	123
---	-----

[세션 1]

CEDAW 본심의 NGO 대응활동 보고 및
최종견해 총괄 분석과 평가

CEDAW 제9차 한국심의 NGO 대응 활동 및 최종견해 분석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심의 NGO 대응 활동 및 최종견해 분석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젠더교육플랫폼효재 대표

성평등과 여성권리의 국제기준이 제시된 여성차별철폐협약



남성중심적 세계인권선언문(1948)에 도전한 세계여성운동

남성 중심 세계관에 기초해 작성된 세계인권선언문 초안에 대한 여성들의 도전

• Article 1

➤ **All men-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They are endowed with reason and conscience and should act towards one another **in a spirit of brotherhood.**

• Article 2

➤ **All men-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인권협약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독자적 인권협약으로 채택된 배경

- CEDAW는 여성을 위한 새로운 인권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문화와 이데올로기로 인해 남성과는 다르게 구성된 여성의 경험을 반영해서 일반적 인권법을 여성의 맥락에 따라 적용하기 위해 탄생함
- 남성중심 세계관에 기반해서 출발한 국제 인권프레임을 다루는 국제인권기구의 남성중심주의로 인해 인권 규범을 여성에게 적용하는 것이 때때로 무시됨
- 공식적인 차별금지규범은 여성들이 사적 영역에서 겪는 불공정 (injustice)을 해결하지 못하고, 가부장적 문화와 여성인권 사이의 갈등을 해결 못함으로 인해 성평등을 달성하기에는 불충분함
- 실질적/결과적 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인권협약이 별도로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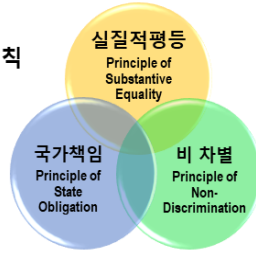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명시된 성평등 3대 원칙 및 16개 영역

CEDAW 위원회는 아래의 16개 조항 별르 최종권해를 제시함

(제1조: 차별의 정의)

여성에 대한 차별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서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남녀평등에 기반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행사하는 것을 저해/무효화 하는 효과나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성(sex)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구분(distinction), 배제(exclusion), 제한(restriction)' 을 의미

CEDAW의 3대 원칙



협약 16개 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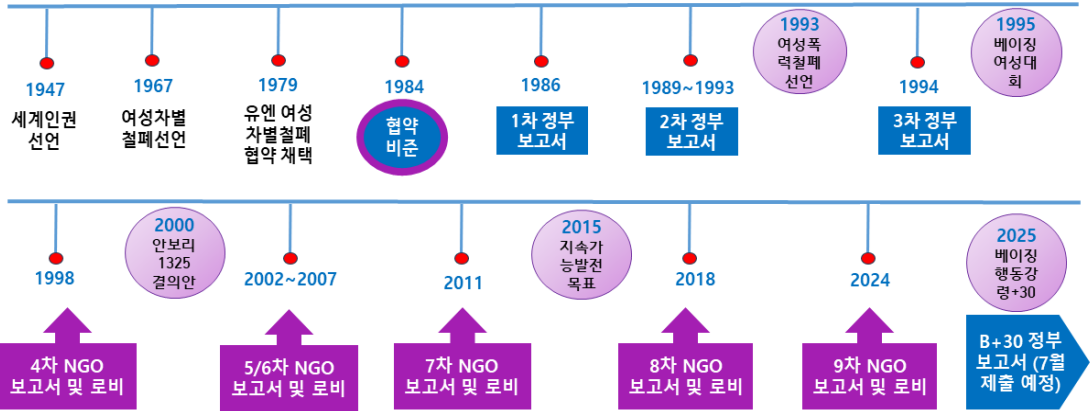
조항	영역(Criteria)	조항	영역(Criteria)
1	차별개념 정의	9	국적법
2	차별철폐 정책도구	10	교육에서 평등
3	남성과 평등한 자유와 기본적 인권	11	고용에서 평등
4	평등실현 위한 임시적 특별조치	12	건강 돌봄과 가족계획
5	성역할과 고정관념	13	경제, 사회적 혜택
6	성매매와 인신매매	14	농촌여성권리
7	정치적, 공적생활	15	법 앞에서 평등
8	국제활동 참여	16	결혼과 가족법

여성차별철폐협약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s, GRs)

아래의 일반권고는 위원회가 최종권해를 작성하는 기준으로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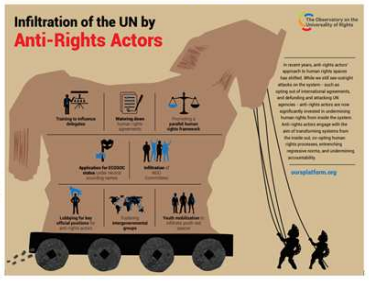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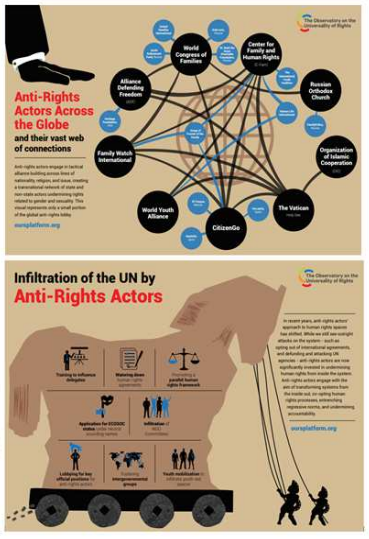
번호	이슈/대상 영역(Criteria)	번호	이슈/대상 영역(Criteria)	번호	이슈/대상 영역(Criteria)	번호	이슈/대상 영역(Criteria)
1	당사국 보고 (1986)	11	보고기술자문서비스 (1989)	21	혼인, 가족관계 평등 (1994)	31	아동권리 (2019)
2	당사국 보고 (1987)	12	여성에 대한 폭력 (1989)	22	협약 제20조 개정 (1995)	32	여성난민지위, 망명신청, 국적/무국적의 젠더 측면 (2014)
3	교육 및 홍보 (1987)	1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989)	23	정치적, 공적 생활 (1997)	33	여성의 사법접근 (2015)
4	유보 (1987)	14	여성할례 (1990)	24	협약 제12조 여성과 보건 (1999)	34	농촌여성권리 (2016)
5	잠정적 특별조치 (1988)	15	AIDS 정책에서 여성차별 (1990)	25	협약 제4조 1항 잠정적 특별조치 (2004)	35	젠더 기반 폭력에 관한 협약 제 19호 업데이트 (2017)
6	국가기구와 홍보 (1988)	16	가족기업에서 여성 무보수노동 (1991)	26	여성이주노동자 (2008)	36	여성과 소녀 교육권 (2017)
7	자원 (1988)	17	GDP에 여성 무보수 가사노동 측정, 가치 인정 (1991)	27	고령여성인권 (2010)	37	기후변화 맥락에서 재난감소의 젠더 측면 (2018)
8	협약 제8조 국제활동 참여 (1988)	18	장애여성 (1991)	28	당사국 의무 (2010)	38	글로벌 이주 맥락에서 인신매매 (2020)
9	여성통계 (1989)	19	여성에 대한 폭력 (1992)	29	혼인, 가족관계 및 그 해소의 경제적 결과 (2013)	39	선주민여성 권리 (2022)
10	협약 채택 10주년 (1989)	20	협약 유보 (1992)	30	분쟁예방, 분쟁, 분쟁 후 상황의 여성 (2013)	40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평등하고 포용적 여성대표성 (논의 중)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협약이행 심의와 여성단체의 활동



여성 및 인권단체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활동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성평등, 민주주의, 인권 가치를 지키는 여성단체 활동의 중요성



<https://adflegal.org/> <https://citizengo.org/en-us>

2024 제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심의 NGO 대응 활동



2024 제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심의 NGO 보고서 제출



English > Human Rights Bodies

CEDAW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88 Session (13 May 2024 - 31 May 2024)

	Republic of Korea	Tuesday 14 May 2024 AM, Tuesday 14 May 2024 PM
Document type		
<input type="checkbox"/>	State party's report	
<input type="checkbox"/>	Annex to State party report	
<input type="checkbox"/>	(Common) Core Document	
<input type="checkbox"/>	List of issues	
<input type="checkbox"/>	Annex to Reply to List of Issues	
<input type="checkbox"/>	Reply to List of Issues	
<input type="checkbox"/>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session)	
<input type="checkbox"/>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COCs)	
Symbol/Title		Download
Amnesty International		View document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View document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WAWU) and others - 1st submission		View document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WAWU) and others - 2nd submission		View document
The Advocates for Human Rights, the 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and the Cornell Center on the Death Penalty Worldwide		View document
Women with Disabilities, EMRATHY and Korean Disability Forum		View document
<input type="checkbox"/>	Info from NHRIs (for the session)	
<input type="checkbox"/>	Info from NHRIs (for COCs)	
<input type="checkbox"/>	Statement	
<input type="checkbox"/>	List of delegation/participants	
<input type="checkbox"/>	Additional info from State party	
<input type="checkbox"/>	Concluding observations	
<input type="checkbox"/>	Summary records	

Joint NGO submission¹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88th Session

Republic of Korea (RoK)

April 2024

¹ [Korean wome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oalition](#); Durbong, Gender Equality Training Platform; Korea Cyber Sexual Violence Response Centre;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Korea Women Workers Association; Korea Women's Political Solidarity;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WAWU); Korean Network of Gender Budgeting;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National Solidarity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Rainbow Action Against Sexual-Minority Discrimination of Korea; Saewonmub; Solidarity for USAR; Campaign Women's Human Rights; South Korean Coalition for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SCKCAL);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Victim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Network (22 organizations); Women Making Peace;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WomenLink

- Contact details:
 -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WAWU), secret@kwawu21.or.kr
 -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fo@minbyun.or.kr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9차 한국심의 NGO 대응활동 과정



CEDAW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거부하는 정부의 법치와 책무 거부에 대해 여성/인권단체들은 심각하게 우려한다!

윤석열
4시간 · 0

여가부 "장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유엔이 입장 밝힐 사안 아냐"
 고희주 기자 · 2024. 6. 5. 11:22

여성가족부 폐지

이어 "정부부처 장관 임면권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국제기구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CEDAW 최종건해에 명시된 국회의 역할 요청

CEDAW/C/KOR/CO/9	
Advance unedited version	Dist.: General 3 June 2024 Original: English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nin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p>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nin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EDAW/C/KOR/9) at its 2061st and 2062nd meetings (see CEDAW/C/SR.2061 and 2062), held on 14 May 2024. The Committee's list of issues and questions is contained in CEDAW/C/KOR/Q/9 and the responses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contained in CEDAW/C/KOR/RQ/9.</p>	

D. Parliament ⁴²

7. The Committee stresses the crucial role of the legislative power in ensuring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see A/65/38, part two, annex VI). It invites the National Assembly, in line with its mandate, to take the necessary step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between now and the submission of the next periodic report under the Convention.⁴³

D. 국회

7. 위원회는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함에 있어 입법부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A/65/38, 제2부 부속문서 VI 참조). 위원회는 **지금부터 차기 정기보고서 제출 시 까지 국회가 그 권한에 따라 본 최종건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국제의원연맹(IPU)의 CEDAW 이행을 위한 국회 역할 Handbook for Parliament 36, CEDAW and OP, IPU and UN OHCHR(2023)

• CEDAW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Parliaments' role in implementing CEDAW)

- 국가가 CEDAW 협약(Convention)과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의 당사자가 되도록 장려
- CEDAW 협약에 대해 해당 국가가 유지하고 있는 **유보조항(Reservation)의 해제**
- CEDAW 협약의 원칙에 대한 존중과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의 국내 입법으로의 편입, **성평등에 대한 헌신 및 협약의 다양한 권리를 포함한 조항의 이행 보장**
-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감독하고, 성인지 예산을 보장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외교 및 국제협력을 통해 평등을 촉진
- CEDAW 위원회에 대한 당사국 보고서 초안 작성, 위원회와의 대화, 위원회의 최종 권고에 대한 국가 보고서 작성, 이행, 보고 및 후속 조치(**national mechanisms for implementation, reporting and follow-up, NMIRFs**)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과 협력하는 측면에서 국가 보고에 기여

CEDAW 최종건해 중 주요 우려사항 및 권고

Principal area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최종건해 영역	우려사항 및 권고
• 유보조항 철회	9. 협약 제16조 제1(g)항 '가족 성' 관련 유보조항을 철회해야 함. → (CEDAW/C/KOR/CO/8, 제9항) (제19차 회기 채택 성명, 1998) 유보철회 거듭 권고
• 협약, 선택의정서, 일반권고 지위와 가시성	11. (b) 보고, 후속조치 위한 포괄적 국가 메커니즘 구축 → 여성권리와 성평등을 증진하는 NGO가 과정에 참여, 조정, 협의, 정보관리 등 역할을 담당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
• 여성차별 정의 및 차별적 법률	13. (a) 차별금지법 제정 시한 제시해야 함 → 제8차 최종건해(CEDAW/C/KOR/CO/8, 제13항) (협약 제1조와 제2조) (SDGs 제5.1번) 최종건해 거듭 권고
• 여성평화안보	15. 핵무기 확산 방지,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위한 협력 증진, 핵군축 목표 실현위한 핵무기비확산조약 (NPT)에 여성참여 강화
• 여성의 사법 접근성	17. (a) 여성권리와 성평등 교육을 모든 수준의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여성권리 구제방안 지식 향상 보장 (b) 장애, 난민(신청자 포함), 이주여성 권리구제수단 확대 (c) 여성수감자에 대한 성 인지적 처우 → (GR 제33호)
• 여성발전 국가기구 (National Machinery)	19. (a) 여성가족부 폐지조항 철회, 여성가족부 장관 즉시 임명, 어떠한 조직 개편에서도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유지해야 (b) 여성가족부가 모든 정부 부처에 걸쳐 성 주류화 노력 효과적으로 조정하도록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대폭 증대하고 직원역량강화 힘써야 (c) 통합적인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절차 채택, 여성권리 증진 위한 충분한 예산 할당, (d) 여성발전 위한 국가계획과 전략 설계, 채택, 이행에 여성NGO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 → (CEDAW/C/KOR/CO/8, 제16-17항)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 지침)

CEDAW 최종건해 중 주요 우려사항 및 권고

Principal area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최종건해 영역	우려사항 및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1. 인권위의 독립성 강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의 권고 이행 촉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조언과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을 권고
• 임시적 특별조치	23. 특정집단에 대한 채용 및 승진 제도, 공적 예산 편성 및 조달, 적극적 우대조치 등 기간별목표치를 동반한 임시적 특별 조치 채택 권고 → (GR 제25호)
• 고정관념	25. * 반 페미니즘 문화 확산과 '역차별' 주장을 '유해한 관행(harmful practice)'으로 간주 (a)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 표현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시행 및 이를 위한 협력 (b) 공무원, 언론인 및 멀티미디어 기관에 성인지적 언어 사용 교육 제공, 차별적인 성별 고정관념 해소, 여성의 대상화 방지, 매체에서 여성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도록 증진 → (GR 제31호와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18호)
•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27 (a) '부부간' 포함 '강간죄' 형법개정 (b) 가정폭력방지법 기소우선주의 채택 (c) 피해자 낙인, 보복, 성생활이력사용 금지 등을 통한 폭력신고 장려 (d) 법집행공무원 의무교육화 (e) 쉼터 지원 강화 (f) 온라인성폭력 예방, 처벌강화 및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 및 유통업자 책임강화 → (CEDAW/C/KOR/CO/8, 23항) (GR 제19호+GR 제35호) (SDGs 세부목표 제5.2번)
• 인신매매 및 성착취	29. (a)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역량강화, 식별과 보호 연계 과정에 대한 평가 실시 (b) E-6-2 비자제도 개선, 연예공연업체 인신매매 처벌강화 (c) 모든 피해자에게 G-1 비자제도 적용 (d) 인신매매 가해자 기소, 처벌 보장 (e) 인신매매 피해자 통합적 지원보장 (f)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성매매 착취 수요 억제, 탈성매매여성 사회복귀프로그램 제공 → (GR 제38호) (CEDAW/C/KOR/CO/8, 25항)와 개인진정 제139호(2018)

CEDAW 최종견해 중 주요 우려사항 및 권고

Principal area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최종견해 영역	우려사항 및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군 '위안부' 	<p>31. (a) 피해자/생존자의 구제받을 권리 인정, 배상, 만족, 공식사죄 및 재할 서비스를 포함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 제공 (b)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의 완전 보장 → (CEDAW/C/KOR/CO/8, 27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 및 공공영역 동등한 참여 	<p>33. (a) 정당 후보자 공천 및 정부, 공무원, 외교관 및 군대의 의사결정직급에는 벌금부과 등의 강제이행조치 수반한 여성할당제 실시 (b) 여성 정치인과 활동가들이 직면한 괴롭힘, 혐오발언, 성차별적 담론 근절을 위한 입법, 소셜 미디어 기업에게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혐오발언, 성차별적 담론, 위협 및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며 해당 콘텐츠 제작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보장 (c) 선거, 공직 출마 여성후보에게 정치적 리더십, 선거운동기술역량 강화, 선거자금 조달 접근성 보장 → (GR 제23호) (SDGs 세부목표 제5.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적 	<p>35. 외국인배우자 국적취득 동등권리 보장, 이주결혼여성 귀화절차 간소화, 신속화 (b) 이주, 난민, 망명신청 여성과 소녀의 출생등록 및 신분증명 접근성 향상 (c) 무국적자 감소 협약(1961) 가입 → (GR 제3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p>37. * AI, STEM, ICT 등 분야의 여성과 소녀의 과소대표성 해결, 성별 고정관념 및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 교육 강화, 온라인 GBV 규제 강화 촉구함 (a) AI, STEM, ICT 남성지배 분야에서 여성과 소녀의 학업과 경력 추구 장벽 제거 조치 강화 (b) 모든 교과서, 교과과정, 교수법에서 성별고정관념 제거, 학교교육과정/학술프로그램/교사직업훈련에서 여성권리와 성평등 교육포함 (c) AI 기반 GBV 교육프로그램 개발, AI 위협관리 규제체계 확립 → (GR 제36호)</p>

CEDAW 최종견해 중 주요 우려사항 및 권고

Principal area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최종견해 영역	우려사항 및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 	<p>39. (a)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에 기초한 성별임금격차 해소 (b)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해체를 통한 적극적 여성고용 조치 (c) 일-생활 균형정책 강화 (d) 15시간 미만 여성노동자 포함 사회보장 확대 (e) 민간기업 여성고용, 경력기회 촉진 이니셔티브 (f) ILO 제189호 가사노동자 협약비준 → (SDGs 세부목표 제8.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p>41. (a) 임신중지 및 이후 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 (b) 비혼 여성에게 체외수정 포함 보조생식서비스 보장 (c)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와 포괄적 성교육 접근성 확대, 미 등록출생 방지를 위해 보호출산제법(2023) 포괄적 재검토 (d) 장애, 난민, 망명신청자, 이주여성과 소녀에게 충분한 성과 재생산 건강서비스 및 정보 접근 보장 (e) 고령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첨단기술 이용 → (GR 제24호) (SDGs 세부목표 제3.1, 제3.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경제적 역량강화 	<p>43. *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 부담과 무급 돌봄 노동 종사자에 대한 우려 제기 (a) 여성재취업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효과성 평가 (b)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성 평가 (c) 돌봄 경제의 공평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와 계획 채택 (d)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한 인정, 감소, 재분배 및 가족기업 총사여성의 적절한 보수와 사회보장 접근 (e) 노인여성, 장애여성에 주의를 기울인 통합적 돌봄 경제시스템 구축위한 통계와 증거기반 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공공정책 개발, 이행하면서 남녀 간 평등한 부담 축진, 여성 무급 돌봄 노동의 화폐가치화 촉진 캠페인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여성 	<p>45. (a) 이주여성 포함 농촌여성의 경제, 사회, 의료 접근성 확대 및 대표성 확대 (b) 가부장적 태도와 성별고정관념 해소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통해 동등한 토지소유 및 이용 접근 보장 → (GR 제34호) (SDGs 세부목표 제5.a)</p>

CEDAW 최종견해 중 주요 우려사항 및 권고

Principal area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최종견해 영역	우려사항 및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여성 	47. 장애여성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최첨단 보조기술 개발 및 사용을 통한 사법, 통합교육, 고용, 보건 서비스 특히 성 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효과적 접근 보장 → (GR 제1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민, 망명신청자, 이주여성 	49. (a) 고차적 차별해결, GBV 보호 및 가해자 기소와 처벌 (b) 난민, 망명신청자, 인도적 체류 지위 여성과 소녀, 임산부와 수유중인 여성의 구금 금지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63조를 개정 (c) 망명 과정이 성인지적으로 진행되며, GBVAW 피해 가 보호의 근거가 되도록 젠더에 대한 이해가 적용되도록 이민국 직원 등의 교육 강화 → (GR 제32호), (GR제30호) (GR 제2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위기 감소와 기후변화 	51. (a)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를 설정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강화 (b)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여성과 소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 (c) 기후변화와 재난 위기 감소 관련 법, 정책, 재정 및 프로그램에 있어 젠더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소녀들의 특별한 필요를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과 효과적인 적응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장 (d) 농촌/장애 여성 포함, 여성과 소녀들이 기후변화와 재난 위기 관리에 대한 문해력과 인식을 높이고,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의사결정과 적응 전략 및 행동 개발에 효과적으로 참여 보장 → (COP28) (GR 제37호) (SDGs 세부목표 제13번) (2015 파리협약의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N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과 가족관계 	53. 「민법」 제781조 제1항을 협약 제16조 제1항(g)에 부합하도록 개정, 부성주의 폐지 → (CEDAW/C/KOR/CO/8, 제9항) (제19차 회기 채택 성명, 1998) 유보철회 거듭 권고

CEDAW 최종견해 중 주요 우려사항 및 권고

Principal area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최종견해 영역	우려사항 및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수집 및 분석 	55. 성인지적 입법 및 정책, 프로그램, 예산 설계와 이행을 위해 연령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세분화된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여성 및 소녀의 인신매매 발생률, 교육 접근성,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대한 통계 자료 수집에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역량을 증진하고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이징선언 및 행동강령 	56.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을 활용하고 협약의 이행상황 점검을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견해 배포 	57. 최종견해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당사국의 공식언어로 번역된 최종견해를 모든 단위(중앙 및 기초·광역자치 단위)의 관련 국가기관, 특히 행정부, 국회 및 사법부에 시기 적절히 배포할 것을 요청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조약 비준 	58.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개인청원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촉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견해 후속조치 	59. 제13(a)항(차별금지법 제정 시한), 제19(b)항(여성가족부 강화), 제27(a)항(「강간죄」정의 관련 형법 개정) 및 제31(a)항(일본군 "위안부" 완전한 사죄와 배상)에 포함된 권고의 이행에 관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들에 대한 서면정보를 2년 내에 제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기 정기보고서 준비 	60. 향후 예상되는 8년 검토 주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보고서 제출 전 당사국에 대한 정점 및 질의 목록의 채택 후, 당사국의 제10차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을 수립하고 통지할 예정. 차기 정기보고서는 제출 시점까지 전체 기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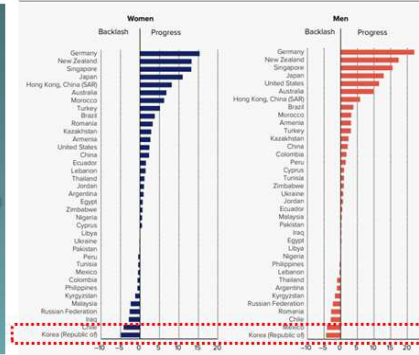
성별 임금격차/미투/역풍/저 출생은 구조적 성불평등의 결과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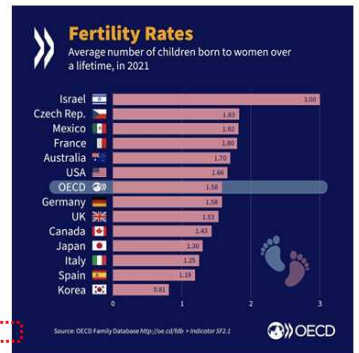


성평등과 여성권리에 대한 역풍이 가장 심한 나라

Figure 56.7 Most countries saw progress on bias against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between 2010-2014 and 2017-2022—but several countries saw reversals



OECD 국가 중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



Note: Based on 37 countries and territories with data from wave 6 (2010-2014) and wave 7 (2017-2022) of the World Values Survey, accounting for 48 percent of the global population.
Source: 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based on data from the World Values Survey, accessed April 2022.

구조적 성불평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성평등한 국가정책의 전환

Korea, Rep. rank out of 156 countries: 102
SCORE: 0.687



Dimension	2008 score	2017 score
Global Gender Gap Index	92	0.816
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96	0.481
Educational attainment	82	0.848
Health and survival	84	0.907
Political empowerment	84	0.067

Korea, Republic of Score: 0.689 Rank: 99th Index Edition: 2022



Korea, Republic of Score: 0.680 Rank: 105th Index Edition: 2023



South Korea Score: 0.696 Rank: 94th Index Edition: 2024





참고자료

-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Countries.aspx
-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HRBodies/CEAW/Statements/Parliamentarians.pdf>
-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publications/OHCHR-IPU-CEDAW-Handbook-revised-edition.pdf>
- <https://www.unwomen.org/en/csw/csw69-2025/preparations>
- <https://www.unescap.org/events/2024/asia-pacific-ministerial-conference-beijing30-review>

[세션 2]

CEDAW 협약 및
제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에 기반한 영역별 정책과제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내용과 최종견해의 의미 분석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1.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명시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관련 조항

주제분류	세부내용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국가 법/정책 추진체계	<p>(제2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을 약속한다.</p> <p>(가) 남녀평등의 원칙이 헌법 또는 기타 적절한 입법에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구현하며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원칙의 실제적 실현을 확보할 것</p> <p>(나)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 및 기타조치를 채택하고 구현하며 필요한 경우 제재를 포함시킬 것</p> <p>(다) 남성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립하며 권한있는 국내법정과 기타 공공기관을 통하여 여성을 차별행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확보할 것</p> <p>(라) 여성에 대한 차별행위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을 삼가하며 공공당국과 기관이 동 의무와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확보할 것</p> <p>(마)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 차별도 철폐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p> <p>(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p> <p>(사)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형사법 규정을 폐지할 것</p> <p>(제3조) 당사국은 <u>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u>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u>모든 분야</u>,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u>발전</u>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u>모든 적절한 조치</u>를 취하여야 한다.</p>

<p>임시적 특별조치</p>	<p><u>제4조</u> 1. <u>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한다.</u> 2. 당사국이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제 조치를 포함한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p>
<p>정치 및 공적 영역에서 의 동등한 대표성</p>	<p><u>(제7조) 당사국은 국가의 정치적 및 공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다음의 권리를 여성에게 확보하여야 한다.</u> (가) 모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모든 공공기구에의 피선거권 (나) 정부정책의 입안 및 동 정책의 시행에 참여하며 공직에 봉직하여 정부의 모든 직급에서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 (다) 국가의 공적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 및 단체에 참여할 권리</p>

2. 제9차 한국정부 심의에서 주목된 주요 내용과 최종견해 분석, 향후 정책 과제

1) 성평등 정책 전반 퇴보와 안티페미니즘 경향

카테고리	내용
<p>9차 본심의 질의</p>	<p><u>1) 성평등 정책 전반 퇴행</u> -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 현 대통령 주장에 비해, 선거제도 등에서 여성에게 기회 제대로 배분되지 않고 있음. 당사국의 현 성평등 퇴보 흐름에 대한 조치 추진 여부</p> <p><u>2) 사회 전반의 안티페미니즘 경향</u> - 페미니즘의 무기화 경향. 이로 인해 페미니즘 역차별 발생 중. 또한 반 페미니즘 언어가 오프라인 상 난무. 이러한 분위기가 입법 과정에도 영향 끼치고 있는 경향 우려. - 한국에 나타나는 반페미니즘 운동 우려 - (후속질문) N번방 사건, 딥페이크 합성 성착취물 등의 문제 심각. 안티페미니</p>

	<p>즘 문화, 페미니즘의 무기화 현상이 청년층에 역차별 담론 생성 및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표현 증대로 이어짐. 교육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어떻게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성평등 대안담론 만들 것인가?</p>
<p>정부 답변</p>	<p>1) <u>성평등 정책 전반 퇴행 : 당사국 현 성평등 퇴보에 대한 조치 추진 여부</u> 관련 답변 없음.</p> <p>2) <u>사회 전반의 안티페미니즘 경향</u> - (여가부/안티페미니즘 후속질문답변)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 남녀가 상생하는 양평문화 중요과제로 설정하고, 혐오와 차별금지를 위한 과제 추진 중. 교육부 양평 교원교육,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지역 양평센터 기반으로 청년공감대 제고사업 추진 지역 청년의제에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과 정책 모니터링. 남성과 여성의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토론하여 공감대 확보 중.</p>
<p>9차 최종견해</p>	<p><u>고정관념</u></p> <p>24. 위원회는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자율성, 교육 및 직업 기회를 약화시키는, 가족과 사회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고정관념이 당사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u>페미니즘을 무기화하고 가족 가치와 페미니즘 가치를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는 포퓰리즘적 서사를 촉발시킨 반페미니즘적 정치적 수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반페미니즘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이 스스로를 “역차별”의 피해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는 이전의 성과를 되돌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반페미니즘적인 혐오 발언을 촉발할 위협을 초래한다.</u></p> <p>25. 유해한 관행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공동 일반권고 제31호/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18호(2019년 개정된 버전)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p> <p>(a)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남성과 소년, 공공 및 민간 기관들과 협력할 것;</p> <p>(b) 관련 공무원, 언론인 및 멀티미디어 기관에 성인지적 언어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차별적인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여성의 대상화를 방지하며, 매체에서 변화의 적극적인 주도자로서의 여성의 긍정적 묘사를 증진할 것.</p>

- 이번 CEDAW 정부 심의 초반부터 한국의 전반적 성평등 정책 퇴보 흐름, 정부의 여가부 폐지 시도와 예산 삭감, 그리고 안티페미니즘 기조의 심화와 청년 세대의 역차별 담론 부상, 온오프라인에서의 반페미니즘 혐오 발언 심화가 주요 화두가 되었음.
- 한편, 한국정부는 성평등 정책 퇴보 흐름에 대한 조치 추진 여부 관련 답변은 전무하였음. 또한 한국사회 만연한 안티페미니즘적 혐오표현과 역차별 담론에 대한 근본적 원인 해결 및 성평등 대안 담론 개발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청년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정책 모니터링 등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다는”, 문제의 근본 원인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였음. 현재 한국 사회의 반여성/반페미니즘 정서 확산에 있어서 제22대 대선 과정에서 반페미니즘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인권을 지금까지도 부정하고 있는 현 대통령과 집권당의 책임이 매우 큼. 실제로 에스더 위원은 임시적 특별조치의 효과성이 낮음을 지적하는 대목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선언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며, 여성들이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이 낮음을 지적하기도 하였음.
- 반페미니즘적 정치적 수사와 청년 남성 그룹 내 역차별 담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성평등 대안 담론을 만들고 확산하는 등의 책무가 있음을 강조함. 한국정부는 조속히 성평등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여, 실질적인 여성권리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힘쓰고, 반페미니즘 정치적 수사와 역차별 담론에 대한 근본적 원인 해결 및 성평등 대안 담론 구축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정립해야 함.

2)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기구

카테고리	내용
9차 본심의 질의	<p><u>(1) 성평등정책 조정 메커니즘, 양성평등위원회</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층위 성평등 정책/추진체계의 총괄 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특히 여가부의 총괄 및 모니터링 권한 관련 <p><u>(2) 여가부 폐지 시도 관련</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여가부 폐지 계획을 철회할 계획 여부 - 여가부 성평등 정책 관련 예산 삭감 이유, 다양한 분야의 성평등 정책의 조정에 있어 여가부의 권한 - 협약 제3조는 성평등 추진 위해 성평등정책전담부처를 통한 국가의 책임 및 정치적 의지를 강조함. 여가부 폐지되고 보건복지부 통합되면, 여가부 기능, 정책, 예산 축소 우려, 지방정부 성평등 정책 연계의 제약 우려, 성평등 정책

	<p>전담 단독 부처 존재 필요성 여전히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부 장관 공석 여부 - (후속질문) 모든 OECD 국가들이 성평등부를 갖고 있지 않지만 한국의 여가부는 역사적으로 변화를 도모해왔고 이를 증명해왔음. 정부조직개편안 철회 계획 없는지? <p>(3) 성평등 정책 예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성평등 관련 예산 삭감 이유 <p>(4)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성과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에 대한 변화 의미 - 성인지예산 증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예산에서 성평등은 가장 낮은 고려 순위임. - (여가부 관련 부서의 인적/재정적 자원 확대를 포함한, 성별영향평가 효과성 증진 계획 <p>(5) 시민사회 거버넌스, 여성단체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책 프로세스에서 여성단체 참여 보장 방식 - 여성인권단체 재정적 지원 제공 여부 - 가족법 개정 등 관련 NGO 참여 논의 여부
<p>정부 답변</p>	<p>(1) 성평등정책 조정 메커니즘, 양성평등위원회</p> <p>(여가부)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는 양평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제도개선 심의 조정, 성별 인식격차 완화 총괄함. 2019년 주요부처에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설치. 현재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모여 협의체 운영하며 양성평등 부처간 토의 활성화함.</p> <p>(2) 여가부 폐지 시도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양성평등 기능을 축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임.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 총괄하므로 통합. 이 법으로 개편되도 여가부 사업은 그대로 이관되서 추진되어 양평정책 총괄조정과 집행이 강화될 것임. 양평정책은 그 자체만으로 독자적으로 떨어지면 효과 떨어짐. 여성의 건강보건, 출산과 양육은 빈곤 장애 노인등은 여러 사회정책 전반과 유기적으로 연결 필요. 생애주기에 따라 모든 과정에서 집행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모든 OECD 국가들이 여성정책 전담부처 갖고 있는 것은 아님.

- 후속질문답변(여가부): (여가부페이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동일. 국회의 법 논의과정을 지켜볼 필요 있음. 22대 국회 이후 법 재발의 경우 논의 과정에서 의견 제시하겠음.

(3) 성평등 정책 예산

- (여가부)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사업별 효과성, 전달체계효율성 면밀히 평가함. 일부 사업은 예산 규모 줄이고 일부 사업은 우선순위 높은 경우 예산 확대. 전달체계 필요성과 효율성 고려하여 사업예산 축소된 경우 있고, 여성 경제활동 촉진, 폭력 피해 지원, 약자 지원 사업 예산 확대함. 여성정책 관련한 사각지대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중.

(4)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 (여가부) 최근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는 삭제된 것이 아닌 지표내용 변경된 것.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에 대한 합동지표는 매년 지자체 의견 수렴.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노력 성별영향평가 개선 계획 선출, 지자체 고유 사업 세부지표로 확장함. 지자체는 상황에 맞는 개선방안 발굴 등. 내실화 위한 지속적인 노력 진행 중.
- (여가부) 2022년부터 성인지 예산에 대한 성과평가 진행 중. 성인지 예결산협의회 외에 전문 평가제도 실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20 12월까지 상설협의체 구성하여 운영. 2021년부터 성인지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법적 규정 마련하고 성인지 예결산협의회 운영.

(5) 시민사회 거버넌스, 여성단체 참여

- (여가부) 양성평등 정책 총괄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에 여성단체 대표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시민단체 의견 수렴 중. 향후 시민단체 소통 지속해나갈 계획임.
- (여가부) 정책의사결정 과정 피해자 보호시설 등 예산지원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민단체 개입을 보장. 양성평등 주요 정책상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여가부/가족법 개정 관련 NGO와 논의 현황/본심의 후 추가 서면답변) 2021년 정부가 가족관계관련 법에서 가족의 정의 확대와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p>NGO, 학계, 법 전문가 등과 4차례 이상 논의 진행하였으나, 다양한 의견이 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음.</p>
<p>9차 최종견해</p>	<p>여성발전을 위한 국가기구</p> <p>18.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15525호에 명시된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이것이 여성 발전을 위한 법·정책 체계의 파편화와 우선순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가부의 역할 및 자원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에서 퇴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의 실패, 여성가족부 관련 예산의 급격한 축소 및 여성 정책의 퇴행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더욱이,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 및 전략의 설계와 이행에 있어서 여성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인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다.</p> <p>19. 위원회는 특히 국가기구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이전 최종견해(CEDAW/C/KOR/CO/8, 제16·17항)와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에 제시된 지침을 상기하고, 여성가족부가 다양한 방면에서 변화를 주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법률 제15525호 개정안의 여성가족부 폐지 조항을 철회하고 더이상 지체 없이 장관을 임명하며, 어떠한 조직 개편에서도 여가부의 기능을 유지할 것; (b) 여성가족부가 모든 정부 부처에 걸쳐 성주류화 노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부처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대폭 증대하고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힘쓸 것; (c) 통합적인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절차를 채택하고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해 충분한 예산 자원을 할당할 것; (d)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과 전략의 설계, 채택 및 이행에서 여성단체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할 것. <p>협약, 선택의정서 및 위원회 일반권고의 지위와 가시성</p> <p>11.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p> <p>협약상 권리 및 그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모든 여성들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협약, 선택의정서 및 위원회의 일반권고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p> <p>본 최종견해의 이행을 위하여, 보고 및 후속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의 네 가</p>

지 핵심역할, 즉 참여, 조정, 협의 및 정보관리를 고려한 포괄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여성 권리와 성평등을 증진하는 NGO를 이 메커니즘에 포함시킬 것;

모든 판사, 검사, 법 집행 공무원 및 변호사가 법원 절차에서 협약의 조항들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거나 협약에 따라 국내법을 해석할 수 있도록, 협약, 위원회의 법리 및 일반권고가 이들의 체계적인 역량강화의 필수적 부분이 되도록 보장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20.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으로부터 A 등급을 재부여받은 것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소위원회는 인권위가 인권위원의 인선 및 임명을 위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능력에 기반한 참여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단일 인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국가인권위원회법」 또는 기타 행정지침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21. 위원회는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의 지위에 관한 원칙(1993년 12월 20일 총회 결의안 48/134 부속, 파리원칙)>에 따라,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권위 임무를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하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조언과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을 권고한다.

- 많은 위원들이 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폐지 계획에 따른 여성정책 축소 우려, 여가부 장관의 공백 및 관련 예산 축소 흐름을 우려하였음. 특히, Morsy 위원은 협약 제3조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성”, “모든 분야”, “발전”, “모든 적절한 조치” 핵심 키워드로 구성된 협약 제3조의 이행을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가 필요함을 지적함. Rangita 위원의 여가부 폐지 철회 계획 질문에, 정부가 OECD 가입 모든 국가들이 여성 정책 단독 부처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하자, Rangita 위원은 “모든 OECD 국가들이 성평등부를 갖고 있지 않지만 한국의 여가부는 역사적으로 변화를 도모해왔고 이를 증명해왔음을 재지적하며, 정부조직개편안 철회 계획 없는지를 재차 질의한바 있음.
- 이번 제9차 최종견해에서는 정부의 여가부 폐지 시도가 “여성 발전을 위한 법·정책 체계의 파편화와 우선순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가부의 역할 및 자원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에서 퇴보하는 것임”을 분명히 짚었음. 따라서 여가부 폐지 계획의 철회, 더 이상 지체 없는 장관 임명, 여가부의 인적/

기술적/재정적 자원 확대 및 역량강화를 내세우며, 이를 2년 내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긴급과제로 명시하였음. 여성가족부와 관련한 이러한 자세한 권고는 현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계획이 정부의 공식 답변과 같이 여성정책의 유기적 연계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 협약에 따른 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를 통한 국가의 책무 이행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임.

- 성주류화 정책 이행의 중요한 도구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정책의 효과성 증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최종견해에서는 통합적인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절차 채택 및 여성성권을 위한 충분한 예산 자원 할당이 강조되었음.
-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들이 여성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여성단체의 참여를 질의하였으나, 정부는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피해자 보호시설 예산지원 등의 형식적 제도 부분만을 기술하였음. 한편, 2022년 현 정부 취임 이후 반여성운동, 반시민사회단체 기조에 따라, 성평등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단체들의 의미있는 정책 개입 프로세스가 사실상 붕괴되었음. 이번 CEDAW 최종견해는 성평등 증진하는 NGO의 참여에 관한 권고를 2차례 포함하고 있음. 현 정부는 진보적 관점의 여성운동단체에 대한 기조를 대폭 전환하여 성평등 정책과 전략의 설계, 채택 및 이행에서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의미있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3) 차별금지법 제정

카테고리	내용
9차 본심의 질의	- 여전히 차별금지법 부재한 점 우려. 헌법상 차별금지 조항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언제 제정할 것인가?
정부 답변	- (법무부) 제21대 국회 4개 법안 발의, 공청회 개최(2022.5). 향후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음. / 헌법상 평등권 보장, 현재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행위 피해에 대해서 진정 제기 절차 마련되어 있음. 정책개선 권고, 의견 표명 등 통해 성소수자 편견에 대한 인식재고 노력 중
9차 최종견해	여성차별의 정의 및 차별적 법률 12. 위원회는 헌법 제11조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협약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직·간접 차별과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모두 다룸으로써 형식적·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이 부재한 점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한다. 13. 위원회는 이전 최종견해(CEDAW/C/KOR/CO/8, 제13항)를 재차 반복하며,

	<p>협약 제1조, 제2조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 5.1번 사이의 연관성을 상기하면서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p> <p>(a)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의 직·간접 차별을 비롯하여, 빈곤여성,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여성, 장애여성, 망명신청 여성 및 난민 여성, 무국적 및 이주여성, 농촌여성, 비혼여성, 청소년 및 노년여성 등 취약한 집단의 여성과 소녀들이 직면하는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다룸으로써 형식적·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명확한 타임라인을 설정할 것;</p> <p>(b) 연령, 국적,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세분화된 여성 차별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p>
--	--

- 협약 제2, 3조는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CEDAW 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오고 있으며, 이번 심의에서도 차별금지법의 부재를 우려하였음. 더욱이, 현재까지 모든 인권조약기구와 UPR(국가별인권정기검토)에서 차별금지법의 부재를 수십 차례 지적해오고 있음.
- 한편, 정부는 제9차 심의의 정부보고서와 CEDAW위원회의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에 기재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제21대 국회 4개 법안 발의 상황과 공청회 개최(2022.5)”만을 내세우며,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였음. 한편, 4개의 법안이 발의와 공청회 진행 등의 진전에 있어서 정부의 노력은 전무했음.
- 2018년 제8차 심의에서도 정부가 차별금지법 부재의 질의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당시 한 위원은 ‘본 심의에서는 ‘차별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답변해야 하며, ‘차별에 대한 보호는 CEDAW 협약 비준 이후 즉각 이행하는 것이지 점차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음. 제8차 최종견해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2년 내 이행상황을 제출해야 하는 긴급과제로도 명시되었음.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CEDAW 협약 제2,3조 및 최종견해 13번에 따라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써야 함.

4)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지 및 협약 제16조 제1(g)항 유보 철회

협약 제16조 1.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g) 가족성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카테고리	내용
9차 본심의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나 민법 781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들은 부의 성을 여전히 따르게 되어 있음. 이에 대한 대응은? - 협약 제16조 제1(g)항 가족성 선택권 유보 철회 고려 여부
정부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음. 자녀의 성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 우리 사회에 어떤 공감대 형성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고, 각국 다양한 상황 살펴 추가적인 연구 필요. 여론조사, 정책연구 등 통해 건설적 진행 예정 - (여가부) 협약 관련 조항을 가족성에 대한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현재도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 있음.
9차 최종견해	<p><u>유보조항</u></p> <p>8.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16조 제1(g)항에 대한 유보를 유지한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p> <p>9. 위원회는 협약 제16조 제1(g)항에 대한 유보는 협약의 목적 및 취지와 양립할 수 없고 따라서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전 권고(CEDAW/C/KOR/CO/8, 제9항) 및 1998년 제19차 회기에서 채택된 유보에 관한 성명을 상기한다.</p>

- 이번 최종견해에서도 “한국의 국내 민법 조항과의 부조화를 이유로 협약 제16조 제1(g)항의 유보를 유지하는 것은 협약의 목적 및 취지와 양립할 수 없고 따라서 철회되어야 한다”는 제8차 최종견해(2018)의 강한 어조의 권고를 반복하고 있음.
- 민법 제781조 제1항 개정에 따른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지 및 협약 제16조 제1(g)항 유보 철회 계획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에, 법무부는 ‘사회적 공감대 필요’, ‘추가적 연구’, ‘여론조사’ 등을 답변하였음. 실제로 부성주의 원칙 폐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전무함. 현 정부 출범 이후 법 개정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법개정 추진

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부성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기각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음.

- 앞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마찬가지로, CEDAW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위한 민법 제781조 제1항 개정을 통한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지 및 협약 유보조항 철폐를 바로 진행해야 함. 따라서 법무부는 입장을 전면 전환하고,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함.

5) 임시적 특별조치

카테고리	내용
9차 본심의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향상 제3차 계획 등 임시적 특별조치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음. 계획의 성평등 실현 효과성 여부 - 인권위 권고 기반 여성정치 대표성 향상계획, CEDAW 일반권고 제23호에 따른 성별대표성 증진 계획 진행 여부, 임시적 특별조치 관련 지속가능성 여부 공공과 교육 부문, 여러 다양한 분야 및 민간 분야에서 임시적 특별조치 진행 여부 (쿼터, 인센티브, 혁신, 멘토링, 유연근무제 등), 진전에 관한 추적관리 방식 등 - 특정 부문에 대한 공공부문 대표성 타겟 설정 이후 구체적 추진 계획. 기업 이행 효과성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 낮은 외교분야 대표성 개선 계획 여부 - 에너지 무역 기술 특히 인공지능 분야 인프라 그 밖에 주요 경제 부문에 있어서 임시적 특별조치 진행 여부
정부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부)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계획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고위직 여성 비율 설정 점검 관리 결과, 각 분야 여성 비율 지속 증가. 고위공무원 여성, 장관급 여성비율을 14.5% 30% 까지 달성할 계획임. 양성평등 정부위원회 성별 비율 조향 있음. 정부위원회 양성참여 관리 시스템. 양성평등위원회에 점검결과 상정. 개선 권고 진행 중. - (고용부) 적극적 고용개선 제도(AA) 2013년부터 시행 중.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제도 실시, 부진사업장에 성별임금격차 자율적 개선 유도, 그결과 여성고용율/관리자 비율 지속 상승. 자본시장법: 자본금/자본총액 2조원 이상 법인 경우 이사전원 특정 성별 구성 못하도록 규정. 2023년 여성이사회 임원 비율 16.3%로 확대 - (외교부) 외교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노력 중. 외교분야 여성공무원 비율은 39.5% 5년간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과장급 비율은 21.6%에서 25.5% 대폭 상승. 고위 여성 공무원 비율 3.9% 에서 8%로 상승. ODA 성평등증진 노력.

	<p>- (여가부) 에너지, 무역, 기술, 인공지능 경제분야 임시적 특별조치: 청년무역전문인력 양성, 여성창업자 해외진출희망자 대상 수출교육/컨설팅 실시 등</p>
<p>9차 최종견해</p>	<p>임시적 특별조치</p> <p>22. 위원회는 정치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 향상을 위한 법적 할당제와는 별도로, 당사국이 교육, 고용, 의료서비스 및 군대를 포함하여 여성이 과소대표되거나 불리한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인 평등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채용, 승진 및 조달과 같은 임시적 특별 조치를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자본시장 및 산업 인프라 부문 등 비즈니스 영역 전반에 걸쳐 임시적 특별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p> <p>23.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4조 제1항 및 임시적 특별조치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25호(2004)에 따라, 교육, 고용, 의료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여성, 특히 노년여성, 농촌여성 및 장애여성이 과소대표되거나 불리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 간 실질적 평등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으로써 특정집단에 대한 채용 및 승진 제도, 공적 예산 편성 및 조달, 적극적 우대조치 등 기간별목표치를 동반한 임시적 특별조치를 채택하기를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산업, 혁신 및 인프라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9번에 따라 민관 파트너십과 핵심 경제 부문의 투자 예측에 있어서 적극적 조달을 비롯하여,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Ruggie Principles) 확산을 위한 민간 부문 자금을 촉진하는 규제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p>

- 협약 제4조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며, 여성이 과소대표되거나 불리한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성평등 달성을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할 필수적 조치로써의 임시적 특별조치를 강조하고 있음.
-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과 임시적 특별조치 분야와 관련하여, 심의에서 위원들의 질문은 임시적 특별조치의 효과성 증진 계획, 민간의 이행 유도, 타겟 설정 이후 도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정부의 답변은 현행 법과 제도,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점진적 상승 통계치 등을 재확인하는 데에 머물렀음.
- 이번 본심의 과정에 참여한 여성단체들은 1) ‘제3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23~‘27)’의 고위공무원 목표치가 2027년까지 13.5%로, OECD 평균인 37.1%에 비해

목표치가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다. 또한 각 기관의 자발적 노력 유도 등의 조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성차별적인 노동구조와 문화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정부는 이번 최종전해에 따라,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채용 및 승진 제도, 공적 예산 편성 및 조달, 적극적 우대조치 등 기간별 목표치를 동반한 임시적 특별조치를 도입하고 효과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함. 특히, 고위공무원 여성비율을 OECD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 등 실질적인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및 이행점검과 관련한 여가부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함.

6) 정치/공적영역에서의 여성 참여

카테고리	내용
9차 본심의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선 결과 낮은 여성국회의원 비율.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비해 여성대표성 저조. 남녀동수제 의지 표명했으나 여성부장관 공석인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 여성정치인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면책 사유 많음. 처벌 개선 향후계획 등
정부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부) 공직선거법 비례대표 여성할당 의무규정, 지역구선거후보자 여성추천 권고조항 존재. 여성추천보조금 정당별 차등지급하여, 지역구 여성추천후보비율 높이도록 장려. 여성정치발전기금 제도 존재 - (여가부/동수제추진계획 답변) 비례대표 50% 할당제 최근 총선, 지선 지역구 여성당선인 증가 추세 등
9차 최종전해	<p><u>정치 및 공공 영역에서의 동등한 참여</u></p> <p>32. 위원회는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이고 여성 장관이 5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가부장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중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성 정치인, 활동가 및 언론인에 대한 딥페이크 등 온라인 괴롭힘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여성의 정치 및 공공 영역에서의 참여, 특히 농촌 여성과 장애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p> <p>33. 위원회는 정치 및 공공 영역에서의 여성에 관한 일반권고 제23호(1997) 및 정치, 경제 및 공공 영역의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동등한 리더십 기회의 보장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5.5번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p> <p>(a) 정당의 국회 및 광역/지방의회 선거 시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그리고 정부, 공무원, 외교관 및 군대의 특히 의사결정직급에서 농촌 여성과 장애 여</p>

	<p>성을 포함한 여성을 임명할 때, 평등을 목표로 하여 벌금부과 등의 강제이행 조치를 수반한 여성할당제를 도입할 것;</p> <p>(b) 여성 정치인과 활동가들이 직면한 괴롭힘, 혐오발언, 성차별적 담론을 근절하기 위한 법을 도입하고, 소셜 미디어 기업이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혐오발언, 성차별적 담론, 위협 및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며, 해당 콘텐츠 제작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보장할 것;</p> <p>(c) 농촌여성과 장애여성을 포함하여 선거 또는 공직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자에게 정치적 리더십과 선거운동기술에 대한 역량강화와 선거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것.</p>
--	--

- 최근 국제사회는 정치 및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남녀동수제 등 할당제의 도입 및 효과적 이행과 더불어,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및 혐오표현, 온라인 괴롭힘 등의 근절을 통해 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기반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정부 심의에서는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비해 여성의 정치/공적 대표성이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남녀동수제 추진 계획과 여가부 장관 공석 관련 질의, 여성정치인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면책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계획 등이 질의되었음. 이는 곧,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법/제도 도입 및 시행 등에 대한 국가의 노력 및 향후 의지를 묻는 내용임. 그러나 정부의 답변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에 규정된 여성할당제, 여성추천보조금 등의 현행 제도를 나열하는 것에 그쳤음.
- 이번 최종견해 권고에 따라, 1)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 지역구 여성 후보자 공천 30% 추천 규정을 강제이행조치를 수반하도록 의무화하고, 2) 여성 정치인과 활동가들이 직면한 괴롭힘, 혐오발언, 성차별적 담론을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정책의 도입 및 관련 미디어 콘텐츠 사용자의 책임 부과, 3) 선거 또는 공직에 출마하는 여성후보자에 대한 역량강화 등의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함.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1)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젠더폭력 관련 권고

일반권고 제19호, 제19호를 업데이트한 일반권고 제35호(2017)

○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분야 참여 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장애인권법센터 등

1. 제8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와 한국 정부의 이행 상황

1) 제8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2018)

23. 위원회는 지난 권고(CEDAW/C/KOR/CO/7, 21항)를 반복하고 위원회의 일반권고 19호를 업데이트한 일반권고 35호(2017년)와 지속가능발전목표 5.2를 상기하며,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의 근절을 위한 당사국의 노력을 강화할 것과 더불어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a) 「형법」 제 297조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특히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
- (b)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동법률의 주요 목적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 보장에 두도록 하고, 특히 동성 커플 및 가족, 그리고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에게 동법률의 적용을 확대할 것; 가정폭력사건 처리에 있어 상담이나 교육을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화해조정절차의 사용을 금지할 것; 가해자에 대하여 법적 제재에 따른 형사처벌을 보장할 것; 가정폭력범죄에서 접근금지명령 위반시 체포의무 정책을 도입할 것;
- (c)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와 같이 형사소송절차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방어를 위한 무료변호 보장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고,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성이력에 대한 증거사용을 금지할 것;
- (d) 온라인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할 것, 특히 온라인플랫폼과 배포자들이 범죄

콘텐츠를 삭제 또는 차단시키지 않는 경우 상당한 재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여성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을 명시적으로 범죄화하는 입법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범죄 콘텐츠를 삭제·차단하도록 하겠다는 당사국의 계획을 신속히 이행할 것;

- (e) 당사국은 특히 중소기업을 포함한 직장내 성희롱사건들에 대하여 그 예방에 초점을 둔 효과적 관리·감독 체계를 수립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의무화한 201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할 것;
- (f) 학교, 대학, 군대 등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보장할 것; 그러한 가해자들의 직무복귀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신고와 상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철저한 비밀유지 보장을 제공할 것;
- (g) 성폭력을 겪은 여성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치료 및 상담의 제공을 위해 이들을 위한 센터에 적절한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

2)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 중 관련 내용 (2018~2022.3)

가.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적 토대 마련

1)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수립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2018.12.24.)되어 시행(2019.12.25.)됨에 따라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수립(관계부처합동, 2020)

2) 여성폭력실태조사 실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는 기존에 누락된 여성폭력실태조사의 실시 규정, 2020년 사전조사, 2021년 본조사

3) 여성폭력통계 구축

: 2020년 여성폭력통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연구, 2021년에는 여성폭력통계의 구축·운영 사업의 이행 로드맵 구체화 및 여성폭력통계 시범(안) 마련 사업 추진 중

나. 미투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 2018년 3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와 실무기구인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을 구성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2018)」을 시작으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2018)」,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2018)」,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2019)」 등 마련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21. 9. 24. 제정, '22. 9. 25. 시행)

하여 신고·상담센터 설치 및 예방교육 실시 등 예술인 대상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제도화

: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조치 강화를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12.9.개정, 2021.7.13.시행)」과 「양성평등기본법(2021.4.20.개정, 2021.10.21.시행)」을 개정

다. 디지털 성범죄 등 기술매개 여성폭력 대응 강화

: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2019)」,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기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을 신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

: 「전기통신사업법(2020.6.9.,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6.9. 일부개정)」을 통해 웹하드사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인터넷사업자에게 조치의무 부과 및 방지의무 강화

: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신설

라. 여성폭력피해 신고 및 사건 대응력 강화

: 공공, 교육, 직장 및 문화예술계, 체육분야 등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범정부 차원에서 분야별 신고센터를 운영(18.3월~)

: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2018.11.27.)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추가,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 시정 요구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필요한 경우 24시간 이내 가능한 전자심의시스템 2019년 9월 도입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1.29. 공포, 2020.4.30. 시행)」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2020.6.9., 일부개정)」 개정을 통해 불법촬영물 신고 및 삭제 또는 지원요청을 피해당사자 외에도 할 수 있게 함

마.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 지원한 서비스 건수는 2017년 361,457건에서 2021년 418,032건으로 2017년 대비 16% 증가

: 국비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소의 개소수는 2015년 197개에서 2020년 232개로 2015년 대비 17.8% 증가

: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지원한 상담 건수는 2017년 289,032건에서 2021년 313,868건으로 2017년 대비 8.6% 증가

: 2018년 4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

원센터를 개소

바. 가해자 처벌 강화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 등 다양한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젠더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 대검찰청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2020.4.9.), 2021년 2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 개정·시행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9월 14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

사. 대상별 맞춤형 대응조치 강화

1) 이주여성 피해자 지원 및 여성폭력 방지

: 2018년 6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8.6.12., 일부개정)」을 개정하여, 성폭력 고용주에 대한 제재

: 2018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16개 언어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이주여성 대상 보호시설 개소수는 2015년 28개소에서 2020년 32개소로 4개소 증가, 이주여성상담소 2019년 기준 5개소 신설, 2020년 현재 4개소 추가 설치

2) 장애인 피해자 지원 및 여성폭력 방지

: 2020년 6월 30일 기준 전국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는 총 32개소,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보호시설은 10개소가 설치, 예산 범위 확대 및 추가, 지원

아. 젠더 기반 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 「국민체육진흥법(2020.2.4. 일부개정)」을 개정하여 체육지도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2020.6.9. 일부개정)」을 개정하여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과 연습생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피해자비난’ 통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

: 2021년 기준 전국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중앙 교육지원기관 1개소, 지역 교육지원기관 18개소 운영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 배포

※ 발표자가 요약한 것임

3) 대한민국의 제9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쟁점 및 질의목록 (2023)

8. 위원회의 이전 권고(CEDAW/C/KOR/CO/8, 23항)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접근금지명령 또는 피해자 보호명령 위반 시 가해자 처벌 규정 반영 여부 및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관계없이 동성커플 또는 가

족, 모든 여성으로 적용 대상을 확장하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명확히 설명하라. 가정폭력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의 구상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라.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고 화해 및 조정절차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라. 또한 다음 사항 이행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보고하라:

- (a)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특히 부부강간을 범죄화할 것
- (b) 젠더 기반 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법적 제재에 따른 형사처벌을 보장하고, 가정폭력범죄에서 접근금지명령 위반 시 의무체포 제도를 도입할 것
- (c) 피해자 방어를 위한 무료변호 보장 등을 통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로 인한 형사소송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성이력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
- (d) 여성과 소녀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을 명시적으로 범죄화하는 법률 제정 등 온라인 성폭력 예방 조치들을 강화할 것
- (e) 특히 중소기업 성희롱 사건을 포함한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예방에 중점을 둔 효과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의무를 규정한 201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이 엄격하게 준수되도록 할 것
- (f) 학교, 대학, 군대 등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 및 정신적 폭력 가해자에 대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직무복귀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며, 신고 및 상담이 용이하도록 엄격한 비밀 유지 보장을 제공할 것
- (g) 성폭력 피해를 겪은 여성들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치료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센터에 적절한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
- (h) 쉼터에 거주하는 젠더기반폭력 피해 여성과 소녀, 특히 장애여성과 소녀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지침 및 예산배정 등을 통해 지원할 것
- (i) 젠더기반폭력 피해 장애여성과 소녀에 대한 데이터를 장애유형 및 폭력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수집할 것

4) 대한민국 제9차 정기 이행보고서와 관련한 쟁점 및 질의 답변서 (2023)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8-(3). 국회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삭제 관련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3차례 발의되어 논의 중이나, 가정폭력범죄는 행위 태양, 죄질 등이 다양하므로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기소유에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제도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담 조건부 기소유에 처분은 중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가해자가 상담에 동의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며 가정 구성원간 화합과 치유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미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대부분 상담위탁 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상담위탁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검찰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에 처분을 통해 보다 신속한 전문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8-(4)-(a).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배우자”를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이미 부부 강간죄 처벌이 가능하다. 소위 ‘비동의 간음죄’ 도입 여부는 성폭력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로서 사실상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전환, 여성의 의지와 능력 폄하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8-(4)-(c).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무고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 재판 확정시까지 무고 사건 조사 또는 수사, 심리 및 재판을 금지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다만, 무고 사건과 원 고소, 고발 사건의 수사, 재판은 분리가 곤란하고, 허위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및 처벌 필요성이 존재하며, 다른 무고 사건과의 형평성도 고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성폭력처벌법」 등 현행법에 증거 채택에 대해 성별 이력 등에 따른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다. 현재 피해자의 성(性) 이력 증거 채택을 금지하고, 이를 기초로 한 조사 및 수사, 신문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다만,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를 통해 성적 이력에 대한 불필요한 신문 등은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점 등 고려할 필요가 있다.

8-(4)-(d).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 학생, 부모, 교사 등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플랫폼(Dicle)을 구축하고, ‘보는 것도 범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8-(4)-(f).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22년부터는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비밀 보장 강화 등 신고 체계를 보다 내실화하였다. 아울러, 「군사법원법」 등을 개정하여 군인 등의 성폭력 범죄를 민간 사법기관에서 처리하도록

록 하고, 군인 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 시 일반인의 경우보다 무거운 양형 기준을 적용하였다.

8-(4)-(h).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해자 대상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22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였다.

※ 2022.3 정부이행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 중심으로 발표자가 발췌함

- : CEDAW 8차 권고 중 대한민국 정부 역할이 뚜렷한 부분은 d, f 항목임. d는 불법촬영 및 유포에 대한 여성들의 온라인 공론화, NGO설립과 사회운동, 해화역시위(2018) 등으로 정부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를 신설, 여러 법개정이 진행된 것이기도 함. f는 미투운동 발발에서 문화예술, 스포츠, 공공기관 등 여러 영역에서 피해자들과 내부 주체자들이 변화를 촉구했으며 이에 정부가 종합대책 마련, 분야별 특별상담 및 법개정 등을 이어감. 여성가족부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범정부 정책총괄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한 지점임
- : e와 g는 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근거가 부족하며, a. b. c는 위원회 권고 취지가 이행되지 않았음
- : 2022년 3월 정부보고서 이후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는 CEDAW 권고의 취지를 수용하지 않고 해당 권고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개진됨. 젠더폭력 분야에서 가정폭력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장점을 주장하거나, 형법상 강간죄개정에 대한 반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성이력 심문에 대해서 필요불가결함을 주장함. 현 정부는 여성차별로서 젠더폭력 재생산 기제를 이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와 의미

1) 제8차 권고와 제9차 권고 우려사항 비교

	9차 권고(2024) 우려사항	8차 권고(2018) 우려사항
여성의 사법접 근성	농촌여성, 장애여성, 난민 및 난민 신청 여성 및 이주여성의 낮은 법률 문해율, 사법절차에서 성별 편견과 법집행 공무 원의 성별고정관념이 만연하여 여성들 이 젠더 기반 폭력 및 차별을 신고하는	

	9차 권고(2024) 우려사항	8차 권고(2018) 우려사항
	것을 꺼려하는 점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현행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의 증거를 요구하고, 명시적으로 적극적인 동의의 부재를 근거로 하고 있지 않은 점	「형법」 제297조상 강간의 정의가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배우자 강간을 단순히 판례가 아닌 입법을 통해 명확히 범죄화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지난 권고(CEDAW/C/KOR/CO/7, 21(e)항)가 이행되지 않았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가정폭력의 경우 형사처벌 면제를 허용하고, 법의 목적이 주로 가족 단위의 보존과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가정폭력 신고사건이 2013년 160,272건에서 2016년 264,528건으로 증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이 2012년 494건에서 2016년 19,834건으로 증가; 동법률의 주요 목적을 가정의 유지 및 회복에 두고 있어 2015년의 경우 총 16,868건의 가정보호사건 중 43.4%에서 형사처벌이 수반되지 않음; 접근금지명령 위반에 대해 단순히 과태료만 부과;
	당사국 내 가정폭력의 지속성; 가정폭력과 부부강간에 있어서의 낮은 기소율, 유죄 판결을 및 관대한 형량;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폭력적인 파트너에 대한 경제적 의존, 법률적 무지 및 법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인하여 신고가 저조한 점	
	가정 폭력사건에서 보호명령, 특히 접근금지 및 분리 명령의 효과적인 집행 및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폭력 피해의 생존 여성이 재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당사국 전역에서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적절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	

	9차 권고(2024) 우려사항	8차 권고(2018) 우려사항
		<p>적 낙인과 제도적 편견이 피해 여성·여아의 경찰신고를 막고 있음; 성폭력범죄를 당국에 신고 또는 주변에 알린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성이력 증거채택 등이 2차 피해 및 피해자의 침묵으로 이어짐;</p>
	<p>위원회는 사이버 스토킹, 괴롭힘, 신상 털기, 동의 없이 내밀한 이미지를 공유하는 행위, AI로 생성된 성적으로 노골적인 미디어, 딥페이크 비디오, 합성 미디어 및 사이버 포르노 등 여성의 신체를 상품화 및 대상화하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젠더 기반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더하여 위원회는 현행 법령이 기존의 모든 형태의, 그리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디지털 폭력과 학대를 완전히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낮은 기소율과 피해자 보호의 공백, 또한 사회적 낙인과 피해자 비난 및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및 학대에 대한 신고율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p>	<p>지난 10년간 온라인 성폭력범죄가 현저히 증가했음에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율이 낮고 제재가 관대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삭제·차단하겠다는 계획은 예방적 조치가 아니라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며, 이 계획도 아직 시행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그러한 온라인 콘텐츠 삭제를 위해 고비용의 “디지털 장의사들”에게 의존해야 함;</p>
		<p>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사건은 2,100건 이상이지만, 기소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부주의에 따른 과태료처분으로 사건이 처리되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고용주의 불</p>

	9차 권고(2024) 우려사항	8차 권고(2018) 우려사항
		<p>리한 처우 등을 포함하여 관련 기소건수가 낮은 수준임(2012년-2015년 사이 1,674건 중 83건 기소); 또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당사국의 정책들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부족함;</p> <p>학교(교사에 의한 성폭력 포함), 대학, 군대 등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매우 만연해 있음;</p> <p>“북한이탈여성”들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센터와 쉼터 등의 제공이 불충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p>
정치 및 공공 영역에서의 동등한 참여	가부장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중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성 정치인, 활동가 및 언론인에 대한 디페이크 등 온라인 괴롭힘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교육	어린 소녀들을 사이버섹스를 위한 채팅방으로 끌어들이는 인공지능 기반의 딥페이크, 비동의성적촬영물 유포, 불법촬영영상 및 성적 합성 이미지물의 폭발적인 증가가 당사국에 충격을 준 상황	2015년 2월 도입된[학교성교육표준안]이 2017년 3월 이후 모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위원회는 이 표준안이 생식과 보건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에 있어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한부모 가정 등 특정 가족형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에 우려를 표한다.
건강		위원회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강간, 근친상간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임신중절이법적으로 허용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낙태가 「형법」상 처벌가능한 범죄로 남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난민, 망명신청자	위원회는 난민, 망명신청자, 이주여성과 소녀들이 당사국, 특히 국경 지역에서 교차적 형태의 차별과 불균형한 수준의	

	9차 권고(2024) 우려사항	8차 권고(2018) 우려사항
이주 여성과 소녀	젠더 기반 폭력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과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성적 착취와 강제 노동의 위험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결혼과 가족 관계	위원회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도 의무적인 화해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자녀의 모를 학대하는 등 학대가해자 부에게도 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이 유지되는 점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심지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도 의무적인 화해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온전한 가정의보호라는 이념으로 인하여 학대가해자 아버지에게도 자녀 방문권과 양육권이 부여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을 우려한다.
자료 수집 및 분석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여러 영역에서 자료 수집이 부재한 것을 우려한다	

- : 8차 권고시 기재된 ‘우려사항’과 9차 권고에서의 ‘우려사항’을 살펴보면 CEDAW위원들이 2024년 현재 한국사회 젠더폭력 현실에서 주목한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 젠더폭력에 대해 난민, 망명신청자, 이주여성과 소녀, 정치 및 공공영역에서의 동등한 참여, 교육, 농촌지역과 장애여성의 사법접근성 등 여러 영역에서 짚고 있음. 이는 여성혐오가 확산되었다는 위원회의 지적과 연동되며, 정부의 여성정책 축소에 대한 우려, 온라인 젠더폭력이 극심해진 상황에 대한 우려 등과도 연결됨

2) 제9차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견해 중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권고

<p>27. 위원회는 이전 권고(CEDAW/C/KOR/CO/8, 23항)을 상기하고, 위원회의 일반권고 19호를 업데이트한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에 관한 일반권고 35호(2017) 및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5.2번에 따라, 당사국이 협약에 부합하는, 성평등한 새로운 국가 내러티브를 만들 것을 권고하며, 나아가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p> <p>(a)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부부간을 포함한 모든 강압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에 기반하지</p>
--

않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괄하는,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의 결여를 기반으로 강간을 정의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

- (b)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정보호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관행을 폐지하며, 화해와 조정보다는 기소가 우선시되도록 할 것;
- (c)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의 범죄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정당화에 도전하며 피해자에 대한 낙인을 찍지 않기 위한 미디어 캠페인을 실시하고,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신고로 인한 보복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며, 법원이 피해자의 의의기록 또는 성생활 이력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가정 내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장려할 것
- (d) 성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이 효과적으로 수사 및 기소되고 가해자가 적절히 처벌되며 보호 명령이 효과적으로 집행 및 모니터링되고 미준수 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사, 검사, 경찰관 및 기타 법 집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이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것;
- (e) 12개의 국가 운영 센터를 강화하고, 비정부기구가 운영하는 센터에 적절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이며 접근 가능한 센터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그들의 특정 요구를 고려하여 심리 사회적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적절한 자금을 지원할 것; 또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재정 지원, 교육, 전문 훈련, 소득 창출 기회, 저렴한 주택, 그리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분을 변경하도록 지원할 것;
- (f) 기술을 통해 촉진되는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공익 소송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러한 범죄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온라인 성폭력을 예방하고 적절히 처벌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유통업자가 플랫폼에서 범죄 콘텐츠를 신고, 삭제 또는 차단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할 것.

: 27(a) 강간 정의 변경 형법 개정에 대해서는 2년 이내 이행상황 보고하도록 함

: 캠페인, 법집행 공무원 대상 교육, 예산 지원, 기업에 대한 책무 등 다양한 행위자가 여러 수단과 방법으로 젠더폭력 근절에 역할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3. 제22대 국회 및 정부가 이행해야 할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젠더폭력 대응과제¹⁾

1) 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 배우자 강간 범죄화

- 2022년 4,765건 강간상담을 분석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따르면 전체 강간피해 중 명시적 폭행 협박이 없는 경우가 62.5%였다. 명시적인 폭행, 협박이 아니라 강요(19.9%), 회유(17.6%), 지위이용(11.0%), 속임(9.7%), 그루밍(7.9%), 폭언(4.6%), 괴롭힘(2.9%)을 동반했다.
- 2022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경우보다 가해자의 강요(41.1%), ‘가해자의 속임’(34.3%)에 의한 피해가 더 많았다.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강간상담 중 불송치 된 사건의 19.3%와 불기소 된 사건의 17%가 ‘폭행 또는 협박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조차 이르지 못했다.
-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경험한 ‘평생 성적 폭력’의 가해자 13.5%는 배우자임에도 부부강간 신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CEDAW 권고를 받아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
- 부부강간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 내 동의없는 성폭력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준강간, 의제강간, 성매매 현장의 성폭력, 무고죄 역고소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의 부재를 중심으로 면밀히 수사, 재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유지 관점 폐지 및 처벌 실질화

- 현 한국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조항은 가정의 유지와 보호를 기조로 하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실질적인 인권보장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요원한 상태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에 따르면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폭력범죄를 형사 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복의 두려움, 경제적 이유, 자녀 양육 문제, 가정을 해체시킨 장본인이라는 사회적 비난 등 복합적인 이유로 가정폭력을 신고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기 매우 어렵다. 피해자 의사 존중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사법처리 전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원칙

1)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NGO보고서 참조

이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맺고 있는 관계 및 상황 등을 고려해 진정한 피해자의 의견인지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부,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인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가해자의 행동을 이해하며 참고견디려 노력하고, 가해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는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물을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가정폭력 사건은 형사 처벌 대신 상당수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의하면 2022 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인원의 51.2%는 불처분되며, 처분을 받더라도 대부분은 상담위탁(25.2%), 사회봉사-수감명령(12%) 위주이다. 2024년 현재도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조항은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가정보호사건 처리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의 가정유지 관점을 폐기하고 형사처벌로 일원화
- 가정폭력처벌법에서 ‘피해자 의사 존중’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여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마련

3) 「가정폭력처벌법」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삭제

- 상담을 조건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며, 가정폭력 가해자의 상담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만 예외적으로 처벌 없이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피해자를 다시 폭력상황에 내모는 것이다. CEDAW 및 고문방지위원회(CAT)에서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 상담이나 교육을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하는 상담조건부기소유예 제도 폐지

4) 젠더기반여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의무체포제도 도입

-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19 등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및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현장에서 체포 및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여성가족부의 2022 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 중 0.8%만이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신고 건수의 0.22%에 불과하다.
- 2021년 10월 스톱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해자 구속률은 7%대였으나 2023년 1 월부

터 7월까지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 16,571 건에 비해 가해자 구속률은 3%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는 2018년 가정폭력 현행법 체포를 ‘가정폭력 방지대책으로 발표했지만, 입법되지는 못했다.

-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젠더기반여성폭력 사건에 의무체포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가해자의 재범방지

5) 무고, 쌍방폭력 등 젠더기반여성폭력 피해자의 역고소 피해 방지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장

- 2018년 대검찰청 수사 매뉴얼이 개정되었으나 성폭력 수사 종료 시점이 불명확한 점, 명예훼손, 위증 등 다양한 역고소에 적용되지 않는 점 등 여전히 한계가 많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 및 무료법률구조 제도는 보복성 역고소를 당한 피해자의 조력인에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 윤석열 대통령은 ‘성폭력 무고죄 처벌’을 2021년 대선 캠페인에 내세웠고 2023년 5 월,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무고죄 처벌형량 강화에 대한 의견을 냈다. 이러한 현실 앞에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고려하는 피해자들은 사건피해에 이어 보복성 역고소에 대한 두려움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어행위가 수사 과정에서 ‘쌍방폭력’으로 처리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방어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가해자의 쌍방폭력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폭력이 발생하는 맥락을 보지 않고 행위만을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등 수사기관의 태도와 그 과정의 경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 행위를 문제 삼을 수 없게 하고, 사법적 개입을 꺼리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무고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역고소 피해자 및 피해자 조력인에 대하여 법률 지원의 예산과 범위를 확장하고 실질적으로 보호
- 가해자의 역고소 남용을 성범죄 양형에 반영
- 여성의 방어행위가 ‘쌍방폭력’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수사기관 인식 및 사건처리 제도개선
- 성폭력특별법에 성폭력 피해자의 성 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명시
- 성폭력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관련 자료 열람, 의견개진, 신변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

6) 온라인 성적 괴롭힘에 대한 실질적 처벌 및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명문화

-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더 노골적이고 심각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법·제도,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지만, 2020년도에 진행된 법 제·개정 이후로 디지털 성폭력 관련 모든 의제와 논의는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 특히 온라인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인 신상정보와 함께 얼굴 사진 혹은 얼굴 사진과 나체 이미지를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여 성적 모욕에 불특정 다수가 동참하는 것이 ‘지인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놀이가 된 지 오래지만, 처벌 근거가 미흡하여 수사관 개개인의 역량과 젠더 감수성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2018년 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공급자와 사업자가 성폭력 콘텐츠를 삭제, 차단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재정적 제재를 가하는 처벌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성착취물 등이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되고 있으면 플랫폼 사업자는 삭제요청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 채널을 통해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플랫폼 사업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성착취물 유포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한국인이 운영하더라도 해외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은 삭제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삭제를 요청하면 오히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수사를 진행할 때 어려움이 크다.
- 온라인 성적 괴롭힘에 대한 전방위적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
-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성착취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적극적으로 삭제할 의무를 비롯해 경찰에 신고할 의무를 명시한 법을 제정
- 온라인 성폭력이 해외 플랫폼을 기반으로 있다는 이유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국제공조수사 체제를 마련하라

7)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자를 공공연하게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를 사칭하거나 사진을 도용하는 행위 등은 성폭력처벌법으로 다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조항에 해당하는 피해의 이미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드러난 이미지로

규정되어 가슴이나 성기 노출이 아닌 경우 법적 피해로 인정받기 어렵고,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삭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 사례가 피해지원체계에서 탈락되고 있다

- 피해촬영물을 동반하지 않고서 인터넷 공간에 얼굴 사진과 개인의 신상정보, 성적 모욕 메시지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딥페이크’등 허위영상물의 제작과 유포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의 2), 허위영상물의 시청, 구입 등 소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다양한 사이버공간 내 성적인 괴롭힘에 대해 ‘젠더 기반 폭력’의 관점에서 입법대안 마련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고, 이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마련

8)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구축 및 사업주의 책임 의무화

- 직장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여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침범하는 피해자의 주요 생활영역에 속한다. 2019년 6월, ILO는 창립 100 주년 기념 제 108 차 총회에서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을 제거하기 위한 제 190 협약’을 채택하였다. 해당 협약에서는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을 젠더폭력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또한 ‘폭력과 괴롭힘’의 범위를 일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한국에서 일터는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2022년에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직장인 미용실에 찾아가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9 월 역무원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했다. 2023 년 3 월에는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둔기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을 공격한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에 의한 복합적인 폭력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며, 피해자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직장, 직업 활동에 있어 치명적이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대응과 이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적 차원으로 확장해야 한다.
-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기업의 피해자 지원 제도를 구축하고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

9) 학교, 군대 등 공적 기관 내 성폭력 처벌 및 방지 조치 강화

- 미투운동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 특별신고센터 운영, 재발방지 현장점검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점검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 대학의 경우, 교수의 권력으로

인해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다.

- 군대의 경우 성폭력 ‘엄벌’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성희롱에 대한 신고, 징계, 처벌은 오히려 일어나기 어렵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여군 32.1%, 남군 8%가 성희롱 피해 경험을 응답했다.
- 군대 내 성희롱, 성차별 신고 및 심의, 징계 처리를 활성화하고 실질적 방지를 위한 자원을 확대
- 초중고 대학 내 성폭력 가해자 교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
- 대학 내 학위, 구직과정의 학생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

10) 젠더기반여성폭력 피해자 주거권 확보 및 안정적인 피해자지원 예산 확보 및 집행

-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젠더기반여성폭력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생활하는 공간인 쉼터는 주거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면적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 여기에 종사자의 사무 공간, 공용공간 등을 포함하면 실제로 입소자 1 인에게 할당되는 공간은 더욱 협소해진다. 자립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네트워킹을 위한 공간을 쉼터에서 제대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 쉼터를 퇴소한 이후에도 주거 지원시설 및 국민임대주택 물량이 매우 부족하여 피해자가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자산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선별하여 차등 지원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은 일반 예산이 아닌 기금 예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부처도 지원 성격에 따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으로 달라져 국가가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심지어 2024년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지원 예산은 100 여억 원 감축되었다. 실적과 효율을 이유로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운영 등의 예산을 줄이고 젠더기반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기계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각 쉼터별 가정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예산 집행이 1분기 이상 지연되고 예산액도 절반이상 감액되기도 하여 피해자 지원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 쉼터 공간 확장 등 환경 개선 및 실질적 주거 공급 물량 확보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독자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원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
- 정부는 안정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해 의료, 치료회복프로그램, 자립지원 등 젠더 기반여성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

11) 젠더기반여성폭력 살해(femicide) 통계 구축 및 실태 조사의 필요성

- 현재도 끊임없이 여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사회 전반의 성차별과 성차별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의 통계에 의하면 2023 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 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11 명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취합한 최소한의 수치로 실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2022 년 범죄 피해로 사망한 여성의 수는 178명이다. 같은 자료에 따라 매년 200 명 전후의 여성 사망자 수가 발생한다는 것을 참조하면 범죄 피해로 사망한 여성 중 상당수가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 피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 여성살해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 2022년,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거해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를 최초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해당 통계는 관점과 목적 없이 기존의 파편적인 실태 조사를 조합한 것에 그쳤다. 2023 년 2월, 경찰청은 2024 년에 연인, 사실혼, 부부관계 등 여성 대상 폭력의 피해자·피의자 관계를 세분화해 고도화된 범죄 통계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알려진 진행 상황은 없다.
- 여성살해 등 여성폭력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 구축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2)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인신매매, 성매매 권고

제6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여성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를 억제하기 위해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인신매매 및 성착취 분야 참여 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두레방, 공익법센터 어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새움터

1. 제8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와 한국 정부의 이행 상황

1) 제8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 포괄적 인신매매 법 제정
- E-6-2 비자 제도 개선
-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 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 할 것
- 여성·여아 인신매매 및 성매매 착취 방지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피해자·인권 중심적 접근법을 도입할 것
- 탈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을 수립·이행할 것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의 지체없는 제공, 피해자/피해 생존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의 진실,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인정되도록 보장하라.

2)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 중 관련 내용

6. 제6조 (여성에 대한 착취 금지)

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80. 2021년 4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1.4.20. 제정)」을 제정하였다.(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2023.1.1.)되면 여성 족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5년 주기의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인신매매등 방지 및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사회 부총리 소속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가 협업하는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17개 시·도에 신설되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중심으로 피해자 조기 식별 및 보호·지원 기능도 강화된다.

나.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81. 2020년 기준 성매매피해상담소 30개소,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39개소, 외국인 지원시설 1개소,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그룹홈) 12개소, 자활지원센터 12개소, 대안교육 위탁기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관련 지원과 치료회복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부록의 <표 16> 참조)

82.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 실적은 2019년 61,554건에서 2020년 88,672건으로 27,118건 증가하였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의 실적은 2019년 총 52,289건에서 2020년 48,950건으로 3,339건 감소하였다. (부록의 <표 17>, <표 18> 참조)

☞ 제8차 권고 중 ‘인신매매등방지법’ 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하여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됨.

☞ 나머지는 이행되지 않음.

2. NGO 요구사항

1)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착취 행위로 규정하여 성매매 알선 및 성 구매 행위를 금지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강요된 성매매를 입증하는 피해자에 한해서만 처벌을 면해주고 있는 한계로 인해 피해

를 입증하지 못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속되고 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보장하라.

〈전국연대 별도 제출 보고서〉

- a. 한국은 성매매 여성을 범죄화하는 모든 조항을 폐지하라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
- b. 자발적이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면제 조항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성매매 여성은 거의 없다.
- c. 처벌은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여성이 신고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성매매에 있어 여성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범죄 경력으로 인해 성매매를 중단하거나 다른 직업을 찾는 것도 어렵게 한다.
- d. 한국의 성매매 정책은 일관성이 부족하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모든 여성을 지원하면서도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하기 때문이다. 여성부는 성매매 여성을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이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
- e. 성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을 모두 피해자로 규정한 인신매매방지법의 정의는 강제와 자발성을 구분하는 성매매방지법과 모순된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 대부분은 피해자로 확인되기느커녕 처벌을 받는다.
- f. 2023년 10월 CEDAW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대신 처벌을 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보호 조치를 권고하였다.(CEDAW/C/86/D/139/2018)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인신매매 피해자는 처벌을 받는다.

- 모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도록 성매매방지법을 개정하라.

2)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정부의 책임

한국은 세계 6위 규모의 성산업 규모를 갖고 있으며 성매매 문제가 악화된 배경에는 정부의 묵인, 장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매매 산업은 더 열악하고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재편되고 있다. 성매매 및 성착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성매매 수요 차단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연대 별도 제출 보고서〉

- a. 한국은 세계 6위의 성매매 규모를 갖고 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국가가 성매매를 묵인하고 장려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산업의 규모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가 증가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 b. 성매매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국가는 인신매매, 인권, 산업 확대 등 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c. 그러나 현 정부는 여성인권 중심의 시각을 거부하고 대책 마련에도 소극적이다. 수년에 걸쳐 정부의 무관심은 더욱 악화되고 더욱 명백해졌다. 국가는 성매매 여성을 체포해 처벌하고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구매자를 눈감아주기를 열망하고 있다.

- (식품위생법 등)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폐지하라.
- 성매수 행위 및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3) 인신매매 범죄 기소, 처벌이 가능하도록 인신매매처벌법 제정

정부는 포괄적인 인신매매 법 제정을 위해 2021년 〈인신매매등방지법〉을 제정하고 2023년 시행하였지만 이 법은 제정부부터 한계가 많다.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4P 정책-예방prevention, 처벌prosecution, 피해자보호protection, 국제협력partnership-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국내 이행법은 처벌이 빠진 채 제정되었다.

-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 기준에 맞는 인신매매 범죄 처벌법을 제정하라.

4)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 또한 부족하다. 정부가 인신매매등방지법 제정 후 수사기관과 유관기관에 인신매매방지교육, 피해자식별지표 마련, 지표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과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았고 지표 또한 권고에 그쳐 강제력이 없다.

- 인신매매 피해 현장 이해와 식별지표 사용을 위한 공무원 대상 의무교육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라.
- 인신매매피해자 권익옹호기관 및 의료, 법률 등 피해자 지원 예산을 확보하라.

5) E-6-2 비자제도 개선 및 연예공연업체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E-6-2 비자 제도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실제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E-6-2 비자 소지 이주민의 체류연장 또는 허가 시 매뉴얼에 따라 비자 소지자가 스스로 작성한 피해자 식별지표만을 받고 있다. 식별지표는 대부분 영어로 작성되어 있어 비영어권 이주민의 접근성이 낮고, 작성 시 업주나 기획사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본인의 상황에 기반해 작성하기 어렵다.

- 피해자 식별지표의 접근성 향상 조치, 공무원 또는 전문 상담원이 직접 질문하는 방식 등을 통한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 방식 개선 등 E-6-2 비자 소지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입하라.

6) 모든 인신매매 피해여성에게 G-1비자 부여

성착취 피해 이주여성들이 수사 과정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분류되어 <G-1> 비자를 부여받기보다는 성매매행위자로 간주되어 강제출국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신매매 및 폭력피해 사실에 대한 법적(소송, 수사, 재판 등) 과정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만 피해 여성에게 G-1 비자 발급 허가가 되고, 그 외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사건의 피해여성의 경우, 쉼터 입소, 의료, 치료회복 등의 목적을 위한 G-1 비자 취득이 불가능하다.

- 성착취 피해 이주여성을 성매매행위자가 아닌 성착취 피해자로 분류하고 G-1 비자를 부여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쉼터입소, 치료 등 성착취 피해 회복 목적을 위한 G-1 비자 체류자격을 허가하라.

7)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및 피해자 보호 강화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제소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본군성노예제가 일본 정부가 자행한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한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를 양국 간의 공식 합의로 인정한다는 입장만을 반복할 뿐 판결 이행을 위한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의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며 지원 단계를 공격하는 일도 심각하게 확장되고 있다.

- 한국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을 존중해

‘2015 한일합의’를 파기하고, 일본 정부에 범죄사실 인정,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요구하라.

- 한국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가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반인도적 범죄행위임을 인정한 판결을 반영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고 피해 사실 부정과 명예훼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적극 보호하라.

8) 미군 위안부 문제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책 마련

2022년 9월 29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122명의 미군위안부 원고가 2014년에 시작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최종심에서 미군위안부에 대한 국가의 책임, 즉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 최초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과 2심에 이어 국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 및 운영 등 성매매를 조장하고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적 성병관리의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음을 확정하였다.

- UNSCR1325 국가행동계획에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전시 성폭력 피해국인 대한민국의 문제를 적시하고,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피해자와 생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군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들에게 공식사과하고 이후 진행될 미국을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3.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1) 인신매매와 성착취

- 우려 : 28. (a) 당사국이 성적, 노동 착취를 목적으로 한 여성 및 소녀 인신매매의 경유국이자 목적지라는 점
- (b) 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E-6-2 비자를 소지한 이주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인신매매 위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
- (c)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검찰 당국에 협력할 경우에만 G-1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
- (d) 강요된 성매매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고 있는 점
- (e) 당사국 내 장애여성을 포함한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하여 적절히 자금이 지원되고, 포용적이며 접근가능한 쉼터가 부족하다는 점

- 권고 : 29. (a) 판사, 검사, 경찰관 및 기타 법 집행 공무원, 국경 경비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최초 대응자를 대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의 조기 식별 및 적절한 서비스 의뢰, 성인지적 수사 및 심문 방법에 대한 역량 강화를 제공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조기 식별을 위한 경찰 지침 이행을 보장하며, 특히 여성과 소녀를 포함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조기 식별 및 적절한 서비스로의 연계를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
- (b) 현행 E-6-2 비자 제도를 개정하고, 해당 제도에 따라 여성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 조사를 포함하여 외국 여성을 모집하는 항구 및 미군 기지 근처의 술집을 포함한 유흥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착취적 고용주, 특히 인신매매범을 신속하게 조사, 기소 및 적절히 처벌할 것
- (c) 검찰 당국에 협조할 의지나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인신매매 피해 여성과 소녀들에게 G-1 비자제도가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
- (d) 인신매매 가해자가 기소되고 적절한 형을 선고받도록 보장할 것
- (e)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장애 여성을 포함한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쉼터의 수와 자금을 대폭 증가시키고, 이들이 무료 법률지원, 통역 서비스, 의료 지원, 심리 상담, 재정 지원, 교육, 직업 훈련 및 소득 창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할 것
- (f)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 착취를 조장하는 수요를 억제하며, 성매매를 떠나 고자 하는 여성을 위한 대안적 수입 창출기회를 포함한 출구전략을 제공할 것

2) ‘위안부’ 여성

-우려 : 30. 위원회는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이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특히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제관습법의 이론을 재정립한 것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한다.

- (a) 많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포함한 배상을 받지 못한 점;
- (b) 생존자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트라우마의 장기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그들의 특별한 필요에 맞는 의료적, 심리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

-권고 : 31. (a) 피해자/생존자의 구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보상, 만족, 공식 사과 및 재활 서비스를 포함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을 제공할 것

(b) 아직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4. 정책 과제

1)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와 성매매처벌법 개정

-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착취 행위임을 분명히 하여 현행 「성매매알선등행위 의처벌에 관한법률」을 전면 개정해야 함.
-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실현하기 위해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아야 함.
- 정부의 성매매 대응 정책이 성매매 알선고리 차단, 수요 억제를 목표로 일관성 있게 집행되어야 함.

2) 인신매매 처벌 조항 추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인신매매 범죄가 실질적으로 기소, 처벌될 수 있도록 인신매매등방지법을 개정하여 처벌 조항 추가해야 함.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보호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또 식별지표가 수사기관 등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표의 사용이 권고가 아닌 의무가 되어야 함. 수사기관은 인신매매 사건에 대해 ‘인신매매’ 범죄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수사하여야 함.

3) E-6-2 비자 제도 개선 및 성매매.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 인신매매 창구가 되는 E-6-2 비자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함.
- 성매매.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가 안전하게 피해를 호소할 수 있도록 법률 사건의 여부, 수사 협조의 여부와 상관없이 G-1비자를 부여해야 함.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대응

-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2015 한일 합의를 파기하고 일본 정부에 범죄사실 인정,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요구해야 함.
-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법 개정이 필요함.

5) 미군 '위안부' 문제 진실규명과 피해자보호법 제정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실규명, 재발방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함.
- 미군 '위안부' 제도의 한 축이었던 미국 정부의 책임이 물어질 수 있도록 소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여성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과제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1.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의 주요 관련 조항

여성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영역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여러 조항을 교차하는 영역으로, 교육권 영역을 다루는 10조, 고용과 노동에 관한 조항 11조, 건강권에 관한 내용인 12조, 시골 여성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에 관한 내용인 14조, 혼인 및 가족관계에 관한 16조의 내용에서 모두 언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0조

당사국은 교육 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아)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교육정보의 수혜

제11조

1. 당사국은 고용분야에서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바)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 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에 대한 안전에 대한 권리

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임신 또는 출산 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 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

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

(나) 종전의 직업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 수당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회보장 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제를 도입하는 것

(다) 특히 아동보육 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 및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 의무와 병행시키는 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장 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

(라) 임신 중의 여성에게 유해한 것이 증명된 유형의 작업에는 동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

제12조

1. 당사국은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가족계획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보건 사업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 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섭취를 확보하고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 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역무제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4조

...

2. 당사국은 남녀평등의 기초위에 시골 여성이 지역개발에 참여하며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시골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시골 여성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나)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상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보건시설의 혜택을 받는 것

제16조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라)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

(마) 자녀의 수 및 출산간격을 자유롭게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

(바)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 관리 및 자녀 입양 또는 국제법제상 존재하는 개념 중에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2.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24호(1999): 동 협약 제12조(여성과 보건)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99년 협약 제12조 ‘여성과 보건’ 영역에 관련하여 일반 권고 제24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바 있다.

- 당사국의 동 협약 제12조 준수는 여성의 건강과 안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해당 조항은 당사국들이 여성이 일생에 걸쳐, 특히 가족계획, 임신과 출산 및 산후기간 동안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언급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건강권을 비롯하여, 건강권의 조건이 되는 제반의 권리 영역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을 언급
- 또한 여성 할레, 면역결핍 바이러스/후천성 면역결핍증(HIV/AIDS), 장애 여성,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가족관계에서의 평등에 관한 일반권고가 모두 동 협약 제12조의 완전한 이행에 필수적인 문제들임을 명시
- 이주여성, 난민여성, 국내 피난민 여성, 소녀와 노인여성, 성매매 여성, 선주민 여성 및 신체적, 정신적 장애 여성과 같이 취약하고 불리한 집단에 속한 여성들의 건강상 필요와 권리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을 강조
- 시골 여성을 위하여 생산 자원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할권 내의 모든 여성의 특별한 영양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언급

[일반권고 제24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협약 제12조의 핵심 요소 주요 항목]

...

11. ... 당사국이 여성을 위한 특정 재생산 건강 서비스의 실행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보건 서비스 제공자들이 양심적 반대에 기초하여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거부한다면, 여성을 다른 보건 서비스 제공자에게 소개하도록 하는 조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12. 당사국은 보건의료에 관한 정책과 조치들이 여성의 필요와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여성의 건강권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고, 그것이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을 구별하는 특징적 양상과 요소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자국이 파악한 바를 보고하여야 한다.

...

13. 남녀평등의 토대 위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정보제공 및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는 보건의료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존중, 보호, 이행할 의무를 함축한다. 당사국은 입법, 집행 행위 및 정책이 상기 세 가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을 진다. 당사국은 또한 효과적인 사법 조치를 보장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제12조의 위반이 된다.

14. 당사국은 공적, 사적 보건의료 제공자들이 여성이 보건의료에 접근할 권리를 존중할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당사국은 여성이 보건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여성이 미혼 여성이기 때문에, 또는 남편, 파트너, 부모 혹은 보건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여성이 적절한 보건의료를 이용하는 데 대한 다른 장애요인들에는 오직 여성에게만 필요한 의료 행위를 범죄화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들이 포함된다.

15. ... 젠더기반폭력이 여성 건강에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a) 여성에 대한 폭력, 여아에 대한 성적 학대를 다루는 보건-의료 의정서와 병원의 절차 및 적절한 보건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법률의 제정과 그것의 효과적인 이행 및 정책 입안

(b)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젠더기반 폭력으로 인한 건강 상태를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적 훈련

16. 당사국은 무력 충돌 상황에 처한 여성, 난민 여성과 같이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성을 위하여 정신적 외상 치료, 상담을 포함한 적절한 보호와 건강 서비스를 보장하여야 한다.

17. 여성이 자신의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용한 자원의 범위까지 적절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예산적, 경제적 및 기타 다른 조치들을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 ... 당사국은 여성 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절차와 구조를 구축하여 왔는지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당사국은 제3자에 의한 여성 권리 침해를 억제하고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적극적인 조치와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18. HIV/AIDS 및 기타 성매개 질환에 관한 문제들은 여성과 청소년의 성적 건강에 대한 권리의 핵심이다. ... 당사국은 편견과 차별 없이, 인신매매된 여성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들에게, 그들이 자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성적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21. 당사국은 여성이 보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직면하게 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들과 여성이 이러한 서비스를 적시에 지불 가능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들에는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높은 비용과 배우자, 부모 혹은 보건 당국의 사전 허가 요구, 보건 의료 시설까지의 원거리 및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의 부재와 같이 여성의 이용을 해하는 여건과 상황들이 포함된다.

22. 당사국은 여성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라 함은 어떤 여성이 완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하고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비밀유지를 보장받아 자신의 필요와 관점에 민감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국은 부동의 피임이나 의무적인 성매개 감염 검사 혹은 고용 조건으로서의 의무적인 임신 검사와 같이 정보에 근거한 동의와 존엄성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압적인 형태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23. 당사국은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는 가족계획, 일반적으로는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의 적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가족계획에 관련한 모든 방법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포함하여 청소년 보건 교육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24. 본 위원회는 노인 여성을 위한 건강 서비스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

은 대개 남성에 비해 수명이 길고 남성보다 더 많이 골다공증, 치매와 같은 장애나 퇴행성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은 대체적으로 연로한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도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국은 고령과 관련된 불리한 조건이나 장애를 다루는 건강 서비스를 노인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5. 장애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물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여성은 특히, 성차별, 폭력, 빈곤, 무력 충돌, 혼란 및 기타 형태의 사회적 박탈의 결과로서 여성이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기 쉬운 정신적 건강의 위험 요소가 광범위하다는 데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한편 당사국은 건강 서비스가 장애 여성들의 요구에 즉각 부응하고 그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의 행동에 대한 권고]

29. 당사국은 여성 건강을 전 생애 동안 증진시키기 위하여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전략에는 여성에게 영향을 주는 질병과 상황의 예방 및 치료, 여성에 대한 폭력에의 대응 등을 위한 개입을 비롯하여, 지불이 가능한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30. 당사국은 남성 건강과 비교하였을 때, 여성의 상이한 건강 상 요구사항들을 고려하여 여성 건강 분야가 보건 예산 전체에서 일정한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과 인적, 행정적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3.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8차, 9차 심의 최종견해

이와 같은 협약과 일반권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8차, 9차 심의의 최종견해에서 여성 건강과 재생산권 관련 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8차 심의 최종 견해(2018)]

40. 위원회는 저소득 여성노인에 대한 사회 보장 및 의료 보장 확대 등 여성에 대한 보건 서비스 개선에 대한 당사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사국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정책들이 결혼한 여성과 임신한 여성, 그리고 그 가족의 건강 문제에만 치우쳐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트랜스젠더의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적이며, 간성인의 경우 그들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본인의 동의 없이 회복 불가능한 성 결정 처분, 불임 수술 또는 ‘생식기 정상화 수술’의 대상이 된다고 알려져 이에 우려를 표한다.

41. 위원회는 당사국이 건강 관련 법률 및 정책, 특히 여성의 성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와 관련된 것을 검토하고,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겪는 모든 여성을 포함하여 의료 분야에서의 실질적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트랜스젠더의 권리보장과 비차별적 의료조치를 당하지 않을 간성인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42. 위원회는 인공임신중절이 모자보건법상 강간, 근친상간의 경우 등을 포함해 일부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남아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게다가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 9월 인공임신중절을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로 정의하여, 의료진을 형사처벌 및 의료면허 정지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조치를 이후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인공임신중절의 범죄화에 대한 합헌성 여부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는 당사국 정보에 주목한다.

43. 위원회는 이전 권고사항(CEDAW/C/KOR/CO/7, 문단 35)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하지 않은 인공임신중절이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강간, 근친상간, 임신부의 생명과 건강에의 위협, 심각한 태아 손상 등의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고, 모든 여타의 경우에도 인공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한 여성에 대한 처벌 조치를 없애고, 안전하지 않은 인공임신중절로 인해 합병증을 겪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임신중절 여성에게 양질의 수술후 돌봄체계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9차 심의 최종 견해(2024)]

40. 위원회는 기존의 임신중지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당사국 헌법재판소의 2019년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우려를 표한다:

(a)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새로운 규제 체계가 부재하고 임신중지가 아직 국민건강보험 보장에 포함되지 않아 여성이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b) 체외수정을 포함한 보조 생식 서비스가 비혼여성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c) 여성이 가족등록시스템에 아이를 등록하지 않고도 의료시설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023년 제정된 보호출산제법은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와 성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약, 임신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부족,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 미등록 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

(d) 여성과 소녀, 특히 장애인, 이주민, 난민 여성과 소녀들에게 책임있는 성 행동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가족계획과 적절한 가격의 현대적 피임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

41. 여성과 건강에 대한 일반권고 제24호(1999)와 세계 산모 사망률 감소 및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3.1, 3.7번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들을 권고한다:

(a)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임신중지 및 임신중지 후 서비스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포괄적인 규제 체계의 개발과 채택을 신속히 행하고, 이 체계를 국민건강보험 보장 체계에 통합할 것;

(b) 비혼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에게 체외수정을 포함한 보조생식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c)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와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임신한 여성과 소녀를 위한 지원 서비스의 강화 및 비혼모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을 경감하는 조치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미등록 출생의 근본 원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23년 제정된 보호출산제법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할 것;

(d) 여성, 특히 장애여성, 난민여성 및 망명신청여성, 이주여성 및 소녀들이 안전한 임신중

지와 임신중지 후 서비스, 적절한 가격의 현대적 피임법을 포함하여 충분한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 및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e) 의료용 AI와 원격의료를 포함하여 나이 든 여성들의 건강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첨단 기술의 사용을 고려할 것.

4. 제22대 국회와 정부가 이행해야 할 일들

(1) 여성 건강과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해 인구정책이 아닌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법.정책 프레임을 구축해야 한다.

앞서 짚은 바와 같이 여성 건강과 재생산 건강 영역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주요 조항들에 두루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각국 당사국 정부는 다른 권리의 영역과 사회 전반의 환경을 아울러 교차적, 포괄적으로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협약 제12조의 핵심 원칙을 짚은 일반권고 제24호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여성 건강, 특히 재생산 건강에 관한 국가 전략을 국가의 인구정책 계획에 맞추어 수립해 왔을 뿐 개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 포괄적 정책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제대로 해온 바가 없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23~2027),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기본적으로 각 계획에 대한 하위 과제로서 다루는 영역에 대한 인식이 단편적이거나 협소하고, 세부 이행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권리 보장에 요구되는 각 영역의 연계 체계에 대한 통합적, 교차적 프레임이 부재하다. 특히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내용에서는 임신, 출산 및 난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다 구체적으로 세부 시행 과제를 언급하고 있는 반면 안전한 임신중지와 피임, 성매개감염에 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이행 과제의 수준이 매우 단편적이다.

한국 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이전 권고를 포함하여 8차, 9차 최종견해 권고에서 거듭하여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특히 ‘낙태죄’가 더이상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지금, 임신중지를 건강권과 권리의 영역으로서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나아가 이를 계기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모든 영역이 두루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이에,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24호에서 당사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는 ‘포괄적 국가 전략’

의 방향에 따라, 여성 건강에 관한 제반의 보장 계획뿐만 아니라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초점을 둔 별도의 구체 전략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그간 최종견해에서 권고된 바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향을 담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기본법과 기본계획, 시행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2)

- 국가의 인구 관리 목적이 아닌 개인의 권리 보장에 초점을 둔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
-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의 과제들을 추진 과제로 제시
- 성교육, 월경, 피임, 임신.출산 및 임신중지, 보조생식기술, 성매개 감염, 성별의 확정 및 정정 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전 영역을 통합적, 교차적으로 반영하고 차별, 강요, 폭력, 낙인 없이 모든 이들이 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특히 이에 관해 위원회의 9차 최종견해 권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혼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에게 체외수정을 포함한 보조생식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다만 이때 보조생식기술의 사용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여성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되며, 보조생식기술의 사용과 지원은 국가의 인구계획을 위한 목적, 가족의 압력 등에 의해 강조되어서는 안된다. 보조생식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비용 등을 지원할 때는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사람은 보조생식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정확한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여성, 난민여성 및 망명신청여성, 이주여성 및 소녀들이 안전한 임신중지와 임신중지 후 서비스, 적절한 가격의 현대적 피임법을 포함하여 충분한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 및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보건의료, 노동, 교육, 주거, 복지시설, 사회보장 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의 영역에서 정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시행 체계를 마련
- 관련 영역의 국가 공무원,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과 연수, 가이드 마련과 시행
- 보장 계획의 이행에 관한 평가, 모니터링, 연구의 시행
-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전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시행 체계의 구축

: 보건의료 시설에 관한 통합 정보 시스템, 비용, 이동, 시설의 이용, 통.번역, 활동 지원, 쉬운 언어 또는 그림으로 된 정보 제공 등

2)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에서 마련한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 (안)'(2020.11.4. 발표) 참고 <https://srhr.kr/policy/?bmode=view&idx=6142616&t=board>

■ 아울러,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현재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일반권고 제24호의 내용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으며 구체 수준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평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당사국 정부의 보장 책임에 관한 내용]

- 여성이 자신의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용한 자원을 확대하고
- 보건의료 서비스, 정보 제공 및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학대에 관하여 이를 다룰 수 있는 보건 서비스 제공과 이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행 및 정책 입안
- 보건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성인지적 훈련
- 무력 충돌 상황에 처한 여성, 난민 여성과 같이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성을 위한 적절한 보호와 건강 서비스의 보장
- 여성이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지불 가능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여성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하고,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비밀유지를 보장받아 자신의 필요와 관점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가족계획에 관련한 모든 방법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 청소년 보건 교육
- 고령의 여성에게 불리한 여건이나 장애를 다루는 건강 서비스를 노인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 ※ 9차 최종견해에서 권고하고 있는 나이 든 여성들의 건강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에 대한 고려를 포함할 것
- 건강 관련 서비스가 장애 여성들의 요구에 즉각 부응하고 그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당사국 정부가 제거해야 할 장벽에 관한 내용]

- 보건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 공급을 거부하는 일
- 혼인 여부 또는 남편, 파트너, 부모 등 제3자, 보건 당국의 허가를 이유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당하는 일

- 여성에게 필요한 의료행위를 범죄화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
-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높은 비용
- 배우자, 부모 혹은 보건 당국의 사전 허가 요구
- 보건 의료 시설까지의 원거리 및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의 부재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시행되는 피임
- 의무적으로 강제되는 성매개 감염 검사 혹은 고용 조건으로 임신 여부에 대해 검사하는 것 등 여성의 정보에 근거한 동의와 존엄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강압적인 행위들

(2) 임신중지 비범죄화에 따른 보장 과제

위원회는 2018년 8차 심의에서 일부 제한적 허용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당시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어 있던 위헌소송의 결과에 주목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9차 심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임신중지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비범죄화’가 된 사실에 주목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정입법의 시한이 만료되어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이 만료된 현재 임신중지의 비범죄화는 ‘법적 공백’이 아니라 그 자체로 확정 상태임을 정부와 국회는 명확히 인지하고 인정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의 2022 임신중지 가이드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범죄화는 자기 의사에 의한 임신중지에 관해 어떠한 처벌이나 장벽도 두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임신중지가 더 이상 국가에 의한 처벌이나 허용의 대상이 아닌 개인의 온전한 건강권과 제반의 인권에 관련된 영역으로 전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임신중지는 완전히 비범죄화되어야 한다. 양질의 임신중지 케어에 대한 접근과 시기에 맞는 제공을 방해하는 규제, 정책, 프로그램상의 장벽은 물론 실행에 있어서의 장벽도 제거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근거 기반(grounds-based) 접근(역자 주: 임신중지 사유에 따른 허용과 규제 방식), 임신 기간에 따른 제한, 필수 대기 기간의 설정, 제3자 승인 요구,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제약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가는 (의료인의) 신념을 이유로 한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장벽으로부터 임신중지 케어에 대한 접근과 지속성을 수호해야 한다.

임신중지 규제는 여성의 SRHR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하는 것, 여성을 위한 적극적인 보건 성과 달성, 양질의 피임 정보 및 서비스 제공,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여성, 청소년, 장애 여성,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민족, 종교 및 인종 소수자 여성, 이주민 및 실향민 여성, HIV 감염 여성 등을 포함한 주변부에 있는 사람

들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임신중지에 대한 규제는 평등과 반차별에 입각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촉진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2022 임신중지 가이드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2 Abortio Care Guideline> 중
Chapter 2. Abortion regulation including relevant recommendations
<https://srhr.org/abortioncare/#translation>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미 임신중지의 비범죄화가 이루어진 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과거와 같은 처벌과 제한적 허용 방식의 입법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아무런 권리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시행한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가 시행한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이와 같은 책임 방기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임신중지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찾아가던 의료기관에서 몇 차례의 진료 거부를 당하거나, 많은 비용을 내도록 강요당하고, 이로 인해 돈을 빌리게 되며, 스토킹, 협박, 폭력 등에 직면했다.³⁾ 또한 여전히 모자보건법의 조항에 따라 남성 파트너/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여 의료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관행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가 그에 따른 권리 보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모자보건법상의 합법적 임신중지 요건에 따른 기준 조차도 제한적,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많은 상담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의 경우 의료기관 등에서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조력하지 않고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와 승인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가 정보와 안내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타인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심각한 권리 침해를 겪고 있다. 또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콤비팩 사용이 높은 성공률(임신 9주 이내 사용시 95~99%, 미소프로스톨 단독 사용시 84~96%)을 보이고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필수핵심약품 목록에 등재할만큼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유산유도제의 도입 지연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을 사용하지 못해 의료기관에서도 미소프로스톨만을 오피

3) 최근 보도된 SBS 뉴스토리는 현재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임신중지가 보장되지 않아 공식 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병원이 한 환자에게 2,800만원의 병원비를 청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 바 있다. (SBS뉴스토리, “낙태죄 폐지 5년..방치된 임신중지 현실은?”, 2024.6.21. 방송 <https://www.youtube.com/live/MSjITDFy2dw?feature=shared>)

라벨로 사용하거나 메토트렉세이트 등 다른 약을 사용 중이며, 많은 여성들이 온라인에서 성분과 용량, 제조처 등이 불분명한 약을 구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9차 권고에서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보장 체계에서 임신중지가 보장되지 않아 안전한 임신중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포괄적인 규제 체계의 개발과 채택을 신속히 행하고,⁴⁾ 이 체계를 국민건강보험 보장 체계에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 보장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 법 체계

-행법에 다시 처벌이나 제한적 허용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향후 모든 입법과 관련 법률의 개정은 비범죄화와 권리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함

-국가 계획이 아닌 개인의 권리 보장을 중심에 둔 기본법으로서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

-권리 보장 방향에 따른 구체 법령의 정비: 모자보건법의 폐지(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으로 대체) 또는 전부개정(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의 방향에 맞는 구체 조항을 중심으로), 의료법, 약사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

■ 보건의료 체계

-국민건강보험 보장 체계에 임신중지 관련 항목 전면 적용(내.외과적 방법 모두 포함)

-유산유도제(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콤비팩) 도입과 접근성 확대

-전국의 보건의료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내과적/외과적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정부 차원의 통합 정보 제공

-보건소부터 국.공립 의료기관, 대학병원까지 임신의 기간, 임신 당사자의 건강 상태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상담 체계

-위기임신 상담이 아닌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 양육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보편적 상담 체계 구축

-상담 시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상담만이 아니라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및 사회보장,

4) 위원회의 해당 권고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고 비범죄화에 주목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언급하는 ‘규제 체계’란 기존과 같은 처벌이나 제약이 아닌 비범죄화에 따른 보건의료 및 정책, 제도 전반에서 권리의 보장과 침해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규정과 체계를 의미한다.

관련 지원 체계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과 정보 제공 체계 구축

참고로, 이와 같은 내용을 이미 구축하여 반영하고 있는 뉴질랜드 보건부의 임신중지 정보 사이트를 이 글의 끝에 첨부하였다.

(3) 보호(익명)출산제 및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전면 재검토⁵⁾

위원회는 특히 이번 최종견해에서 보호(익명)출산제의 도입과 시행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언급하고 “미등록 출생의 근본 원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23년 제정된 보호(익명)출산제법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보호(익명)출산제가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와 성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약, 임신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부족,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 미등록 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미등록 출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와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임신한 여성과 소녀를 위한 지원 서비스의 강화 및 비혼모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을 경감하는 조치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위원회가 언급한 바와 같이 보호(익명)출산제는 아동 유기나 살해, 출산 미등록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정법 및 시행령 세부 조항, 추진 체계 등 전반에서 오히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고 특히 아동·청소년과 장애여성 등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고 취약한 여건에 있는 이들의 권리를 더욱 심각하게 침해할 문제를 안고 있다. 보호(익명)출산제의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⁶⁾

- 비범죄화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정한 상황에 한해 ‘위기임신’을 규정하고 상담하는 지원 체계로 인해 상담과 지원에 관한 폭넓은 접근성을 방해하며,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임신·

5) ‘보호출산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으나 이 내용은 원래 ‘익명출산제’ 도입을 위해 추진되었던 것이며, 사실상 익명출산제의 도입과 시행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이를 드러내기 위해 ‘보호(익명)출산제’라고 쓴다.

6) 이 부분의 내용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는 시민사회 공동 보고서: 재생산 권리의 침해와 익명 출산 제도의 문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및 여성인권위원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사단법인 두루 외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및 인권 관련 33개 단체 연명),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반대 의견)>를 함께 참고.

출산 및 임신중지에 관한 상담, 지원 체계 구축을 지연시킴

-‘위기임신’ 중심의 상담 체계는 특정한 경우만을 상담과 지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조건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당사자의 접근성과 포괄적 지원 체계의 구축을 모두 제약함. 임신의 중지 또는 출산 이후의 양육 여부에 관해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의 임신 당사자의 상황은 특정한 시기와 조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임신 전 기간 중에 연속되거나 단절, 재발생할 수 있음. ‘위기임신’ 중심의 상담 체계는 오히려 적시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에 접근하는 데에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 임신중지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이전에 익명출산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임신 초기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음에도 상담 시 임신중지 결정과 그에 필요한 보건의료,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연계 지원을 지연시켜 결국 출산 후 익명 출산을 하는 방향으로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질 우려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임신의 유지와 중지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보건의료 연계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에도 ‘위기임신’과 보호(익명)출산제에 따른 상담, 지원 체계 중심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적시에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과 보편적 접근성 보장 체계는 계속해서 지연됨. 상담 시에도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보건의료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 정보와 자원이 부족하여 적시에 필요한 지원이 연계되지 못하고 결정만 지연키게 됨.

-또한 출산 이후 양육을 하게 될 당사자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주거, 고용, 생활, 교육 지원 등을 마련하기 보다 보호(익명)출산제 중심의 상담과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일시적인 지원만을 반복하게 됨.

- 피성년후견인과 청소년의 경우 임신한 당사자보다 보호자 등 제3자에게 의사결정과 대리 신청의 권한을 부여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9조(보호출산 신청)에서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임신 당사자가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 제3조(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에서는 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이 가능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를 피성년후견인, 형법 제9조의 연령이 되지 아니한 자(14세

미만), 그 밖의 심신장애로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된 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14세 미만, 심신장애로 인한 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녀를 보호자의 신청으로 분리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청인의 양육 또는 인도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정당화될 수 없음. 특히 신청인이 형법 제9조의 연령인 14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자에 의해 보호출산 신청이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 신청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필요시에는 보호자의 추가적 신청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을 신중히 고려할 수 있으나 신청 자체가 본인의 의사에 반할 우려가 큰 보호자의 일방적 신청권한은 주어져서는 안 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협약 이행 2-3차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대행의사결정’을 ‘조력의사결정’으로 대체하고, 장애인의 자율성과 의지 및 선호를 존중하는 의사결정 지원 제도로 교체할 것을 권고함. 이 조항과 같이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조력의사결정’이 아닌, ‘대행의사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조항임.

-유엔아동권리협약 또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의사를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있어서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임. 이에 따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임신의 유지와 중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 등 보호자에게 대신 결정할 권리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지 않으며, 임신의 유지와 중지, 양육 등에 관한 상담과 정보제공은 아동·청소년 당사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결정하되 보호자에게는 이를 조력할 수 있는 역할만을 부여하고 있음.

- **익명 출산으로 인해 아동의 친생 부모에 대해 알 권리를 비롯한 제반의 인권을 침해**

-여성차별철폐협약 16조는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게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권리, 아동에 대한 보

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념 중에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할 것과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보호(익명)출산제의 시행은 이와 같은 16조의 방향에 전면으로 위배됨. 현재 한국에서는 혼인상태에 있지 않거나 혼인 외 관계에서 임신한 여성들의 경우 한국 법률상의 부계 우선주의로 인해 자녀 양육 시 많은 낙인과 차별에 시달리며, 비혼 여성 양육자에게 주어지는 사회복지 자원과 경제적 지원 또한 부족한 상태임. 이주민, 난민 여성 역시 한국인 남성과의 혼인 관계 유지 하에서 출산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주민 간 가족 구성과 출산, 양육에 있어서는 출생한 아동의 국적과 거주지위조차 보장되지 않으며, 난민 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의료 접근성에 대한 제약으로 거의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익명출산제도와 이를 중심에 둔 지원 체계는 이와 같은 차별이 공고한 상황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결정을 지연시키고, 익명 출산에 대한 책임마저 출산한 여성에게 전가하며, 향후 아동이 출생증서 공개를 요청할 시에도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보를 열람할 수 없어 아동 최선의 이익에 관한 원칙에도 어긋남.

■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다음의 사항을 적극 재검토하고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함.

- 보호(익명)출산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폐지
- ‘위기임신’이 아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임신·출산 및 임신중지, 양육 상담, 지원 연계 체계 구축
-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차별과 낙인 없이 임신·출산, 임신중지를 지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와 지원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전국적으로 이에 관한 통합 정보의 제공과 연계가 상담 시스템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여건, 폭력적인 상황 등에 처해 있는 임신 당사자와 양육자 및 출산한 아동을 위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주거, 고용·노동, 교육, 생활에 관한 근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을 제공

- 혼인 관계 중심,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와 사회보장, 출산·양육 지원 체계를 바꾸어 모두에게 보편적인 지원과 보장이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 구축하고 이를 제약하는 법·정책·제도적 장벽을 제거
- 거주지위에 관계 없이 이주민, 난민의 출생등록과 임신·출산 및 임신중지, 양육에 관한 지원 체계 구축을 포함하여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시행

※참고 : 뉴질랜드 보건부에서 제공하는 임신중지 정보 사이트

<https://www.decide.org.nz/> 의 정보 맵⁷⁾

<p>가까운 임신중지 서비스 제공자 찾기</p>	<p>-마지막 월경일과 가까운 지역을 찾아 입력하면 근처에 있는 임신중지 서비스 제공 기관의 위치와 관련 정보를 볼 수 있음 -의료기관 정보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임신중지 방법(외과적/내과적 방법), 가능한 임신 기간(해당 의료기관에서 임신 몇 주까지 임신중지 지원이 가능한지),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음</p>
<p>임신중지에 대한 일반 정보</p>	<p>임신일까요? -임신 일자 계산기 -임신 증상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한 테스트기 구입 정보, 임신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과 지원 기관에 관한 정보 -임신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선택지 찾기 → 피임에 관한 선택지 찾기</p> <p>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면 생각해 볼 것들</p> <p>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선택지 찾기 -임신을 유지하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지원 기관과 의료 기관, 입양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는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 -임신을 유지하고 싶지 않을 때 찾을 수 있는 지원 기관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언제 결정을 내려야 할까? → 되도록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은 이유 -임신중지는 당신의 권리를 알려주는 정보</p> <p>피임에 관한 정보 -가족계획센터에서 피임에 관한 정보 알기 (사이트 연결) -임신중지 후의 피임에 대한 정보 안내</p>
<p>임신중지를 고려하고 있다면</p>	<p>-임신중지란? (수어 영상 포함) -임신중지 방법에 대한 안내 (수어 영상 포함) : 임신 초기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 방법(임신 10주까지), 임신 초기 수술을</p>

7) 이 표는 필자가 2023년 7월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출생미등록 아동문제, 근본적 해법은?> 긴급좌담회에서 발표했던 발제문 '여성과 아동 모두를 위한 임신중지와 성·재생산 권리 보장의 필요성'에서 옮겨 옴.

	<p>통한 임신중지 방법(임신 13-15주까지), 임신 14주 이후의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 방법, 임신 14주 이후의 수술을 통한 임신중지 방법</p> <p>-주치의의 연계 소견서가 필요한지 → 필요하지 않고 가까운 임신중지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가면 된다는 안내</p> <p>-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p> <p>-누가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 임신 20주까지는 자격을 갖춘 의료인(조산사, 간호사, 의사 포함), 임신 20주 이후는 두 명의 의료인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정보</p> <p>-임신중지 비용에 대한 정보 : 무료로 제공된다는 정보, 임신중지를 위한 이동이 필요할 경우 여행 경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정보, 뉴질랜드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비용과 지원 정보</p> <p>-임신중지는 당신의 권리이며 뉴질랜드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지원한다는 안내</p> <p>뉴질랜드 원주민 부족에 대한 지원 정보 (부족 문화에 대한 존중, 문화와 관습을 지키기 위한 지원 정보)</p> <p>임신중지를 고려하고 있는 당사자의 파트너, 부모, 지인, 친구 등을 위한 조언 : 당사자를 존중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안내</p> <p>가정폭력 피해자, 이주민, 난민, 청소년 등 취약 계층과 위기 상황에 있는 당사자를 위한 지원 정보</p>
<p>임신중지 방법</p>	<p>-임신중지 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의료 정보의 제공</p> <p>-전화 서비스를 통한 초기 임신중지 유산유도제 제공에 대한 정보</p>
<p>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정보</p>	<p>-안전한지 → 대부분의 임신중지는 안전하다는 정보,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감염에 대한 정보, 임신중지가 이후의 임신이나 가임력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없다는 정보</p> <p>-통증과 불편함에 대한 정보</p> <p>-임신중지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정보 → 대부분의 임신중지는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실패하는 경우 의료인이 가이드를 줄 것이라는 정보</p> <p>-임신중지 후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상담에 관한 정보</p> <p>-임신중지 후의 피임에 대한 정보</p> <p>-임신중지 전/약을 이용한 임신중지/수술을 통한 임신중지/임신중지 후에 고려할 사항들에 대한 정보</p>

<p>임신중지 서비스 이용 방법</p>	<p>단계별 가이드</p>
<p>임신중지와 당신의 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산 건강과 임신중지를 비롯한 건강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안내 -원주민 부족은 신체에 대한 결정권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자율성을 가진다는 안내 -임신중지 관련 법에 대한 안내 -임신한 사람은 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도 임신의 유지나 중지에 대한 강요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스스로의 동의에 입각한 임신중지를 존중받을 수 있다는 안내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로서비스와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 -제3자(부모, 파트너 등)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정보와 동의에 대한 결정 권리는 당사자에게 있음을 안내, 의료인은 당사자에 대한 정보 안내와 동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안내 -괴롭힘이나 위협 없이 임신중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안내 (임신중지를 방해하거나 반대 캠페인 등으로 위협을 가하는 이들이 있다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주변 구역을 ‘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 있음을 안내함) -임신의 유지나 중지에 대한 결정을 바꿀 수 있으며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 -상담은 본인의 선택이며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안내 -의료인이 임신중지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가능한 빨리 가까운 임신중지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연락처를 안내할 의무가 있다는 정보⁸⁾

8) 뉴질랜드에서는 임신중지 비범죄화와 함께 의료인의 거부권을 인정하였으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거부권은 실질적인 접근성의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인 거부권을 인정하면서도 거부할 경우 반드시 임신중지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할 의무를 두고 있지만 이 또한 당사자에게는 의료기관을 다시 찾아가야 하는 과정에서 비용, 거리, 시간, 휴가 일정이나 돌봄 일정의 조정 등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게 만든다. UN 자유권 위원회 일반논평 36호 초안(6조 생명권) 중 9항(2018,10)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당사국은 새로운 장벽을 도입해서는 안되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을 부정하는 현존하는 장벽을 없애야 한다. 이러한 장벽은 개인 의료 제공자의 거부 행위도 포함된다. 당사국은 모든 상황에서 기밀을 유지하여 여성과 여아에 대한 양질의 산전 의료조치 및 임신중지 후 보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 성평등 노동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UN의 각종 인권 기구들은 대한민국에 지난 20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왔다. CEDAW에서도 금번 9차뿐 아니라 지난 8차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은 그 포괄 대상이 광범위한 사회적 소수자, 약자이며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성차별적인 상황 자체만을 차별로 인정하지 않는 좁은 해석 범위로 운용되어 왔다.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면 성차별로 판단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차별과 불이익 사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의 입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면접 과정에서의 성차별과 같이 그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되는 이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노동자는 다시 또 배제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여성노동자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듯 다양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차별 상황 자체를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CEDAW 회의 과정에서도 위원들의 차별금지법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Ms. Rangita de Silva de Alwis 위원은 “차별금지법은 CEDAW의 근간이며 실질적이고 강력한 차별 금지조항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차별금지법이 없다”면서 “차별금지법이 언제 제정될지 궁금하다”고 질의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방지할 필요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행위 피해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정책개선 권고, 의견 표명 등을 통해서 성소수자 편견에 대한 인식 재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답변이 우려스러운 것은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만 인식되는 현실이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독립보고서에

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내용을 삭제한 채 제출하였다. 인권위 전일위원회에서 보고서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할지를 놓고 표결했으나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참석 위원 10명 중 4명이 찬성, 6명이 반대 또는 기권했던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다양한 특성의 소수자들에게 작동하여 차별을 막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이다. 차별금지법은 그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고 인권국가를 지향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법이다. OECD 국가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국가는 단 두 나라 뿐이고 그 중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차별금지법은 이제 인권 국가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법이다. 시민들이 가진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서로가 인정하며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차별금지법이 18년 동안 공회전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 탓이다. 모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정부와 국회의 책무를 다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때다.

[9차 권고]

여성에 대한 차별 및 차별적 법률의 정의(13)

위원회는 이전 결론적 견해를 반복하고(CEDAW/C/KOR/CO/8, 13항),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협약 제1조 및 제2조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목표 5.1 사이의 연관성을 상기하면서, 당사국이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시킬 것을 권고합니다.

->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빈곤 여성,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간성 여성, 장애 여성, 망명 신청 및 난민 여성, 무국적자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독신 여성, 청소년 및 고령 여성 등 취약한 여성과 소녀들이 직면하는 여러 형태의 차별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의 직접 및 간접 차별을 모두 다루는 법적으로 그리고 사실상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채택의 구체적인 일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2. 성별임금격차

한국의 극심한 성별임금격차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OECD 통계 집계 이래 단 한번도 놓친 적 없는 OECD 1위의 성별임금격차는 사실상 한국 사회에 저출생만큼의 재앙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31.2%⁹⁾의 임금을 떼이는 현

9) 통계청(2024),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4' 보고서

실은 여성들의 의욕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아가고 있다. 남성 역시도 여성에 비해 더 많이 받는다는 착시에 사로잡혀 낮은 임금이 당연시되기도 한다. 한국은 이뿐 아니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지난 2013년부터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한 이래 12년 연속 ‘여성이 가장 일하기 힘든 나라’ 1위로 꼽히고 있다. 유리천장 지수는 여성의 노동참여율, 교육 및 소득 격차, 고위직 여성 비율, 육아 환경 등을 평가해 수치화한 항목이다. CEDAW는 이러한 여성혐오적 노동 현실에 높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차별적 현실은 노동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며 여성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하지만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의 인지와 해소에 대한 고민 수위는 매우 낮고 정부와 국회의 대처는 몹시도 미온적이다. 이는 정부 구조만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성별임금격차를 전담하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노동을 담당하는 부서를 찾자면 고용노동부에 있는 고작 12명이 전부인 여성고용정책과와 5명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14명인 경력단절여성과가 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성별임금격차를 고민하는 담당자는 없다. 대부분 새일센터 운영관리, 육아휴직 등의 제도 운용 등 행정적 업무에 치중되어 있다. 성별임금격차를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하는 전담이 없는 것이다. CEDAW는 이전 권고에서도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해 온 바 있다. 특히 지난 8차 권고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역량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

CEDAW 회의에서 성별임금격차에 대해 질문하는 위원에게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답변하였다. “성별임금격차 관련하여 답변. 정부는 성별임금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여성의 경력단절,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 성별직종분리 현상 등으로 보고 있”어 해결을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육아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양질 일자리로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새일센터를 통한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규모별, 산업별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 고용상 성차별 해소 및 고용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이 답변은 정부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별일을 하지 않는다고 실토한 것이다.

일·육아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다고는 하나 제도의 사각지대가 지나치게 넓다. 육아관련 제도는 대부분 공공기관과 대기업 근무자들에게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다. 2022년 남성 육아휴직자 중 70.1%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들이다.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도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없다. 한편 경력단절의 원인은 단순히 임신·출산·육아가 아니라 계약만료 등 불안정한 고용환경에서 다양한 사유

로 발생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대책을 만들지 않는다. 심지어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전무하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 제도는 아무런 상별이 없는 제도로 그 효과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300인 이상 사업장만으로 대상으로 하는데 여성노동자 중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이들은 고작 8.4%에 불과하다. 여성노동자의 69.5%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은 없다.

금번 9차 권고는 지난 8차 성별임금격차와 관련한 8차 권고를 구체화한 듯 하다. 8차 권고는 '성별 임금 격차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역량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할 경우 엄격한 제재를 가하며, 공공 및 민간 기업을 위한 임금 공개 시스템 도입하는 등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의 이행을 위하여 고용평등법의 엄격하게 시행할 것'이었다. 임금 공개 시스템 도입과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내용의 권고안이었지만 이 권고가 실행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감독과 임금 실태 공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책들은 이미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것이기도 하다. 다만 공개만으로 그쳐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공개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의 정밀한 설계를 포괄해야만 한다.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응 구조를 구성 등이 시급하다.

[9차 권고]

고용(38)

(a) 성별임금격차의 지속과 2023년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성 격차 지수에서 당사국이 146개국 중 105위에 머물렀다는 점

->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고 이를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 (i) 정기적인 근로감독의 실시 (ii) 정기적인 임금 실태 조사의 실시 (iii) 고용주들에게 성별임금격차 데이터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성별에 따른 임금 및 연금 격차의 원인을 보다 잘 이해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

(b)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남성은 72.7%인데 비해 여성은 55.1%라는 점);

->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성별고정관념의 해체 등을 통해 여성의 공식 고용 기회를 높이고, 고용주를 대상으로 성평등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실시하며, 여성 고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를 도입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

(c) 여성의 노동 환경 측면에서 당사국이 12년 연속으로 OECD 29개국 중 최하위에 있다는 점

-> ▲차별과 위협이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터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발전을 가로막는 방해물을 식별하기 위해 노동법과 정책을 철저히 검토할 것 ▲탄력적 노동 시간과 아동 양육 지원을 포함하여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 ▲여성을 위한 노동환경의 개선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에 매년 보고할 것

(e)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과 산업 기반 시설 분야의 관리직에서 여성이 과소대표되고 있는 점.

-> 민간기업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전통적 영역을 포함하여 리더 지위에 여성을 채용하도록 하는 등 민간영역에서 여성 고용과 경력 개발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강화할 것

한편 한국 여성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지만 노동시장 참여율은 5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 성차별로 인해 좋은 일자리와 승진이 어렵고 좁은 정규직으로의 입직구 탓에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노동을 길게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요구하는 사회환경도 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성별임금격차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매우 밀접

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이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무급으로 요구되는 돌봄노동은 임금이 낮은 여성이 도맡는 것이 합리적인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CEDAW의 권고는 성별고정관념 해체와 고용주의 성평등 인식개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컨설팅 서비스 등이다. 사회적 인식 개선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다. 정부와 국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성평등을 기본 철학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부실한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로의 변화와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초단시간 노동

여성의 낮은 노동시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택했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책은 여성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여성들의 시간제 비율이 점점 증가하면서 그 안에서 법적으로 무권리 상태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확대된 것이다. 2000년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남성은 38만 6천명(210.2%)이 증가했고, 여성은 71만 9천명(284.6%)이 증가했다. 같은 시기 성별 전체 취업자 수 중 초단시간 비율은 남성이 1.5%에서 3.7%로 2.5배 증가했고, 여성은 2.9%에서 8.3%로 2.9배 증가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한 법 규정은 제외를 위한 조항 밖에 없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그리고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적용 제외 조항은 초단시간 노동자의 주휴와 연차, 퇴직금을 앗아갔고, 고용보험 가입조차 가로막고 있다.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기간제법 시행령에도 존재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 제외 조항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을 가로막고 초단시간 노동자를 기한없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초단시간 노동자 관련 규정들은 통상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 사이의 차별을 금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한국의 법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법 조항은 세계적으로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8차 권고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여성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할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도 달라진 것은 없다. 9차 권고는 사회보장 범위의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를 차별하기 위한 법이 아닌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 적용 제외 조항들을 삭제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 하고 폐기되었다. 22대 국회에서는 차별을 조장하는 법을 개정해야

만 할 것이다. 정부 역시도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9차 권고]

고용(38)

(d) 주로 여성들이 대부분인 주15시간 미만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이 부족하다는 점
-> 주15시간 미만 계약으로 고용된 여성을 포함한 노동자들을 포괄하도록 사회보장 범위를 확대할 것

4. 가사노동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주가사노동자 확대 사업이 CEDAW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Ms Corinne Dettmeijer -Vermuelen (Netherlands) 위원은 “100명의 가사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근무하도록 합의한 걸로 안다, 가사노동자가 착취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고 질의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시범사업은 가사노동자의 고용노동에 이용 계약을 맺은 가사관리인이 출퇴근하면서 서비스 제공. ……..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국내의 가사노동자의 근로개선을 위한 국내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을 제공받을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살펴보면 가정방문형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가정 내 돌봄 수요를 원활히 충족 및 양육비용 절감을 위해 외국인력 공급 확대·활성화 추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이주가사노동자를 도입하는 이유가 비용 절감이 최대 목적임을 밝혀 놓고 있는 것이다. 결국 비용 절감은 이주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의 가족을 가사사용인으로 비공식 가사·돌봄노동자로 활용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는 노동법에 의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은 민간기관이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합리적 비용으로 도입 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민간 중개업자를 통한 이주가사노동자 도입은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는 노동 착취와 과도한 수수료 및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조장하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참으로 참담하다. 서울시의 이주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도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

에도 시행이 되기도 전에 그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대책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100명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추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본 대책은 이미 확대를 확정하고 그 숫자까지 명시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은 노동관계법에서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은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던 1953년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당시의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과 현재의 노동환경은 많이 달라졌다. 또한 많은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이 존재하며 노동자성을 다투는 상황이지만 가사노동자는 이러한 문제 제기조차도 원천적으로 차단당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 보장 확대 정책에서도 가사노동자는 제외되고 있다. 금번 권고에서 ILO189호 협약의 비준을 제안한 것은 근본적인 상황의 변화를 요구하는 의미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 권고를 엄중히 받아 안아야 할 것이다.

[9차 권고]

고용(38)
 (f) 국제노동기구(ILO)의 2011년 가사노동자협약(제189호)을 비준할 것.

5. 돌봄

한국 사회의 돌봄은 여전히 여성에게 전담된 무급 노동과 저임금,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중고령 여성의 유급 노동에 기대어 있다. 가사돌봄직종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2021년 기준으로 여성 비율이 94.2%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¹⁰⁾ 코로나를 거치면서 돌봄이 필수노동임을 온 사회가 인정했지만 그 뿐이다. 다른 변화는 없었다. 여전히 가정 내 돌봄 노동은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고, 중고령의 돌봄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저임금 노동을 ‘사랑과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수행하고 있다. 이반일리치는 돌봄노동에 대해 ‘이 노동은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만연해 있으면서도 가장 문제되지 않는 억압적 차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 사회에서 돌봄의 사회적 시스템은 이 억압적 차별의 기반 아래 설계되었다. 돌봄 위기의 핵심은 젠더불평등¹¹⁾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가 대부분인 돌봄 노동이 이처럼 저임금이면서 불안

10) “대통령 지시에 번갯불 콩 볶아먹듯...가사노동자 실태조사부터”, 한겨레, 2023.6.12.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5482.html

11) 김영옥, 류은숙(2022), ‘돌봄과 인권’, 코난북스,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p.152

정한 고용인 이유는 정부가 성차별 기반아래 돌봄 시스템을 설계하였고, 이에 따라 돌봄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이를 악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돌봄 시스템은 부족한 공공 돌봄과 저평가된 돌봄노동으로 인한 노동자 착취로 정리된다.

CEDAW의 권고는 이러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보다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획기적인 제도와 계획을 채택할 것 ▲가족 내 여성과 남성의 가사 책임의 평등한 분담을 촉진하여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 부담을 인식하고, 줄이고, 재분배할 것 ▲노인 여성과 장애 여성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통합 돌봄 경제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공공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 이러한 권고는 결국 돌봄 중심사회로의 전환과 젠더 평등에 기반한 시스템의 새로운 설계를 요구하는 것이다.

[9차 권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42)

위원회는 임신이나 육아로 인해 경력이 중단된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재취업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전국적으로 159개 기관으로 늘리고자 하는 당사국의 계획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또한 소규모 기업의 60%가 여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COVID-19 위기에 대응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고용 안정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조성하는 등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들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돌봄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약으로 인해 여성들이 짊어진 심각한 돌봄 부담과 무급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많은 여성들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 > (a) 고용 중단을 경험하는 여성들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여성재취업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책 평가를 시작할 것
- (b) 소규모 기업의 여성 지원에 대한 기금의 영향과 COVID-19 위기에 대응한 인건비 보장 및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
- ©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역량 강화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돌봄 경제에 있어서 보다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획기적인 제도와 계획을 채택할 것
- (d) 적절한 가격의 보육 시설과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내 여성과 남성의 가사 책임의 평등한 분담을 촉진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무급 돌봄노동의 부담을 인식하고, 줄이고, 재분배하며, 가족 기업에 고용된 여성들이 적절한 보수를 받고 사회보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e) 노인 여성과 장애 여성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통합 돌봄 경제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통계와 증거에 기반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공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 이러한 정책은 여성과 남성 간 돌봄 책임의 평등한 분담을 촉진하고 여성 무급 돌봄 노동의 화폐 가치화를 촉진하는 캠페인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6. 이주노동자

관련 권고는 없었지만 회의장에서 논의된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이주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관련된 질문에서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답변하였다.

“한국정부는 성희롱 성폭력 근로조건 위반등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에 대해서는 국내인과 동일하게 횡수 상관 없이 사업장 변경 허가 중.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 직장 동료, 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쉼터 안내.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자 등과 신속 분리.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긴급사업장 변경. 숙소 관련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1년 1월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 주거환경 개선 규정 마련.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시 해당 건축물 숙소 거주하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횡수 제한 없이 변경 가능하도록 변경. 모성 보호를 위해 국내인과 차별없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일가정양립지원법률 동등 적용 중. 외국인 근로자가 임신출산으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만큼 연장가능. 신청변경기간 놓쳐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보호 중이다.”

하나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현실과의 간극이 매우 크다. 먼저,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강간, 준간강 등 강력범죄의 경우 신고할 경우 긴급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부는 관련 통계를 제시하여 실효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성폭력 관련 강력 범죄가 아닐 경우는 신고를 하고 나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동안 사업장에 머물러야 한다.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쉽지 않은 과정이다.

또한 성폭력으로 이주여성쉼터에 입소 가능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권은 한국인과 법률혼이나 한국 국적 자녀의 어머니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쉼터에 머무르는 것 이외의 시설 수급 등과 같은 지원은 불가능하다. 2008년 미투운동 이후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전국

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성폭력 관련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2023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모두 폐쇄하였다.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임신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고용허가제 사업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노동시간 조정, 야간, 휴일 노동 등의 배제 같은 모성보호가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자 스스로 힘들어서 그만두거나 권고사직으로 사실상 해고되고 있다.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모성보호는 사실상 전무하며, 관련한 정부의 점검이 이루어지고 않다. 임신한 노동자는 임신, 출산하는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최대 4년 10개월인 고용허가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태어난 자녀에 대한 아동 지원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

숙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농축산업 분야 주거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99.1%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이었고, 그중 74%가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기숙사 등 가설건축물에서 살고 있었다. 열악한 기숙사를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원한다 하더라도 70% 이상이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곳으로 옮겨봐야 비슷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7. 나가며

CEDAW의 노동영역의 9차 권고는 돌봄 시스템의 전환, 성별고정관념 해체 등 기본적인 인식이나 체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ILO189호 협약 비준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제안들이 많다. 이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거나 이미 효과가 입증된 방안들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한국 사회의 많은 병폐를 만들어 왔으며 모두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극심한 저출생과 사회에 대해 팽배한 불신, 청년 여성들의 높은 자살률, 여성 노인의 높은 빈곤율 등 그 결과는 이미 재앙적 상황이다. 정부가 CEDAW의 권고를 화물연대 파업 당시의 ILO의 권고안에 대한 대응처럼 ‘원론적 권고’라며 무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늦어질수록 사회적 위험은 높아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여 해야할 일을 하길 당부해 본다.

UN여성차별철폐협약 주요 내용 : 고용 분야

제11조

1. 당사국은 고용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모든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
- (b) 동일한 채용기준의 적용을 포함한 동일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 (c)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장안정 및 역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건을 누릴 권리, 그리고 견습, 고등직업훈련 및 반복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받을 권리
- (d)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 (e)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의 경우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 (f)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안전에 대한 권리

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 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
- (b) 종전의 직업,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 수당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제를 도입하는 것
- (c) 특히 아동 보육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 및 사회 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 의무와 병행시키는 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장 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
- (d) 임신 중의 여성에게 유해한 것이 증명된 유형의 작업에는 동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

3. 본 조에 취급된 문제와 관련한 보호적 입법은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정 폐기 또는 연장되어야 한다.

이주, 난민, 탈북, 장애, 성소수자, 한부모 등 여성 소수자 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

조윤희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제8차 최종권고 내용 및 이행 상황

가. 제8차 권고 내용

■ 여성차별의 정의 및 차별적 법률

13. 여성에 대한 직간접 차별 및 빈곤 여성, 소수 인종 종교 그룹 및 성적 소수자에 속하는 여성, 장애 여성, 난민 및 난민 신청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년, 여성 노인과 같은 소외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 이주, 난민 여성

(국적)

35.

(a) 병원 및 의료 종사자의 의무 출생등록 제도를 포함하여 외국인 부모 자녀의 출생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법률과 절차를 채택 이행할 것

(b)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의 귀화 절차를 현저히 줄여 어떤 경우에도 당사국에서의 최대 법적 체류기간 동안 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

(c)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및 교육 등을 통해, 법 규정 상 폐지된,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한국인 시민 신원보증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제할 것

■ 성소수자 여성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

22.

(b) 법의 주요 목적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 보장이 되도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것; 특히 성적 지향 혹은 성별 정체성과 관계없이 동성 커플 및 가족, 모든 여성들에게로 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 상담이나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화해나 조정 수단의 사용을 금지할 것; 법에 따른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보장할 것; 가정폭력 범죄에서 금지명령 위반 시 의무체포 정책을 도입할 것;

(교육)

37. 위원회는 당사국이 전통적으로 여성이 적었던 연구 분야에 진학하고자 하는 여성과 여아들을 위하여 맞춤형 보조금 및 대출 제공, 교육기관 내 할당제 실시 등의 임시 특별 조치를 포함한 더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개정하여, 차별적인 고정관념 내용을 삭제하고,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명확한 방법으로 연령에 맞는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건강)

41.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의 관점에서 건강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을 검토하고, 건강 영역에서 교차적인 차별을 겪는 모든 여성에 대한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시정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트랜스젠더가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및 인터섹스인 사람들이 비자발적인 의료 개입을 피할 권리를 당사국이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 농촌 지역 여성

45. 동 협약 및 농촌 지역 여성의 권리에 관한 일반권고 제34호 (2016)에 따라, 위원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진행한 ‘여성 어업인의 참여율 및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결과의 이행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당사국이 지속적으로 농촌 지역 여성의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여성의 목소리 및 젠더 관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협과 수협에 더 많은 여성 임원을 임명하기 위해 당사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나. 권고 이행 상황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제8차 권고는 이주, 난민, 탈북, 장애, 성소수자와 같은 소수자 그룹에 속하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교차적 차별과 성폭력, 건강과 교육 분야에서의 배제 등 문제에 대한 당사국의 입법, 행정, 사법 영역에서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위 권고와 관련하여 제9차 국가이행보고서를 통해 이주여성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의 보완,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노력, 양성평등 교육 지원,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정을 통한 지원제도 마련을 이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제9차 이행보고서와 관련한 쟁점 및 질의 답변서를 통해 양성평등교육의 의무화,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상담과 치료 및 교육 제공, 장애여성 폭력 피해에 대한 쉼터와 교육 제공,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배우자 신원보증서 제출 규정 폐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시행, 여성 농어업인의 의사결정권한 강화 등을 이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위 이행 내용은 대체로 소수자 여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거나, 또는 기존에 마련되어 있던 법·제도를 일부 보완 또는 확대한 것에 불과하여, 소수자 여성 인권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한국 정부는 소수자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한 핵심적이고도 근본적인 법안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이하에서 보듯 차별금지법 제정은 제9차 권고에도 포함되어 2년 내 그 권고 이행에 관한 조치를 보고하여야 하는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제9차 본심의 과정에서는 취약한 계층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 임시조치에 관한 질문, 이주·성소수자·장애 여성의 반차별, 교육,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으나 정부는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을 언급하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법·제도를 설명하는 데 그쳤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래 소수자 여성 인권보호에 역행하는 흐름이 발견되고 있는바, 가령 정부는 작년부터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면서 이들에게 최저임금법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밝혔고¹²⁾, 여당에서는 농촌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국적취득만을 목적으로 혼인 기간 유지 후 이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주 여성과 농촌 여성에 대한 혐오적 관점을 바탕으로 국적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¹³⁾ 불과 며칠 전 발생한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 참사로 사망한 절대다수가 이주여성노동자라는 사실은 소수자 여성이 우리 사회의 보호제도 밖에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을 정부가 묵인해 왔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또한 정부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년 성평등·성소수자를 교육과정에서 삭제한 바 있고,¹⁴⁾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의 수술 요건 유지, 동성 파트너의 권리 불인정 등의 성소수자 여성에 대한 법·제도적 차별도 공고히 유지되고 있다.

2.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9차 최종견해 및 정책과제

○ 여성차별의 정의 및 차별적 법률

12. 위원회는 헌법 제11조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협약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직·간접 차별과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모두 다룸으로써 형식적·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이 부재한 점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한다.

13. 위원회는 이전 최종견해(CEDAW/C/KOR/CO/8, 제13항)를 재차 반복하며, 협약 제1조, 제2조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 5.1번 사이의 연관성을 상기하면서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의 직·간접 차별을 비롯하여, 빈곤여성,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여성, 장애여성, 망명신청 여성 및 난민 여성, 무국적 및 이주여성, 농촌여성, 비혼여성, 청소년 및 노년여성 등 취약한 집단의 여성과 소녀들이 직면하는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다룸으로써 형식적·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명확한 타임라인을 설정할 것;
- (b) 연령, 국적,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세분화된 여성 차별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
- (c) ‘여성’은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맥락으로 사용되는 반면, ‘여자’는 여성을 대상화하는

12) 2024. 6. 25., KBS, 저출생에 ‘최저임금 제외’ 외국인 가사관리사 온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95880&ref=A>

13) 의안번호 2200641, 제안자 이현승의원 등 12인

14) 2022. 12. 14., KBS,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평등·성소수자 빠진 새 교육과정 확정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626488>

데 자주 사용되므로, 법률에서 여성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명시할 때 ‘여자’를 ‘여성’으로 대체할 것:

59. 위원회는 상기의 제13(a)항, 제19(b)항, 제27(a)항 및 제31(a)항에 포함된 권고의 이행에 관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들에 대한 서면정보를 2년 내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빈곤여성, 성소수자 여성, 비혼여성, 청소년 및 노년여성 등 취약한 집단의 여성이 직면하는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규율하여 형식적·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이 부재함에 우려를 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구체적 타임라인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지연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을 준수하고 소수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준엄하게 요청되는 당면한 과제이다.

-또한 다양한 취약성을 지닌 소수자 여성 그룹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종합적 시스템 마련이 요청되며, 연령별(생애주기별), 장애, 이주, 난민, 성소수자 등 각 소수자성을 지닌 여성 그룹의 현황을 파악하고 차별 사례를 수집하는 것은 교차적 차별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고정관념

24. 위원회는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자율성, 교육 및 직업 기회를 약화시키는, 가족과 사회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고정관념이 당사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페미니즘을 무기화하고 가족 가치와 페미니즘 가치를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는 포퓰리즘적 서사를 촉발시킨 반페미니즘적 정치적 수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반페미니즘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이 스스로를 “역차별”의 피해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는 이전의 성과를 되돌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반페미니즘적인 혐오 발언을 촉발할 위협을 초래한다.

25. 유해한 관행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공동 일반권고 제31호/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18호(2019년 개정된 버전)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 표현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하며, 이

를 실행하기 위해 남성과 소년, 공공 및 민간 기관들과 협력할 것;

(b) 관련 공무원, 언론인 및 멀티미디어 기관에 성인지적 언어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차별적인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여성의 대상화를 방지하며, 매체에서 변화의 적극적인 주도자로서의 여성의 긍정적 묘사를 증진할 것.

-위원회는 반페미니즘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백래쉬, 혐오 발언 등의 위협을 우려하며, 이러한 ‘유해한 관행’을 혐오표현에 대한 포괄적 정책 채택과 시행, 성인지적 교육을 통해 바로잡기를 권고하였다.

-성평등과 성인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며,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혐오범죄, 혐오표현으로 규율하고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혐오범죄나 혐오표현에 관한 형사법제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데, 범죄의 성격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라면 이를 불리한 양형기준으로 설정하는 방법,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같이 혐오표현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을 법제화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수있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학교는 성폭력·성희롱·2차피해 방지를 위한 규칙을 마련하여 조직 내에서 문제 해결을 꾀하고 있는데, 이에 ‘혐오표현’ 등 소수자 여성 인권 침해의 양태를 규정, 규율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 교육

36.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우려를 표한다:

비전통적인 학문 분야와 직업경로, 특히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과학 및 기술, 공학, 수학(STEM)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소녀와 여성의 지속적인 과소대표성; 교과서에서의 성별고정관념의 지속과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사 역량 강화의 부족;

소녀들을 사이버섹스를 위한 채팅방으로 끌어들이는 인공지능 기반의 딥페이크, 비동의성적 촬영물 유포, 불법촬영영상 및 성적 합성 이미지물의 폭발적인 증가가 당사국에 충격을 준 상황.

37. 소녀와 여성의 교육권에 관한 일반권고 제36호(2017)에 비추어,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과학 및 기술, 공학, 수학(STEM)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전통적으로 남성이 지배하는 분야에서 학업 및 경력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단념시키는 성별고정관념과 구조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하고 더욱 강화할 것;

당사국의 모든 교육 수준과 모든 지역에서 교과서 및 교육과정, 교수법 상의 성별고정관념을 제거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학술 프로그램, 교사들을 위한 직업 훈련에서 여성의 권리와 성평 등이 적절히 다뤄지도록 보장할 것;

여성과 소녀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의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을 다루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공지능과 관련한 중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 기업을 규제하는 인공지능 위험 관리 체계인, 인공지능 권리장전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을 발행하여 관련 규제 체계를 확립할 것.

- 위원회는 인공지능(AI)등 기술발전과 더불어 딥페이크, 비동의성적촬영물 유포, 불법촬영 영상 및 성적 합성 이미지물의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나는 반면, 그러한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과학 및 기술, 공학, 수학(STEM)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여성들이 과소대표되고,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부족함을 우려하여 위 학문 분야의 여성 진입을 저해하는 성별고정관념과 구조적 장벽 해결, 또 인공지능 기반의 젠더 기반 폭력 등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 관리 체계(인공지능 권리장전을 위한 청사진)를 확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 기술발전, 특히 인공지능(AI)의 발달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딥페이크와 같은 인공지능 기반의 젠더 폭력이다. 이와 같이 기술의 오·남용되는 방식은 여성들이 과학기술 등 학문 분야에서 소외되고, 학계의 성별고정관념이 공고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교육자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은 더욱 중요하게 시행되어야 하고,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보완하고 나아가 해당 분야의 여성 진출이 장려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편,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이용한 젠더 기반 폭력을 규제하기 위해 형사법적 규율을 뛰어넘어 기술발전 방향성을 고민하는 인공지능 권리장전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1) 이주, 난민 여성

○ 국적

34.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우려를 표명한다.

(a) 당사국의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귀화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결혼 이민 비자(F6)를 받아 대한민국 영토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귀화 절차가 길고 거부율이 높다는 점;

(b) 출생등록 절차에 있어서의 한계점 및 지연

35. 위원회는 여성의 난민지위, 망명신청, 국적 또는 무국적에 있어 젠더 관련 측면에 관한 일반권고 제32호(2014)를 상기하며,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여성과 남성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국적을 물려줄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법적으로 불안정한 체류 기간을 줄이기 위해 귀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처리할 것;

(b) 온라인 절차를 포함하여 이주, 난민 및 망명신청 여성과 소녀들이 출생등록 및 신분 증명서에 대하여 합리적인 비용을 통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

(c) 1961년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에 가입할 것.

-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귀화요건이 엄격하며 귀화 거부율이 높다는 점,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절차의 한계점을 우려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에게 국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귀화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출생등록 및 신분 증명서에 대한 여성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무국적자 감소 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의 불안정성과 귀화의 어려움은 가정폭력 등 피해상황에서 구제받기 어렵게 만드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국적법상 귀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의 입법이 요청된다. 또한 한국은 아직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과 산모가 차별받지 않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고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젠더 기반 폭력

48. 위원회는 난민, 망명신청자, 이주여성 및 소녀들이 당사국, 특히 국경 지역에서 교차적 형태의 차별과 불균형한 수준의 젠더 기반 폭력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과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성적 착취와 강제 노동의 위험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라, 체포된 후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미등록 이주민, 미등록 상태에서 재신청하는 이주민, 출국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주민을 포함한 망명 신청자들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항소 절차를 포함한 망명 절차 기간 동안 자주 구금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금이 수년에 걸쳐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49. 여성의 난민지위, 망명신청, 국적 또는 무국적의 젠더 관련 측면에 관한 일반권고 제32

호(2014), 분쟁 예방, 분쟁 및 분쟁 이후 상황에 처한 여성에 대한 일반권고 제30호(2013)와 여성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일반권고 제26호(2008)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난민, 망명신청자, 이주 여성에 대한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해결하고,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며, 가해자를 기소하고 적절히 처벌할 것;

난민, 망명신청자, 인도적 체류 지위를 지닌 여성과 소녀들 및 임산부와 수유 중인 여성들을 포함하되 이들에 국한되지 않는 국제적 보호를 요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구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제63조를 개정할 것;

성인지적 관점의 인터뷰 진행에 대한 이민국 직원 교육을 포함하여 젠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망명 절차가 적용되도록 보장하고,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이 보호 근거로서 인식되도록 할 것.

- 여성폭력, 인신매매의 문제는 난민, 망명신청자, 이주여성과 소녀들과 같이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겪는 여성들에게 더 빈번하고 극심하게 발생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같은 이유로 난민, 망명신청자, 이주 여성에 대한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해결하고, 젠더 기반 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등 이들을 보호할 것을 권고하였다.
- 난민, 이주여성은 자신들의 피해를 당국에 알리는 경우 권리 구제를 받는 대신,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구금, 강제출국을 당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관련 부처 담당자와 법집행자들이 젠더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이 난민, 이주여성의 보호 근거가 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젠더 기반 폭력 피해가 인지되는 한 이들에 대한 폭넓은 보호 및 지원이 제공되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농촌 여성

44. 위원회는 당사국이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재분배 정의를 추구할 것을 약속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농업과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촌 여성의 필요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45. 농촌 여성의 권리에 관한 일반권고 제34호(2016)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 5.a번에 따라, 위원회는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토지 및 기타 형태의 재산, 금융 서비스, 상속 및 천연 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이주여성을 포함한 농촌 여성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담보 및 기타 형태의 금융 신용 없이 저금리 대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여성 농업인을 포함한 농촌 여성의 소득 창출 기회, 사회보장,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농촌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이 동등하게 대표되도록 보장함으로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완전히 적용하고 이행할 것;

(b) 가부장적 태도와 성별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농촌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토지 소유 및 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위원회는 이주여성을 포함한 농촌 여성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저금리 대출, 사회보장,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등하게 대표되도록 보장하고, 토지 소유 및 이동에 있어 남성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4) 장애 여성

46. 위원회는 장애 여성이 특히 사법, 교육, 고용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당사국에서 교차적 형태의 차별에 직면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47. 위원회는 장애 여성에 대한 일반 권고 제18호(1991년)를 상기하며, 당사국이 장애 여성과 소녀들이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과 최첨단 보조 기술의 개발 및 사용을 통해 사법과 통합교육, 고용 및 보건 서비스, 특히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장애 여성이 사법, 교육, 고용, 의료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겪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이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최첨단 보조 기술의 개발 및 사용을 통해 교육, 고용, 보건(특히 성과 재생산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 장애 여성의 사회적 서비스 접근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동권의 보장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의 제한적 도입, 전철역 교통약자 개찰구가 양방향인 일방향으로 설정된 문제 등 실질적으로 장애 여성이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 중증 장애 여성의 경우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정보접근부터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게 정보접근과 의사결정을 보조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5)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 계층 여성

50. 위원회는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회의(COP28) 기간 동안 당사국이 “우리의 땅, 공유된 미래: 모두를 위한 균형있고, 영리하며, 혁신적인 도시와 지역을 향한” 계획을 지지한 점에 호의를 표한다. 이는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살아갈만한 공간을 만드는 데에 혁신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국가 영토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륙과 대양 사이의 연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기후변화 맥락에서 재난 위험 감소의 젠더적 차원에 관한 일반권고 제37호(2018)와 기후변화에 맞서는 조치들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3번에 따라 다양한 분야를 가로지르는 실존적인 도전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하여, 당사국의 책임을 요구하는 청소년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만족을 표한다. 또한 2015년 파리협정의 핵심 구성 요소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NDC)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의 1.5도까지 넘어서는 정도로, 최대 2도까지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당사국의 헌법재판소가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칠 기후변화 정책에 관한 네 개의 획기적인 사건에 대해 최종 변론을 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기후행동추적기(the Climate Action Tracker)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목표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당사국의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가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여성, 특히 농촌 여성, 장애여성, 빈곤 계층의 여성과 이주 여성들이 노출된 장소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필수 대처 메커니즘이 부족하여 기후변화에 불균형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51. 기후변화 맥락에서 재난 위험 감소의 젠더적 차원에 관한 일반권고 제37호(2018)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이 기후변화가 여성의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와 재난 대응 전략을 재검토할 것과, 기후변화, 재난 대응과 재난 위기 감소에 대한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도입, 이행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대표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다음 세대의 건강한 환경에 대한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당사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하도록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있어 더욱 의욕적으로 임할 것;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여성과 소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할 것;

여성과 소녀들의 특별한 필요를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과 효과적인 적응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와 재난 위기 감소 관련 법, 정책, 재정 및 프로그램에 있어 젠더 관점을 통합하도록 보장할 것;

농촌 여성과 장애 여성을 포함하여 여성과 소녀들이 커뮤니티에서 기후변화와 재난 위기 관리에 대한 문해력과 인식을 높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여성들과 소녀들의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의사결정과 적응 전략 및 행동 개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위원회는 여성, 특히 농촌 여성, 장애여성, 빈곤 계층의 여성과 이주 여성들이 기후위기에 더 큰 타격을 입는 것을 우려하면서, 기후변화가 여성의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와 재난 대응 전략을 재검토할 것, 이와 관련한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이행 등에 있어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대표될 것을 권고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및 시행은 젠더 관점을 견지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기후변화 관련 의사결정, 적응 전략 등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기후위기 자체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따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개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기후위기는 소수자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관련 법제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들이 받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젠더 관점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마련과 시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나가며

이주, 난민, 성소수자 등 다양한 소수자성을 지닌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 양상은 그 소수자성으로 인해 복합적이고도 교차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소수자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권리보호는 파편화된 개별 정책적 접근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일로 생각된다. 포괄적이고도 교차적인 차별방지를 위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또한 이들의 소수자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구체적인 차별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통합적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인권기구의 심의와 권고의 이행의무는 한국 정부(행정부)에 국한되지 않고 사법부, 입법부에도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차 권고의 이행 여부 보고와 심의절차 대응은 정부의 각 유관부처가 진행하고 있을 따름으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정부는 ‘사회적 합의 부족’을 내세워 면피하는 등, 당면한 소수자 여성 인권의 문제는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서 법제 개선의 필요성과 관련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심의 단계에서는 그 이행경과를 평가하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위한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적극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권고내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

[세션 3]

CEDAW 협약 및 제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국내 이행을
위한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CEDAW 협약 및 제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국내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CEDAW 협약 및 제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국내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CEDAW 협약 및 제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국내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한국 정부에 더는 지체하지 말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 여성, 반 성평등 정책 기조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제동을 건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큼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성별갈등을 조장하며 혐오와 배제에 기반한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가 여성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좌절되고 잼버리 망신으로 지난 2월 장관 사퇴 후 후임 장관은 수개월째 공석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성폭력범죄 강력처벌 및 피해자 지원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면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리얼돌은 허용했고, 공공기관 채용 성차별, 성평등에 반하는 저출생 정책과 돌봄의 공공성 축소, 돌봄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 전가하며 민간시장에 넘겼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권 외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최근 2년간의 여성 정책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개선사항으로 권고받아 2년 이내 이행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심각한 여성차별 현실로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를 철저히 무력화하고 있는 점,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을 ‘카르텔’로 매도하고 국가권력을 오용하면서까지 시민사회에 대한 감시와 위협의 날을 휘두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 평등 정책 전반의 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권고 전반에서 상기시켰습니다.

진보당은 위원회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성 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여성의 노동권에 주목해 국회에서의 역할을 높

여가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 했지만 우리나라 성 격차 지수는 146개국 중 105위입니다. 2022년 99위에서 더 벌어졌습니다. 성별 임금격차는 31.2%로 OECD 국가 중 27년째 압도적 1위입니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불합리한 고용구조 문제와 관련 있습니다. 근속년수가 남성 6.92년 보다 여성이 약 2.11년 정도 짧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여성노동자는 8.4%, 30인 미만 사업장 여성노동자는 69.5%입니다. 이는 여성이 비정규직, 단시간노동에 더 많이 고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업간 극심한 임금격차, 직종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분리, 전체 월평균 임금보다 낮은 직군에 여성이 집중되는 차별적 노동시장 구조가 성별 임금격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위원회의 8차 권고사항이기도 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일명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의무화 해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승진 기회 평등, 출산 육아휴직 후 여성의 복직률 등 성평등 지표를 평가하고 패널티를 벌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입니다. 공공기관도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제출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관장 징계 및 과태료 부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9차 권고는 고용과 관련해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들을 포괄하도록 사회보장 범위 확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여성노동자 등 초단시간 노동자는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대상 및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을 통해 법과 제도의 불합리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최근 발의한 ‘모든 노동자 직장 건강보험법’을 발판으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을 확대해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4대보험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위원회는 또, 돌봄 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돌봄은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역할이 전가됐고 여성의 경력 단절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육아휴직 또한 소득격차, 학력격차로 이어지며 사회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족에 전가해온 돌봄 시스템을 전환해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 국가책임제’로 누구나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돌봄노동자 기본법’으로 110만명이 넘어선 돌봄 노동자에 대한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용안정과 권리보장,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평등 민주주의는 오랜 세월 성차별과 폭력에 맞서 싸워온 민주시민들의 발자국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의 반여성주의적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22대 국회의 무거운 책무로 받아들이고 혐오와 차별, 배제 없는 성평등이라는 국제사회의 공동의 지향과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2024년 7월 11일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

CEDAW 협약 및 제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국내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혜인입니다.

먼저 CEDAW 본심의에 대응하며, 여성인권의 신장을 위해 힘써주신 여성단체, NGO활동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EDAW 제9차 최종견해에 기반한 영역별 정책과제에 기본소득당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치의 책무를 다하고자 힘쓰겠습니다.

먼저, 여성차별철폐를 위해 성평등정책추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의 철회 ▲지체 없는 장관 임명 ▲여성가족부의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확대 및 역량 강화를 긴급과제로 명시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여가부 폐지를 막고 성평등 정책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분투했듯, 제22대 국회에서도 국가 차원의 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젠더기반폭력 근절을 위한 실태 파악과 제도적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실하고 가해자 구속율이 떨어지는 현실에 집중해왔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있어 충분한 수사인력과 국제공조가 갖춰져 있지 않은 실태, 교제폭력 신고와 신변보호 요청이 늘고 있음에도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진한 상황을 지적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제를 통해 제시해주신 ▲비동의 강간죄 개정 ▲가정폭력 관련 법률 개정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등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젠더기반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새로운 법·정책 프레임을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상담 통계와 가이드라인을 확인한 결과, ‘위기행동’으로 ‘낙태’를 명시하고 청소년에게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여성의 임신중절을 권리로서 보장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임신과 임신 중지, 출산·양육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상담체계 마련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보호출산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보호출산제에 대해 반대 표결한 바 있으며, 미등록 출생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 등을 함께 만들어온 바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위기임신’ 중심의 상담체계 강화 등 보호출산제가 가진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여성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상담·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성노동권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에 힘쓰겠습니다.

극심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채용성차별 방지법을 비롯한 여성 노동권 보장 공약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21대 국회에서 일·육아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이 대표적인 예시이며, 제22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들을 재발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CEDAW 제9차 최종견해의 권고에 기반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을 고민하고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덧붙여,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책은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을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법으로,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법 조항을 삭제해 초단시간 노동의 확대를 막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소수자 인권 신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제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에 함께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소수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나아가, CEDAW 제9차 최종견해에 기반해 소수자가 겪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EDAW 협약 및 제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부록]

CEDAW 제9차 최종견해 국/영문본

CEDAW/C/KOR/CO/9

배포: 일반

2024년 6월 3일

원문: 영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9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¹

1. 위원회는 2024년 5월 14일에 개최된 제2061차 및 제2062차 회의(CEDAW/C/SR.2061 및 2062 참조)에서 대한민국의 제9차 정기보고서(CEDAW/C/KOR/9)를 심의하였다. 위원회의 쟁점 및 질의 목록은 CEDAW/C/KOR/Q/9, 이에 대한 당사국의 서면답변은 CEDAW/C/KOR/RQ/9에 수록되어 있다.

A. 소개

2. 위원회는 당사국의 제9차 정기 보고서 제출에 감사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의 후속조치 보고서(CEDAW/C/KOR/FCO/8), 사전세션 실무그룹의 쟁점 및

¹ 위원회의 제88차 회기 (2024년 5월 13일 - 31일)에서 채택함

질의 목록에 대한 서면답변, 그리고 본심의 시 당사국 대표단의 구두발표 및 위원회의 구두질의에 대한 추가설명에 대해 감사한다.

3. 위원회는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당사국 대표단의 파견을 칭찬한다. 또한 대표단에는 외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대법원, 서울가정법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사무처,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 및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기구의 담당자들이 포함되었다.

B. 긍정적 측면

4. 위원회는 2018년 당사국의 제8차 정기보고서(CEDAW/C/KOR/CO/8) 심의 이후 입법적 개혁에 있어, 특히 다음을 포함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환영한다:

(a)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2019년);

(b)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2019년);

5.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가속화하고 성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도적·정책적 틀을 개선하려는 당사국의 노력, 특히 다음 사항의 채택 및 수립을 환영한다:

(a) 제3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2023~2027);

(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 (c)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
- (d)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2019);
- (e)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
- (f)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 (g)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 (f)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

C. 지속가능발전목표

6.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환영하며, 협약의 조항들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 이행의 전 과정에서 법적 및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5번 목표의 중요성 및 17개 목표 전반에서 평등과 비차별 원칙의 주류화의 중요성을 상기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성을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관련 정책과 전략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D. 국회

7. 위원회는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함에 있어 입법부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A/65/38](#), 제2부 부속문서 VI 참조). 위원회는 지금부터 차기 정기보고서

제출 시까지 국회가 그 권한에 따라 본 최종견해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E. 주요 우려사항 및 권고

유보조항

8.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16조 제1(g)항에 대한 유보를 유지한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9. 위원회는 협약 제16조 제1(g)항에 대한 유보는 협약의 목적 및 취지와 양립할 수 없고 따라서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전 권고(CEDAW/C/KOR/CO/8, 제9 항) 및 1998년 제19차 회기에서 채택된 유보에 관한 성명을 상기한다.

협약, 선택의정서 및 위원회 일반권고의 지위와 가시성

10. 협약은 국제법의 발전에 기여하고, 또 국제법의 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역동적인 수단이다. 위원회는 협약, 선택의정서 및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의 가시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본 문서들을 게시한 점을 인정한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 부처,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지난 최종견해를 배포한 것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협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여성, 특히 농촌여성, 노년여성, 장애여성이 협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와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11.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a) 협약상 권리 및 그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모든 여성들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협약, 선택의정서 및 위원회의 일반권고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b) 본 최종권해의 이행을 위하여, 보고 및 후속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의 네 가지 핵심역할, 즉 참여, 조정, 협의 및 정보관리를 고려한 포괄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여성 권리와 성평등을 증진하는 NGO를 이 메커니즘에 포함시킬 것;
- (c) 모든 판사, 검사, 법 집행 공무원 및 변호사가 법원 절차에서 협약의 조항들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거나 협약에 따라 국내법을 해석할 수 있도록, 협약, 위원회의 법리 및 일반권고가 이들의 체계적인 역량강화의 필수적 부분이 되도록 보장할 것.

여성차별의 정의 및 차별적 법률

12. 위원회는 헌법 제11조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협약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직·간접 차별과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모두 다룸으로써 형식적·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이 부재한 점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한다.

13. 위원회는 이전 최종견해(CEDAW/C/KOR/CO/8, 제13항)를 재차 반복하며, 협약 제1조, 제2조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 5.1번 사이의 연관성을 상기하면서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의 직·간접 차별을 비롯하여, 빈곤여성,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여성, 장애여성, 망명신청 여성 및 난민 여성, 무국적 및 이주여성, 농촌여성, 비혼여성, 청소년 및 노년여성 등 취약한 집단의 여성과 소녀들이 직면하는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다룸으로써 형식적·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명확한 타임라인을 설정할 것;
- (b) 연령, 국적,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세분화된 여성 차별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
- (c) '여성'은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맥락으로 사용되는 반면, '여자'는 여성을 대상화하는 데 자주 사용되므로, 법률에서 여성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명시할 때 '여자'를 '여성'으로 대체할 것;

여성 평화와 안보

14. 위원회는 당사국의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제3차 국가행동계획의 주요 초점이 성폭력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포함한 군축 및 비확산에 관한 국제레짐 내에서 여성의 대표성 및 참여 증진을 지지해 왔으며, 모든 NPT 평가회의의 절차적 대표단에 여성을 포함시켜 왔음을 인정한다. 또한 2023년 제11차 NPT 평가회의의 1차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다수의 여성 전문가들이 당사국이 주최하는 NPT 부대행사에 패널로 초청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여성과 평화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아젠다 및 분쟁 예방에서 여성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30호(2013)가 분쟁 관련 성폭력의 내용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국가, 대륙 및 글로벌 안보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요구한다는 사실에 대한 당사국의 주목을 요청한다. 또한 위원회는 지정학적으로 전력 승수가 되고 있는 핵무기의 그림자가 커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15. 위원회는 증가하는 안보 위협과 역내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확산을 고려하여, 당사국이 안보 및 대 미사일 전략 개발에 여성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을 증진하며 핵군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대한 여성 참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여성의 사법접근성

16. 위원회는 다음을 우려한다:

- (a) 농촌 여성, 장애 여성, 난민 및 망명신청 여성 및 이주 여성의 낮은 법률 문해율, 사법절차에서 성별 편견과 법집행 공무원의 성별고정관념이 만연하여 여성들이 젠더 기반 폭력 및 차별을 신고하는 것을 꺼려하는 점;
- (b) 난민 및 망명 신청 여성, 이주여성들이 사법절차에 접근하는 데 있어 장벽을 계속 경험하며, 이는 사법부와 법 집행 당국에 대한 신뢰 부족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종종 악화된다는 점;

17. 위원회는 여성의 사법 접근에 관한 일반권고 제33호(2015)를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모든 수준의 교육과정에 통합하고 법률 문해력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여성과 소녀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구제방안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킬 것;

(b) 장애 여성, 난민 및 망명 신청 여성, 이주 여성에게 전용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접근가능한 언어로 권리 침해 시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알리는 조치를 확대할 것;

(c) 여성 수감자 처우 및 여성 범죄자에 대한 비구금 조치에 관한 유엔규칙(방콕규칙)과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에 따라, 여성 수감 시 성인지적 정책을 채택할 것;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기구

18.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15525호에 명시된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이것이 여성 발전을 위한 법·정책 체계의 파편화와 우선순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가부의 역할 및 자원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에서 퇴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의 실패, 여성가족부 관련 예산의 급격한 축소 및 여성 정책의 퇴행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더욱이,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 및 전략의 설계와 이행에 있어서 여성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인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19. 위원회는 특히 국가기구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이전 최종견해(CEDAW/C/KOR/CO/8, 제16·17항)와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에 제시된 지침을 상기하고, 여성가족부가 다양한 방면에서 변화를 주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법률 제15525호 개정안의 여성가족부 폐지 조항을 철회하고 더이상 지체 없이 장관을 임명하며, 어떠한 조직 개편에서도 여가부의 기능을 유지할 것;
- (b) 여성가족부가 모든 정부 부처에 걸쳐 성주류화 노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부처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대폭 증대하고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힘쓸 것;
- (c) 통합적인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절차를 채택하고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해 충분한 예산 자원을 할당할 것;
- (d)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과 전략의 설계, 채택 및 이행에서 여성단체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20.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으로부터 A 등급을 재부여받은 것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소위원회는 인권위가 인권위원의 인선 및 임명을 위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능력에 기반한 참여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단일 인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국가인권위원회법」 또는 기타 행정지침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21. 위원회는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의 지위에 관한 원칙(1993년 12월 20일 총회 결의안 48/134 부속, 파리원칙)>에 따라,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권위 임무를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하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조언과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을 권고한다.

임시적 특별조치

22. 위원회는 정치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 향상을 위한 법적 할당제와는 별도로, 당사국이 교육, 고용, 의료서비스 및 군대를 포함하여 여성이 과소대표되거나 불리한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인 평등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적극적 채용, 승진 및 조달과 같은 임시적 특별 조치를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자본시장 및 산업 인프라 부문 등 비즈니스 영역 전반에 걸쳐 임시적 특별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23.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4조 제1항 및 임시적 특별조치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25호(2004)에 따라, 교육, 고용, 의료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여성, 특히 노년여성, 농촌여성 및 장애여성이 과소대표되거나 불리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 간 실질적 평등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으로써 특정집단에 대한 채용 및 승진 제도, 공적 예산 편성 및 조달, 적극적 우대조치 등 기간별목표치를 동반한 임시적 특별조치를 채택하기를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산업, 혁신 및 인프라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9번에 따라 민관 파트너십과 핵심 경제 부문의 투자 예측에 있어서 적극적 조달을 비롯하여,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Ruggie Principles) 확산을 위한 민간 부문 자금을 촉진하는 규제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고정관념

24. 위원회는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자율성, 교육 및 직업 기회를 약화시키는, 가족과 사회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고정관념이 당사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페미니즘을 무기화하고 가족 가치와 페미니즘 가치를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는 포퓰리즘적 서사를 촉발시킨 반페미니즘적 정치적 수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반페미니즘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이 스스로를 "역차별"의 피해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는 이전의 성과를 되돌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반페미니즘적인 혐오 발언을 촉발할 위협을 초래한다.

25. 유해한 관행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공동 일반권고 제31호/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제18호(2019년 개정된 버전)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 표현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남성과 소년, 공공 및 민간 기관들과 협력할 것;
- (b) 관련 공무원, 언론인 및 멀티미디어 기관에 성인지적 언어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차별적인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여성의 대상화를 방지하며, 매체에서 변화의 적극적인 주도자로서의 여성의 긍정적 묘사를 증진할 것.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26.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성폭력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이 만연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우려를 표한다.

- (a) 현행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의 증거를 요구하고, 명시적으로 적극적인 동의의 부재를 근거로 하고 있지 않은 점;
- (b)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가정폭력의 경우 형사처벌 면제를 허용하고, 법의 목적이 주로 가족 단위의 보존과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 (c) 당사국 내 가정폭력의 지속성; 가정폭력과 부부강간에 있어서의 낮은 기소율, 유죄 판결율 및 관대한 형량;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폭력적인 파트너에 대한 경제적 의존, 법률적 무지 및 법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인하여 신고가 저조한 점;
- (d) 가정 폭력사건에서 보호명령, 특히 접근금지 및 분리 명령의 효과적인 집행 및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폭력 피해의 생존 여성이 재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 (e) 당사국 전역에서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적절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
- (f) 위원회는 사이버 스토킹, 괴롭힘, 신상 털기, 동의 없이 내밀한 이미지를 공유하는 행위, AI로 생성된 성적으로 노골적인 미디어, 딥페이크 비디오, 합성 미디어 및 사이버 포르노 등 여성의 신체를 상품화 및 대상화하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젠더 기반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더하여 위원회는 현행 법령이 기존의 모든 형태의, 그리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디지털 폭력과 학대를 완전히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낮은 기소율과 피해자 보호의 공백, 또한 사회적 낙인과 피해자 비난 및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및 학대에 대한 신고율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27. 위원회는 이전 권고(CEDAW/C/KOR/CO/8, 23항)를 상기하고, 위원회의 일반권고 19호를 업데이트한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에 관한 일반권고 35호(2017) 및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5.2번 에 따라, 당사국이 협약에 부합하는, 성평등한 새로운 국가 내러티브를 만들 것을 권고하며, 나아가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부부간을 포함한 모든 강압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에 기반하지 않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괄하는,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의 결여를 기반으로 강간을 정의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

(b)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정보호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관행을 폐지하며, 화해와 조정보다는 기소가 우선시되도록 할 것 ;

(c)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의 범죄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정당화에 도전하며 피해자에 대한 낙인을 찍지 않기 위한 미디어 캠페인을 실시하고,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신고로 인한 보복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며, 법원이 피해자의 의료기록 또는 성생활 이력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가정 내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장려할 것

(d) 성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이 효과적으로 수사 및 기소되고 가해자가 적절히 처벌되며 보호 명령이 효과적으로 집행 및 모니터링되고 미준수 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사, 검사, 경찰관 및 기타 법 집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이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것;

(e) 12개의 국가 운영 쉼터를 강화하고, 비정부기구가 운영하는 쉼터에 적절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이며 접근 가능한 쉼터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그들의 특정 요구를 고려하여 심리 사회적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적절한 자금을 지원할 것; 또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재정 지원, 교육, 전문 훈련, 소득 창출 기회, 저렴한 주택, 그리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분을 변경하도록 지원할 것;

(f) 기술을 통해 촉진되는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공익 소송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러한 범죄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온라인 성폭력을 예방하고 적절히 처벌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유통업자가 플랫폼에서 범죄 콘텐츠를 신고, 삭제 또는 차단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할 것.

인신매매 및 성착취

28. 위원회는 2023년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여성과 소녀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려는 당사국의 노력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한다.

- (a) 당사국이 여전히 성적, 노동 착취를 목적으로 한 여성 및 소녀 인신매매의 경유국이자 목적지라는 점;
- (b) 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E-6-2 비자를 소지한 이주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인신매매 위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
- (c)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검찰당국에 협력할 경우에만 G-1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
- (d) 강요된 성매매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성매매 여성이 처벌되고 있다는 점²;
- (e) 당사국 내 장애여성을 포함한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하여 적절히 자금이 지원되고, 포용적이며 접근가능한 쉼터가 부족하다는 점.

² 번역자 각주: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알선 및 성구매 행위를 금지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있으나, 강요된 성매매를 입증하는 피해자에 한해서만 처벌을 면해주고 있는 한계로 인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속되고 있음.

29. 위원회는 글로벌 이주의 맥락을 고려한 여성과 소녀의 인신매매에 관한 일반권고 제38호(2020)를 참조하고,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CEDAW/C/KOR/C O/8, 25항)와 개인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견해 제139호(2018)를 상기하며,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 (a) 판사, 검사, 경찰관 및 기타 법 집행 공무원, 국경 경비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최초 대응자를 대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의 조기 식별 및 적절한 서비스 연계, 성인지적 수사 및 심문 방법에 대한 역량강화를 제공할 것;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조기 식별을 위한 경찰 지침의 이행을 보장하며, 특히 여성과 소녀를 포함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조기 식별 및 적절한 서비스와 보호 연계 프로세스에 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
- (b) 현행 E-6-2 비자 제도를 개정하고, 해당 제도에 따라 여성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포함하여 외국 여성을 모집하는 항구 및 미군 기지 근처의 술집을 포함한 연예공연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착취적 고용주, 특히 인신매매 사범을 신속하게 조사, 기소 및 적절히 처벌할 것;
- (c) 검찰당국에 협조할 의지나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인신매매 피해 여성과 소녀들에게 G-1 비자제도가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
- (d) 인신매매 가해자가 기소되고 적절한 형을 선고받도록 보장할 것;
- (e)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장애 여성을 포함한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쉼터의 수와 예산 지원을 대폭 증가시키고, 이들이 무료 법률지원, 통역 서비스, 의료 지원, 심리 상담, 재정 지원, 교육, 직업 훈련 및 소득 창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f)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 착취를 조장하는 수요를 억제하며, 탈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을 위한 대안적 수입 창출기회를 포함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일본군 “위안부”

30. 위원회는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특히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제관습법의 이론을 재정립한 것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한다:넵 감

(a) 많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한 점;

(b) 생존자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트라우마의 장기적인 영향에 따른 그들의 특별한 필요에 맞는 의료적, 심리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

31. 위원회는 이전 최종견해(CEDAW/C/KOR/CO/8, 27항)를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피해자/생존자의 구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배상, 만족, 공식사죄 및 재활 서비스를 포함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을 제공할 것;

(b) 아직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완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정치 및 공공 영역에서의 동등한 참여

32. 위원회는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이고 여성 장관이 5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가부장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중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성 정치인, 활동가 및 언론인에 대한 디페이크 등 온라인 괴롭힘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여성의 정치 및 공공 영역에서의 참여, 특히 농촌 여성과 장애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33. 위원회는 정치 및 공공 영역에서의 여성에 관한 일반권고 제23호(1997) 및 정치, 경제 및 공공 영역의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동등한 리더십 기회의 보장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5.5 번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정당의 국회 및 광역/지방의회 선거 시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그리고 정부, 공무원, 외교관 및 군대의 특히 의사결정직급에서 농촌 여성과 장애 여성을 포함한 여성을 임명할 때, 평등을 목표로 하여 벌금부과 등의 강제이행조치를 수반한 여성할당제를 도입할 것;

(b) 여성 정치인과 활동가들이 직면한 괴롭힘, 혐오발언, 성차별적 담론을 근절하기 위한 법을 도입하고, 소셜 미디어 기업이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혐오발언, 성차별적 담론, 위협 및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며, 해당 콘텐츠 제작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보장할 것;

(c) 농촌여성과 장애여성을 포함하여 선거 또는 공직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자에게 정치적 리더십과 선거운동기술에 대한 역량강화와 선거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것.

국적

34.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우려를 표명한다.

- (a) 당사국의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귀화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결혼 이민 비자(F6)를 받아 대한민국 영토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귀화 절차가 길고 거부율이 높다는 점;
- (b) 출생등록 절차에 있어서의 한계점 및 지연

35. 위원회는 여성의 난민지위, 망명신청, 국적 또는 무국적에 있어 젠더 관련 측면에 관한 일반권고 제32호(2014)를 상기하며,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 (a) 여성과 남성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국적을 물려줄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법적으로 불안정한 체류 기간을 줄이기 위해 귀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처리할 것;
- (b) 온라인 절차를 포함하여 이주, 난민 및 망명신청 여성과 소녀들이 출생등록 및 신분 증명서에 대하여 합리적인 비용을 통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
- (c) 1961년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에 가입할 것.

교육

36.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우려를 표한다:

- (a) 비전통적인 학문 분야와 직업경로, 특히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과학 및 기술, 공학, 수학(STEM)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소녀와 여성의 지속적인 과소대표성;
- (b) 교과서에서의 성별고정관념의 지속과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사 역량 강화의 부족;
- (c) 소녀들을 사이버섹스를 위한 채팅방으로 끌어들이는 인공지능 기반의 딥페이크, 비동의성적촬영물 유포, 불법촬영영상 및 성적 합성 이미지물의 폭발적인 증가가 당사국에 충격을 준 상황.

37. 소녀와 여성의 교육권에 관한 일반권고 제36호(2017)에 비추어,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a)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과학 및 기술, 공학, 수학(STEM)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전통적으로 남성이 지배하는 분야에서 학업 및 경력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단념시키는 성별고정관념과 구조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하고 더욱 강화할 것;
- (b) 당사국의 모든 교육 수준과 모든 지역에서 교과서 및 교육과정, 교수법상의 성별고정관념을 제거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학술 프로그램, 교사들을 위한 직업 훈련에서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이 적절히 다뤄지도록 보장할 것 ;
- (c) 여성과 소녀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의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을 다루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공지능과 관련한 중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 기업을 규제하는 인공지능 위험 관리 체계인,

인공지능 권리장전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을 발행하여 관련 규제 체계를 확립할 것.

고용

38.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우려를 표한다.

- (a) 성별임금격차의 지속과 2023년 세계경제포럼 글로벌성격차 지수에서 당사국이 146개국 중 105위에 머물렀다는 점;
- (b)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남성은 72.7%인데 비해 여성은 55.1%라는 점);
- (c) 여성의 노동 환경 측면에서 당사국이 12년 연속으로 OECD 29개국 중 최하위에 있다는 점;
- (d) 주로 여성들이 대부분인 주15시간 미만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이 부족하다는 점;
- (e)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과 산업 기반 시설 분야의 관리직에서 여성이 과소대표되고 있는 점.

39.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 8.5번에 따라,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

- (a)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고 이를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 (i) 정기적인 근로감독의 실시; (ii) 정기적인 임금 실태 조사의 실시; (iii) 고용주들에게 성별임금격차 데이터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성별에

- 따른 임금 및 연금 격차의 원인을 보다 잘 이해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
- (b)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성별고정관념의 해체 등을 통해 여성의 공식 고용 기회를 높이고, 고용주를 대상으로 성평등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실시하며, 여성 고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를 도입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
- (c) 차별과 위협이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터에서의 내 여성의 참여와 발전을 가로막는 방해물을 식별하기 위해 노동법과 정책을 철저히 검토할 것; 탄력적 노동 시간과 아동 양육 지원을 포함하여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 여성을 위한 노동환경의 개선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에 매년 보고할 것;
- (d) 주15시간 미만 계약으로 고용된 여성을 포함한 노동자들을 포괄하도록 사회보장 범위를 확대할 것;
- (e) 민간기업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 전통적 영역을 포함하여 리더 지위에 여성을 채용하도록 하는 등 민간영역에서 여성 고용과 경력 개발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강화할 것;
- (f) 국제노동기구(ILO)의 2011년 가사노동자협약(제189호)을 비준할 것.

건강

40. 위원회는 기존의 임신중지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당사국 헌법재판소의 2019년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우려를 표한다:

- (a)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새로운 규제 체계가 부재하고 임신중지가 아직 국민건강보험 보장에 포함되지 않아 여성이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 (b) 체외수정을 포함한 보조 생식 서비스가 비혼여성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 (c) 여성이 가족등록시스템에 아이를 등록하지 않고도 의료시설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023년 제정된 보호출산제법은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와 성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약, 임신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부족,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 미등록 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
- (d) 여성과 소녀, 특히 장애인, 이주민, 난민 여성과 소녀들에게 책임있는 성 행동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가족계획과 적절한 가격의 현대적 피임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

41. 여성과 건강에 대한 일반권고 제24호(1999)와 세계 산모 사망률 감소 및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3.1, 3.7번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들을 권고한다:

- (a)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임신중지 및 임신중지 후 서비스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포괄적인 규제 체계의 개발과 채택을 신속히 행하고, 이 체계를 국민건강보험 보장 체계에 통합할 것;
- (b) 비혼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에게 체외수정을 포함한 보조생식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 (c)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와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임신한 여성과 소녀를 위한 지원 서비스의 강화 및 비혼모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을 경감하는 조치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미등록 출생의 근본 원인을

-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23년 제정된 보호출산제법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할 것;
- (d) 여성, 특히 장애여성, 난민여성 및 망명신청여성, 이주여성 및 소녀들이 안전한 임신중지와 임신중지 후 서비스, 적절한 가격의 현대적 피임법을 포함하여 충분한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 및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e) 의료용 AI와 원격의료를 포함하여 나이 든 여성들의 건강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첨단 기술의 사용을 고려할 것.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42. 위원회는 임신이나 육아로 인해 경력이 중단된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재취업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전국적으로 159개 기관으로 늘리고자 하는 당사국의 계획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또한 소규모 기업의 60%가 여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COVID-19 위기에 대응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고용 안정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조성하는 등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들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돌봄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약으로 인해 여성들이 짊어진 심각한 돌봄 부담과 무급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많은 여성들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43.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고용 중단을 경험하는 여성들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여성재취업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책의 평가를 시작할 것;

- (b) 소규모 기업의 여성 지원에 대한 기금의 영향과 COVID-19 위기에 대응한 인건비 보장 및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
- (c)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역량 강화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돌봄 경제에 있어서 보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획기적인 제도와 계획을 채택할 것;
- (d) 적절한 가격의 보육 시설과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내 여성과 남성의 가사 책임의 평등한 분담을 촉진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무급 돌봄노동의 부담을 인식하고, 줄이고, 재분배하며, 가족기업에 고용된 여성들이 적절한 보수를 받고 사회보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e) 노인 여성과 장애 여성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통합 돌봄 경제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통계와 증거에 기반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공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 이러한 정책은 여성과 남성 간 돌봄 책임의 평등한 분담을 촉진하고 여성 무급 돌봄 노동의 화폐가치화를 촉진하는 캠페인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농촌 여성

44. 위원회는 당사국이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재분배 정의를 추구할 것을 약속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농업과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촌 여성의 필요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45. 농촌 여성의 권리에 관한 일반권고 제34호(2016)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 5.a번에 따라, 위원회는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토지 및 기타 형태의 재산, 금융 서비스, 상속 및 천연 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이주여성을 포함한 농촌 여성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담보 및 기타 형태의 금융 신용 없이 저금리 대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여성 농업인을 포함한 농촌 여성의 소득 창출 기회, 사회보장,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농촌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이 동등하게 대표되도록 보장함으로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완전히 적용하고 이행할 것;

(b) 가부장적 태도와 성별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농촌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토지 소유 및 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장애 여성

46. 위원회는 장애 여성이 특히 사법, 교육, 고용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당사국에서 교차적 형태의 차별에 직면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47. 위원회는 장애 여성에 대한 일반 권고 제18호(1991년)를 상기하며, 당사국이 장애 여성과 소녀들이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과 최첨단 보조 기술의 개발 및 사용을 통해 사법과 통합교육, 고용 및 보건 서비스, 특히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난민, 망명신청자, 이주여성과 소녀

48. 위원회는 난민, 망명신청자, 이주여성과 소녀들이 당사국, 특히 국경 지역에서 교차적 형태의 차별과 불균형한 수준의 젠더 기반 폭력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과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성적 착취와 강제 노동의 위험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라, 체포된 후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미등록 이주민, 미등록 상태에서 재신청하는 이주민, 출국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주민을 포함한 망명 신청자들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항소 절차를 포함한 망명 절차 기간 동안 자주 구금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금이 수년에 걸쳐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49. 여성의 난민지위, 망명신청, 국적 또는 무국적의 젠더 관련 측면에 관한 일반권고 제32호(2014), 분쟁 예방, 분쟁 및 분쟁 이후 상황에 처한 여성에 대한 일반권고 제30호(2013)와 여성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일반권고 제26호(2008)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난민, 망명신청자, 이주 여성에 대한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해결하고,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며, 가해자를 기소하고 적절히 처벌할 것 ;
- (b) 난민, 망명신청자, 인도적 체류 지위를 지닌 여성과 소녀들 및 임산부와 수유 중인 여성들을 포함하되 이들에 국한되지 않는 국제적 보호를 요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구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제63조를 개정할 것;
- (c) 성인지적 관점의 인터뷰 진행에 대한 이민국 직원 교육을 포함하여 젠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망명 절차가 적용되도록 보장하고,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이 보호 근거로서 인식되도록 할 것.

재난 위기 감소와 기후 변화

50. 위원회는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회의(COP28) 기간 동안 당사국이 “우리의 땅, 공유된 미래: 모두를 위한 균형있고, 영리하며, 혁신적인 도시와 지역을 향한” 계획을 지지한 점에 호의를 표한다. 이는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살아갈만한 공간을 만드는 데에 혁신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국가 영토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륙과 대양 사이의 연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기후변화 맥락에서 재난 위험 감소의 젠더적 차원에 관한 일반권고 제37호(2018)와 기후변화에 맞서는 조치들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3번에 따라 다양한 분야를 가로지르는 실존적인 도전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하여, 당사국의 책임을 요구하는 청소년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만족을 표한다. 또한 2015년 파리협정의 핵심 구성 요소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NDC)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의 1.5도까지 넘어서는 정도로, 최대 2도까지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당사국의 헌법재판소가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칠 기후변화 정책에 관한 네 개의 획기적인 사건에 대해 최종 변론을 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기후행동추적기(the Climate Action Tracker)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목표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당사국의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가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여성, 특히 농촌 여성, 장애여성, 빈곤 계층의 여성과 이주 여성들이 노출된 장소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필수 대처 메커니즘이 부족하여 기후변화에 불균형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51. 기후변화 맥락에서 재난 위험 감소의 젠더적 차원에 관한 일반권고 제37호(2018)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이 기후변화가 여성의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와 재난 대응 전략을 재검토할 것과, 기후변화, 재난

대응과 재난 위기 감소에 대한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도입, 이행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대표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 (a) 다음 세대의 건강한 환경에 대한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당사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하도록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있어 더욱 의욕적으로 임할 것;
- (b)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여성과 소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할 것;
- (c) 여성과 소녀들의 특별한 필요를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과 효과적인 적응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와 재난 위기 감소 관련 법, 정책, 재정 및 프로그램에 있어 젠더 관점을 통합하도록 보장할 것;
- (d) 농촌 여성과 장애 여성을 포함하여 여성과 소녀들이 커뮤니티에서 기후변화와 재난 위기 관리에 대한 문해력과 인식을 높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여성들과 소녀들의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의사결정과 적응 전략 및 행동 개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결혼과 가족관계

52.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781조 제1항이 혼인 시 아버지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부성주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음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계약을 통해 달리 합의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 시 배우자 각각의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자산이 분배되는 점을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도 의무적인 화해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자녀의 어머니를 학대하는 등 학대가해자 아버지에게도 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한다. 또한, 비혼동반자 관계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보호가 미비한 점에 우려를 표한다.

53. 위원회는 당사국이 「민법」 제781조 제1항을 협약 제16조 제1항(g)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부성주의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결혼 및 가족관계와 그 해소에 따른 경제적 결과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29호(2013)에 따라, 당사국이 법률혼 또는 비혼동반자 관계의 종료시 동등한 자산분배 원칙을 반영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위원회의 이전 권고 (CEDAW/C/KOR/CO/8, 제47항)에 이어 거듭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을 적절히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국이 가정폭력이 있는 가족 사건의 경우 화해시도 및 조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음을 법으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사법부 구성원이 아동 양육권 사건에서 가정폭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교육을 받고 가족의 화해보다 범죄의 기소를 우선시 할 것을 당사국에게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비혼동반자 관계에 있는 여성들의 경제적 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자료 수집 및 분석

54.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여러 영역에서 자료 수집이 부재한 것을 우려한다.

55. 위원회는 당사국이 맞춤형 성인지적 입법 및 정책, 프로그램, 예산 설계와 이행을 위해 연령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세분화 된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여성 및 소녀의 인신매매 발생률, 교육 접근성,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대한 통계 자료 수집에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역량을 증진하고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

56.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을 활용하고 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배포

57.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최종견해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당사국의 공식언어로 번역된 최종견해를 모든 단위(중앙 및 기초·광역자치 단위)의 관련 국가기관, 특히 행정부, 국회 및 사법부에 시기적절히 배포할 것을 요청한다.

다른 조약들의 비준

58. 위원회는 9개의 주요 국제인권조약³에 대한입을 통해 여성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증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직 가입하지 않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개인청원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³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 PR);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MW);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CPED);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

59. 위원회는 상기의 제13(a)항, 제19(b)항, 제27(a)항 및 제31(a)항에 포함된 권고의 이행에 관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들에 대한 서면정보를 2년 내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차기 정기보고서 준비

60. 위원회는 향후 예상되는 8년 검토 주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보고서 제출 전 당사국에 대한 쟁점 및 질의 목록의 채택 후, 당사국의 제10차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을 수립하고 통지할 예정이다. 차기 정기보고서는 제출 시점까지의 전체 기간을 다루어야 한다.

61. 위원회는 당사국이 공통핵심문서 및 조약별 문서에 대한 지침([HRI/GEN/2/Rev.6](#), I장 참조)을 포함하여 국제인권조약상 보고에 관한 통일된 지침을 따를 것을 요청한다.

※ 본 번역본은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의 비공식 번역본이며, 추후 정부의 공식번역본과 대조하여 참조하기 바람.

- 번역: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전민경(사단법인 온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호림(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종합 및 감수 : 한국여성단체연합
-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명단(가나다순):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편적출생등록네트워크, 사단법인 온울, 새움터,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등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권법센터,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총 26개)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nin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nin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EDAW/C/KOR/9) at its 2061st and 2062nd meetings (see CEDAW/C/SR.2061 and 2062), held on 14 May 2024. The Committee's list of issues and questions is contained in CEDAW/C/KOR/Q/9 and the responses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contained in CEDAW/C/KOR/RQ/9.

A.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appreciates the submission by the State party of its ninth periodic report. It also appreciates the State party's follow-up report (CEDAW/C/KOR/FCO/8) and its written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and questions raised by the pre-sessional working group, as well as the oral presentation by the delegation and the further clarifications provided in response to the questions posed orally by the Committee during the dialogue.

3. The Committee commends the State party on its distinguished delegation, which was headed by Mr. Kinam Kim, Assistant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delegation also included representative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Seoul Family Court,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and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Office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eighty-eighth session (13 - 31 May 2024).

B. Positive aspects

4. The Committee welcomes the progress achieved since the consideration in 2018 of the State party's eighth periodic report (CEDAW/C/KOR/CO/8) in undertaking legislative reforms, in particular, the adoption of the following:

(a)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in 2019, which expands childcare service support for single-parent families with low-income;

(b) The Framework Act on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2019, which specifically addresses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5. The Committee welcomes the State party's efforts to improve its institutional and policy framework aimed at accelerating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promoting gender equality, such as the adop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following:

(a) The Third National Plan for Improving Gender Representation in the Public Sector (2023-2027);

(b) The Fourth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eing Society (2021-2025);

(c) The Fifth National Health Plan (2021-2030);

(d) The Webhard Cartel Prevention Measures, in 2019;

(e) The Digital Sex Crime Eradication Measures, in 2020;

(f) Third Basic Plan for Gender Equality Policies (2023-2027);

(g) The First Basic Plan of Policies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2020-2024;

(h) The First Comprehensive Plan for the Prevention of Human Trafficking (2023-2027).

C.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6. **The Committee welcomes the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calls for the realization of de jure (legal) and de facto (substantive) gender equali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hroughout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ommittee recalls the importance of Goal 5 and of the mainstreaming of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throughout all 17 Goals. It urges the State party to recognize women as the driving forc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State party and to adopt relevant policies and strategies to that effect.**

D. Parliament

7. **The Committee stresses the crucial role of the legislative power in ensuring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see [A/65/38](#), part two, annex VI). It invites the National Assembly, in line with its mandate, to take the necessary step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between now and the submission of the next periodic report under the Convention.**

E. Principal area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Reservations

8.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the State party maintains its reservation to article 16 (1) (g) of the Convention.

9. **The Committee recall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CEDAW/C/KOR/CO/8, para. 9) and its statement on reservations, adopted at its nineteenth session, in 1998, that the reservation to article 16 (1) (g) of the Convention is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 and that it should be withdrawn.**

Status and visibility of the Convention, the Optional Protocol thereto and the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s

10. The Convention is a dynamic instrument that both contributes to and evolves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The Committee acknowledges the efforts of the State party in enhancing the visibility and accessibility of the Convention, its Optional Protocol, and the Committee's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including through their publication on the websites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OGEF)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Committee also notes the distribution of the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to relevant domestic stakeholders, including Ministries, legislative and judiciary bodies, and local governments. The Committee also note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makes direct references to the Convention. However,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women, especially rural women, older women, and women with disabilities, are often not aware of their rights under the Convention and the remedies available to claim them.

1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Continue raising awareness among women of their rights under the Convention and the legal remedies available to them to claim violations of such rights and ensure that information on the Convention, the Optional Protocol thereto and the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s is accessible to all women in accessible formats;**

(b) **Consider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mechanism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and**

involv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promoting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in the work of the mechanism, taking into account the four key capacities of a national mechanism for reporting and follow-up, namely engagement, coordination,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c) Ensure that the Convention, the Committee's jurisprudence and its general recommendations are made an integral part of systematic capacity-building for all judges, prosecutors,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lawyers, with a view to enabling them to continue directly applying or invoking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 court proceedings or interpret national legislation in the light of the Convention.

Defin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discriminatory laws

12. The Committee notes that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citizens based on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 However,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concern about the absence of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ensuring *de jure* and *de facto* formal and substantive equality, addressing both direct and indirect discrimination in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as well as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 and 2 of the Convention.

13. **Reiterating its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CEDAW/C/KOR/CO/8, para. 13) and recalling the links between articles 1 and 2 of the Convention and target 5.1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 end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all women and girls everywhere,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Set a concrete timeline for the adoption of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ensuring *de jure* and *de facto* formal and substantive equality addressing both direct and indirect discrimination in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as well as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faced by disadvantaged groups of women and girls, such as women living in poverty, lesbian,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women, women with disabilities, asylum seeking and refugee women, stateless and migrant women, rural women, single women, adolescents, and older women, in line with articles 1 and 2 of the Convention;**

(b) **Devise a comprehensive system to collect data on case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disaggregated by age, nationality, disability and socioeconomic status;**

(c) **Replace terminology of the word *yeoja* in legislation when describing rights that are afforded to women, as it is frequently used to objectify women, while *yeosong* is used to advance women's rights.**

Women peace and security

14.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main focus of the State party's third National Action Plan on Women, Peace, and Security is sexual violence. The Committee acknowledges that the State party has supported the improvement of women's re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within the international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regimes, including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and that it has included women in its procedural delegations of every NPT Review Conference. It also notes that during the First Preparatory Committee meeting of the 11th NPT Review Conference in 2023, a number of female experts were invited as panelists to a NPT side event hosted by the State party. However, the Committee draws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the fact that the Security Council agenda on women and peace and the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 No. 30 (2013) on women in conflict prevention are broader than just conflict-related sexual violence and call for the leadership of women in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The Committee also notes with concern the growing shadow of nuclear weapons becoming a force multiplier geopolitically.

15. Given the growing spectrum of security threats and the increasing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in the region, the Committee calls on the State party to continue involving women in the development of security and counter-missile strategies.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continue strengthening women's engagement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to prevent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to promote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and to further the goal of nuclear disarmament.

Women's access to justice

16.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a) The high rates of legal illiteracy among rural women, women with disabilities and refugee, asylum-seeking and migrant women, and the reluctance of women to file complaints about gender-based violence and discrimination due to the prevalence of judicial gender bias and gender stereotypes among law enforcement personnel;

(b) The fact that refugee, asylum-seeking and migrant women continue to face barriers to access to justice, which are often exacerbated by their lack of trust in the judiciary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nd fear of retaliation.

17. The Committee, recalling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33 (2015) on women's access to justic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nhance women's and girls' knowledge of their rights and the remedies available to claim them, including by integrating education on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into curricula at all levels of education and conducting legal literacy campaigns;**

(b) **Expand measures to inform women with disabilities, refugee, asylum-seeking and migrant women of the remedies available to them in cases of violations of their rights, including through dedicated websites and social media, in accessible languages;**

(c) **Adopt gender-sensitive policies in women's detention in keeping with the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 (the Bangkok Rules) and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Nelson Mandela Rules).**

National machinery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18.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e proposed abolition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OGEF) by the State party in the Amendment Bill No. 15525 to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is could lead to the fragmentation and de-prioritization of legal and policy frameworks dedicated to the advancement of women. It also notes with concern that the abolition of the MOGEF would constitute a regression from the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where the Committee stressed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the role and resources of MOGEF.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by the failure to appoint a Minister for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drastic reduction in the budget of MOGEF, and retrogressive policies on women. Additionally,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limited participation of women's organizations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plans and strategi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19. **Recalling its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CEDAW/C/KOR/CO/8, paras. 16 and 17) and the guidance provided in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in particular regarding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national machineries, and considering that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OGEF) has been a driver of change in many direction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Rescind the provisions on the abolition of the MOGEF from the Amendment Bill No. 15525 and appoint a Minister without further delay, and retain its functions in any reorganization;**

(b) **Substantially increase the human,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of MOGEF and provide capacity-building to its staff in order to enable it to effectively coordinate efforts to mainstream gender across all government departments;**

(c) **Adopt an integrated gender-responsive budgeting process and allocate sufficient budgetary resourc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s rights;**

(d) **Ensure the equal participation of women's organizations in the design,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plans and strategi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20. The Committee welcomes the fact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NHRCK) was reaccredited with A status by the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2021. Nevertheless,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has recommended that the NHRCK seek the inclusion of provisions 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or other administrative guidelines that mandate the formation of a single independent selection committee to ensure a clear, transparent, merit-based and participatory process for the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Commissioners of the NHRCK.

2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of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of the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ensure that it is provided with adequate human,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to be able to carry out its mandate effectively and independently, in line with the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Paris Principles, annexed to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of 20 December 1993) and seek the advice and technical sup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this regard.**

Temporary special measures

22.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apart from statutory quotas aimed at increasing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political life, the State party has not adopted any temporary special measures, such as affirmative recruitment, promotion and procurement, to accelerate the achievement of substantive equality of women and men in areas where women are underrepresented or disadvantaged, including education, employment, health care and the armed forces.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about the lack of temporary special measures across business sectors such as capital markets and the industrial infrastructure sector.

2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dopt temporary special measures, in line with article 4 (1) of the Convention and the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 No. 25 (2004) on temporary special measures, such as targeted recruitment, hiring and promotion, public budgeting and procurement and affirmative action, with time-bound targets, as a necessary strategy to accelerate the achievement of substantive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in all areas under the Convention where women are underrepresented or disadvantaged, in particular older women, rural women and women with disabilities, including in education,**

employment and health care. The Committee also recommend that the State party, as a leading member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develops regulatory policies to drive private sector funds to promote the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Ruggie Principles), as well as affirmative procurement in Public-Private-Partnerships and investment forecasting in core economic sectors, in line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9 on industries,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Stereotypes

24.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bout the persistence in the State party of stereotypes concerning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women and men in the family and society, which overemphasize women's traditional role as mothers and wives, thereby undermining women's social status, autonomy, and educational and professional opportunities. In particular,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e significant rise of anti-feminist political rhetoric which has sparked a populist narrative weaponizing feminism and creating a binary opposition between family values and feminist values.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a parallel trend where a culture of anti-feminism is rapidly proliferating among young men, who have started to identify themselves victims of "reverse feminism", which threatens to reverse prior gains and engender anti-feminist hate speech online and offline.

25. **Drawing attention to the joint general recommendation No. 31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general comment No. 18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9) on harmful practices, as revised,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Adopt and implement a comprehensive policy on hate speech which targets women and girls and partners with men and boys, and public and private entities for its implementation;**

(b) **Provide relevant public officials, journalists and multimedia entities with training on the use of gender-responsive language to address discriminatory gender stereotypes, combat the objectification of women and promote the positive portrayal of women in the media as active drivers of change.**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26.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t the prevalence of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including sexual violence, in the State party. It notes with concern:

(a) That the current definition of rape in article 297 of the Penal Code requires proof of "means of violence or intimidation" and is not explicitly based on the lack of affirmative consent;

(b) That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llows for exemptions from criminal sanctions in cases of domestic violence and that the Act primarily seeks to preserve and rehabilitate the family unit;

(c) The persistence of domestic violence in the State party; the low prosecution and conviction rates and lenient sentences in cases of domestic violence and marital rape; underreporting owing to victims' fear of stigmatization or reprisals, their economic dependence on abusive partners, legal illiteracy and lack of trust in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d) The lack of information on the effective enforcement and monitoring of protection orders, in particular restraining and separation orders, in cases of domestic violence, which exposes women survivors of such violence to revictimization;

(e) The lack of adequate victim support services for women seeking to escape violent relationships across the State party;

(f)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increasing use of new digital technologies for online gender-based violence, including cyberstalking, harassment, doxing, and the non-consensual sharing of intimate images, and the proliferation of AI-generated sexually explicit media, deepfake videos, synthetic media and cyber porn that commodify and objectify women's bodies. It is further concerned that the current legislation may not fully cover all forms of existing, rapidly changing and even unanticipated digital violence and abuse, resulting in low prosecution rates and lack of protection of victims, as well as underreporting of digital sexual harassment and abuse due to social stigma, victim-blaming, and fear of reprisals.

27. Recalling its previous recommendation (CEDAW/C/KOR/CO/8, para. 23) and in line with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35 (2017) on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updating general recommendation No. 19, as well as target 5.2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all women and girls in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o create a new national narrative which is gender equal and in line with the Convention. It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Amend the Penal Code to incorporate a definition of rape based on lack of affirmative, free and voluntary consent, covering any non-consensual sexual act, that takes into account all coercive circumstances, including marital rape,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b) **Ame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to ensure the safety of victims and their families, abolish the practice of suspending charges in home protection cases on the condition that perpetrators undergo**

counselling, and ensure that prosecution is given priority over reconciliation and mediation;

(c) Encourage reporting of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by conducting media campaigns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criminal nature of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challenge its social legitimization and destigmatize victims, and protecting women from reprisals for reporting incidents of gender-based violence, as well as prohibiting courts from using victims' medical records or sexual history as evidence in trials;

(d) Provide mandatory and continuous capacity-building for judges, prosecutors, police officers and other law enforcement officials to ensure that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including sexual violence, is effectively investigated and prosecuted, that perpetrators are adequately punished and that protection orders are effectively enforced and monitored, with adequate sanctions in case of non-compliance;

(e) Adequately fund victim support services by strengthening the 12 State-run shelters, subsidizing shelters run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expanding the network of specialized, inclusive and accessible shelters for women and girls who are victims of gender-based violence, as well as psychosocial counselling, taking into account their specific needs; and provide women and girls who cannot safely return to their homes with financial support, education, professional training, income-generating opportunities, affordable housing and, if necessary to ensure their safety, a changed identity;

(f) Develop a public interest litigation campaign on 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and strengthen measures to prevent and adequately punish online sexual violence, including regulation that explicitly penalizes such offences, and ensure that providers of online platforms and online distributors are held accountable for failure to report, delete, or block criminal content from their platforms.

Trafficking and exploitation of prostitution

28. The Committee takes note of the State party's efforts to strengthen its legal and policy framework to combat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including through the 2023 Act on Prevention of Human Traffick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However,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a) That the State party remains a country of transit and destination of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for purposes of sexual and labour exploitation;

(b) The ongoing risk of trafficking of migrant women and girls on E-6-2 visas, usually granted to allow work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c) That victims of trafficking are offered G-1 visas only if they collaborate with the prosecution authorities;

(d) The criminalization of women in prostitution, including victims of forced prostitution;

(e) The lack of adequately funded, inclusive and accessible shelters for victims of trafficking, including women with disabilities, in the State party.

29. With reference to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38 (2020) on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in the context of global migration and recalling its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CEDAW/C/KOR/CO/8, para. 25) and the views of the Committee on communication No. 139/201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Provide capacity-building for judges, prosecutors, police officers and other law enforcement officials, border police, health-care providers and other first responders on the early identification of victims of trafficking and their referral to appropriate services and on gender-sensitive investigation and interrogation methods;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instructions for the police on early identification of trafficking victims and conduct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ssessment of the process of early identification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articular women and girls, and their referral to appropriate services and protection;**

(b) **Revise the current E-6-2 visa regime and strengthen monitoring of entertainment companies, including bars near ports and United States military bases, that recruit foreign women, including through labour inspections of establishments where women are working under that regime, and promptly investigate, prosecute and adequately punish exploitative employers, in particular traffickers;**

(c) **Ensure that the G-1 visa regime is applied to all women and girls victims of trafficking, regardless of their willingness or ability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authorities;**

(d) **Ensure that perpetrators of trafficking in persons are prosecuted and adequately sentenced;**

(e) **Significantly increase the number and funding of inclusive and accessible shelters for victims of trafficking, including women with disabilities, in both urban and rural areas and ensure that they have access to free legal aid, interpretation services, medical assistance, psychosocial counselling, financial support, education, professional training and income-generating opportunities;**

(f) **Decriminalize women in prostitution and discourage the demand that fosters exploitation of prostitution and provide exit**

strategies, including alternative income-generating opportunities, for women who wish to leave prostitution.

“Comfort women”

30. The Committee notes that on 23 November 2023, the Seoul High Court rendered a judgment in a lawsuit filed by former “comfort women” and others against Japan, which ruled that the Government of Japan, *inter alia*, must pay compensation to the plaintiffs, redefining the theory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a) That many “comfort women” have not obtained reparation, including adequate compensation;

(b) That survivors face increased health challenges as they age, and their unmet need for medical and psychological support tailored to their specific needs resulting from the long-term effects of their trauma.

31. **Recalling its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CEDAW/C/KOR/CO/8, para. 27),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a) **Recognize the right of victims/survivors to a remedy, and accordingly provide full and effective redress and reparation, including compensation, satisfaction, official apologies and rehabilitative services;**

(b) **Ensure that “comfort women” who are still alive have full access to specialized med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support.**

Equal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32.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women currently hold only 20 per cent of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at there are only five women Ministers in the State party. It is also concerned about online harassment, including deep fakes, against women politicians, activists and journalists, who may face double attacks due to their stance against patriarchy. The Committee also notes with concern the persistence of structural barriers to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in particular for rural women and women with disabilities.

33. **Recalling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23 (1997) on wome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as well as target 5.5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 ensuring women’s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and equal opportunities for leadership at all levels of decision-making in political, economic and public life,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Introduce mandatory and enforceable gender quotas aiming at parity, subject to fines in case of non-compliance, for political parties for the nomination of candidates for el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provincial and local councils, and for the**

appointment of women, including rural women and women with disabilities, to the Government, the civil service, the foreign service and the armed forces, in particular at decision-making levels;

(b) Adopt legislation to combat harassment, hate speech and sexist discourse faced by women politicians and activists, hold social media companies accountable for user-generated content and for prompt removal of hate speech, sexist discourse and threats and defamatory content, and ensure that the authors of such content are brought to justice;

(c) Provide capacity-building on political leadership and campaigning skills, as well as access to campaign financing, for women candidates running for election or public office, including rural women and women with disabilities.

Nationality

34.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a) That foreign women married to nationals of the State party are required to reside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at least two years under a marriage migrant visa (F6) before they are eligible to apply for naturalization, and that the naturalization process is lengthy and rejection rates are high;

(b) Shortcomings and delays in birth registration procedures.

35. **Recalling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32 (2014) on the gender-related dimensions of refugee status, asylum, nationality and statelessness of wome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nsure that women and men have equal rights to transmit their nationality to their foreign spouses and simplify and expedite the naturalization process to reduce periods of legal uncertainty for foreign women married to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b) Facilitate affordable access to birth registration and identity documents for migrant, refugee and asylum-seeking women and girls, including through online procedures;

(c) Accede to the 1961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Education

36.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a) The persistent underrepresentation of girls and women in non-traditional fields of study and career paths, in particular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b) The persistence of gender stereotypes in textbooks and the lack of systematic capacity-building for teachers on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c) The explosion of AI-driven, deep fakes, revenge porn, spycam videos and synthetic media pornography which lure young girls into chatrooms for cybersex have sent shockwaves in the State party.

37. In the light of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36 (2017) on the right of girls and women to educa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Continue and further strengthen measures to address gender stereotypes and structural barriers that may deter or discourage young women and girls from pursuing studies and careers in traditionally male-dominated fields, including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b) **Ensure that gender stereotypes are eliminated from textbooks, curricula and pedagogy, at all levels of education and in all provinces of the State party and that school curricula, academic programmes and professional training for teachers adequately address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c) **Create new educational programs to address AI-driven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nd establish a regulatory framework, issuing a 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 the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that regulate tech companies in the mitigation of AI-related substantial risks.**

Employment

38.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a) The persistently high gender pay gap and that in the 2023 World Economic Forum Global Gender Gap ranking, the State party is rated 105 out of 146;

(b) Women's low labour market participation rate (55.1 per cent compared to 72.7 per cent for men);

(c) That for twelve consecutive years, the State party has been ranked last among the 29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countries in terms of working environment for women;

(d) The lack of social security coverage for employees who work less than 15 hours a week, predominantly women;

(e) Women's underrepresentation in managerial positions in private companies and in the industrial infrastructure sector, despite their high levels of education.

39. In accordance with target 8.5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 achieving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women and me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ffectively enforce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in order to narrow and eventually close the gender pay gap by (i) conducting regular labour inspections; ; (ii) conducting regular pay surveys; and (iii) assisting employers in submitting their gender pay gap data to the government and making voluntary efforts to close the gap with a view to better understanding the reasons behind the gender wage and pension gap, and to take appropriate remedial measures;

(b) Increase the access of women to formal employment including by dismantling gender stereotypes regarding the traditional roles of women, conduct awareness-raising campaigns on gender equality targeting employers and adopt affirmative measures to improve employment to meet women's employment targets and provide consulting services to support businesses, among other measures;

(c) Undertake a thorough review of its labour laws and policies to identify barriers to women's participation and advancement in the workplace by providing enabling and safe environments free from discrimination and intimidation; strengthen policies that support work-life balance, including flexible working hours, and childcare support; establish a regular monitoring system to track progress on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for women, with annual reporting to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d) Extend social security coverage to include workers, including women, employed under contracts for less than 15 hours per week;

(e) Strengthen initiatives to promote women's employment and career development opportunities in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by providing financial incentives for private companies, and to recruit women to leadership positions, including in non-traditional sectors;

(f) Ratify the Domestic Workers Convention, 2011 (No. 189),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ealth

40. The Committee welcomes the 2019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State party, which declared the existing abortion ban "unconformable". The Committee also notes that abortion is decriminalized in the State party since 1 January 2021. However,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a) The absence of a new regulatory framework following the decriminalization and abortion and that termination of pregnancy is not yet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lan, which may affect women's access to safe abortion services;

(b) That assisted reproductive services, including in vitro fertilization, are not available to single women;

(c) That the 2023 Confidential Birth Bill, which allows women to give birth under assumed names at medical facilities without requiring the child to be registered under the family registration system, fails to address the underlying reasons for unregistered births, including limited access to safe abortion services and sexuality education, inadequate support services for pregnant women and girls, and societal stigma associated with single motherhood;

(d) The limited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and information, including information on responsible sexual behaviour, as well as to family planning and affordable modern contraceptives, for women and girls, in particular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nd refugee and migrant women and girls.

41. In accordance with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24 (1999) on women and health and targets 3.1 and 3.7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 reducing global maternal mortality and on ensuring universal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care service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xpedite th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a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to ensure that women and adolescent girls have adequate access to safe abortion and post-abortion services and integrate this framework in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lan;

(b) Ensure access to assisted reproductive services, including in vitro fertilization, for all women, including single women;

(c) Undertak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2023 Protected Birth Bill to address the underlying causes of unregistered births more effectively, with a focus on expanding access to safe abortion services and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enhancing support services for pregnant women and girls, and implementing targeted measures to reduce the societal stigma associated with single motherhood;

(d) Ensure that women, especially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nd refugee, asylum-seeking and migrant women and girls, have access to adequat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and information, including safe abortion and post-abortion services and affordable modern contraceptives;

(e) **Consider the use of frontiers technology to support the health protection of older women, including AI for health and telemedicine.**

Economic empowerment of women

42. The Committee welcomes the plans of the State party to increase the number of women's re-employment centres to 159 nationwide to facilitate the reinsertion into the labour market of women with career interruptions due to pregnancy or childcare. The Committee also notes that 60% of small-scale businesses are run by women and the measures taken by the State party to promote women's economic empowerment,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Job Stabilization Fund to support personnel expenses and increase job security in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However,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bout the significant care burden shouldered largely by women with limited access to care facilities and about the large number of women engaged in unpaid care work.

4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Commence an evaluation of the women's re-employment centres policy to determine its effectiveness in promoting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women experiencing employment interruptions;**

(b) **Conduct an evaluation of the Fund's impact on supporting women in small-scale businesses and the Job Stabilization Fund's effectiveness in covering personnel expenses and enhancing job security in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c) **Adopt innovative schemes and initiatives to ensure more equitabl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care economy, which directly and positively contribute to the social and economic empowerment of women;**

(d) **Recognize, reduce and redistribute the burden of unpaid care work on women by providing affordable childcare facilities and care services for older persons and promoting the equal sharing of domestic and family responsibilities between women and men and ensure that women employed in family businesses are adequately remunerated and have access to social security;**

(e) **Develop and implement new public policies grounded in statistical and evidence-based analysis, aimed at establishing an integrated care economy system, with special attention to older women and women with disabilities. These policies should be complemented by campaigns promoting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care responsibilities between women and men and the monetization of women's unpaid care work.**

Rural women

44. The Committee takes note that under Article 119 (2) of the Constitution, the State party may regulate and coordinate economic

affairs in order to maintain the balanced growth and stability of the national economy, to ensure proper distribution of income, to prevent the domination of the market and the abuse of economic power and to democratize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harmony among the economic agents, therefore committing the Government to pursue redistributive justice. It further notes with appreciation that under Article 18 of the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men and Promoting Development of Rural Areas", special emphasis has been given to the needs of rural women in agriculture, and off-shore and in-land fisheries.

45. In accordance with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34 (2016) on the rights of rural women and target 5.a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 undertaking reforms to give women equal rights to economic resources, as well as access to ownership and control over land and other forms of property, financial services, inheritance and natural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Fully apply and implement the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men and Promoting Development of Rural Areas by promoting entrepreneurial activities of rural women, including those who are migrants, facilitating access to low-interest loans without collateral and other forms of financial credit and ensuring that rural women, including women agricultural workers, have adequate access to income-generating opportunities, social benefits, health care and that they are equally represented in decision-making processes, including in relation to rural development programmes;**

(b) **Ensure that rural women have equal access as men to land ownership and use, including by conducting awareness-raising campaigns aimed at dismantling patriarchal attitudes and gender stereotypes.**

Women with disabilities

46.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women with disabilities face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in the State party, especially with regard to access to justice, education, employment and health care.

47. Recalling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18 (1991) on disabled wome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tha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have effective access justice, inclusive education, employment and health services, especially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including through the development and use of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state of the art assistive technologies.

Refugee, asylum-seeking and migrant women and girls

48.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refugee, asylum-seeking and migrant women and girls face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and disproportionate levels of gender-based violence in the State party, in particular in border areas, and that undocumented migrant women are exposed to a high risk of sexual exploitation and forced labour, including by human trafficking networks. The Committee also notes that, under Article 63 of the Immigration Act, asylum-seekers, including undocumented migrants who apply for refugee status after being apprehended, those re-applying while undocumented, and those who have not complied with a departure order, are often detained for the duration of their asylum proceedings, including any administrative or judicial appeals, which can extend over several years.

49. In accordance with its general recommendations No. 32 (2014) on the gender-related dimensions of refugee status, asylum, nationality and statelessness of women, No. 30 (2013) on women in conflict prevention, conflict and post-conflict situations and No. 26 (2008) on women migrant worker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Address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refugee, asylum-seeking and migrant women, protect them from gender-based violence and prosecute and adequately punish perpetrators;**

(b) **Amend Article 63 of the Immigration Act to explicitly prohibit the detention of women and girls who are refugees, asylum-seekers, holders of humanitarian status, and other persons requiring international protec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c) **Ensure the application of gender-responsive asylum procedures, including by training immigration officers on gender-sensitive interviewing techniques, and that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is recognized as a protection ground.**

Disaster risk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50. The Committee commends the State party for its support to the "Our land, shared future: towards balanced, smart and innovative cities and regions for all" plan during the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8) in Dubai. This initiative prioritizes the creation of safe and liveable spaces for all generations, aims to bring peace to the national territory, and seeks to enhance connectivity between the continent and the ocean. The Committee also notes with satisfaction the growing youth movement demanding the State party's accountability for climate change, which the Committee views as a cross-cutting existential challenge under General Recommendation No. 37 (2018) on gender-related dimensions of disaster risk reduction in a changing climat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3 regarding measures to combat climate change. It also notes that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a key component of the 2015 Paris Agreement, aim to limit global temperature increases to 1.5°C above pre-industrial levels, with a maximum limit of 2°C and that the State party's Constitutional Court

held final hearing on four landmark cases on climate change policies that would impact future generations. However,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according to the Climate Action Tracker, the State party's NDC, which includes a net zero target for 2050, is deemed "highly inefficient". It also notes with concern that women, in particular rural women, women with disabilities, women living in poverty and migrant women, a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climate change, as they often live in exposed areas and lack the necessary coping mechanisms to increase their climate change resilience.

51. In accordance with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37 (2018) on the gender-related dimensions of disaster risk reduction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view its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esponse strategies, taking into account the negativ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the livelihoods of women, and ensure that women and men are equally represented in the development,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legislation, policies and programmes on climate change, disaster response and disaster risk reduction, in particular by:

(a) **Being more ambitious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rbon Neutrality Act, and Framework Act which mandate the State Party to set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30 so as to respect the fundamental rights to a healthy environment for generations to come;**

(b) **Collecting disaggregated data on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on women and girls;**

(c) **Ensuring the incorporation of a gender perspective in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isk reduction legislation, policies, financing and programmes in order to address the specific needs of women and girls and build their resilience and effectiv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d) **Increasing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literacy and awareness among communities, women and girls, including rural women and women with disabilities, to enable them to effectively participate in climate change-related decision-making and the development of adaptation strategies and actions that build women's and girls' resilience to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52.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article 781 (1) of the Civil Code maintains the patrilineal principle, as it stipulates that a child may assume the mother's surname only when the father agrees to it at the time of marriage, despit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verturning the *Hoju* system.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upon divorce, marital property is divided in accordance with each spouse's relative contribution, unless they agree otherwise in a contract. The Committee further remains concerned that a reconciliation procedure is mandatory

even for divorce in cases of domestic violence and that visitation rights and child custody are often awarded to abusive fathers, including abusive to the mothers of the children. It is further concerned at the lack of social and economic protection afforded to women in de facto unions.

53. **The Committee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amend article 781 (1) of the Civil Code to abolish the patrilineal principle to bring its laws into line with article 16 (1) (g)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s (CEDAW/C/KOR/CO/8, para. 47) that the State party take legislative measures to incorporate a rule of equal distribution of marital property upon the dissolution of a marriage or de facto union, in line with the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 No. 29 (2013) on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marriage, family relations and their dissolution. The Committee also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ensure expressly by law that there is no requirement for reconciliation and mediation in family cases when there is domestic violence and that members of the judiciary receive mandatory training on the requirement to take domestic violence into account in child custody cases, and to give priority to prosecution over family reconciliation, in order to adequately punish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and prevent its recurrence.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strengthen the economic protection of women in de facto unions.**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54.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absence of data collection in many areas relev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5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promote and build capacity for the use of the newest technology in collection of statistical data, including on the prevalence of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the prevalence of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access to education and the socioeconomic status of women, disaggregated by age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for purposes of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ailored and gender-responsive legislation, policies, programmes and budgets.**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56. **The Committee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use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and to further evalu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order to achieve substantive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Dissemination

57.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e timely dissemination of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in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State party, to the relevant State institutions at all levels (national, provincial and municipal), in particular to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judiciary, to enable their full implementation.

Ratification of other treaties

58.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adherence of the State party to the nine maj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¹ would enhance the enjoyment by women of thei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all aspects of life. The Committee therefor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o which it is not yet a party.

Follow-up to concluding observations

59.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provide, within two years, written information on the steps taken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paragraphs 13 (a), 19 (b), 27 (a) and 31 (a) above.

Preparation of the next report

60. The Committee will establish and communicate the due date of the tenth periodic report of the State party in line with a future predictable eight-year review cycle and following the adoption of a list of issues and questions prior to reporting, if applicable, for the State party. The next periodic report should cover the entire period up to the time of its submission.

61.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follow the harmonized guidelines on reporting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cluding guidelines on a common core document and treaty-specific documents (see [HRI/GEN/2/Rev.6](#), chap. I)

¹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